

2023년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퍼니의 현황

[기간 : 2023.01.01 ~ 2023.12.31]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퍼니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3
II. 일반현황	5
III. 경영실적	9
IV. 재무에 관한 사항	11
V. 경영지표	17
VI. 위험관리	22
VII. 기타 일반현황	27
VIII. 재무제표	35
IX. 기타	37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재무·손익	자 산	2,753	2,942	-189
	부 채	599	888	-289
	자 본	2,154	2,054	100
	당기순이익	155	239	-84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200.24	—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	—
수익성 비율	운용자산이익률(A/B)	2.05	1.64	0.41
	영업이익률	6.43	14.04	-7.61
	총자산수익률(ROA)	5.44	7.38	-1.94
	자기자본수익률(ROE)	7.36	12.19	-4.83

* 지급여력비율은 4월말 공시 예정임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 (전 생·손보사 공통 사항)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IAS 39

1-2.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 %p)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신계약률			
효력상실 및 해약률			
보험금지급률 (환급금 포함)			
자산운용률	94.81	79.20	15.61
유지율	13회차		
	25회차		
	37회차		
	49회차		
	61회차		
	73회차		
	85회차		
유지율	7-6.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참조		
신용평가등급	2	2	0

* 주요변동요인 : 재보험계약 정산과 지난 1년간의 금리하락 영향으로 운용자산이 281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2023년중 무해지/저해지 가이드라인 변경효과로 인하여 인하여 보험계약자산의 시가 평가액이 감소 하였음. 이로 인하여 총자산 중 운용자산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주) ‘효력상실 및 해약률’과 ‘유지율’의 경우 장기보험종목에 대한 지표임.

당사는 전업재보험사로서 ‘자산운용률’ 및 ‘신용평가등급’ 이외의 지표는 해당사항 없음.

주2) 신용평가등급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의 <신용평가기관 K-ICS신용등급 매핑표>에 따른 등급임.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IAS 39

II. 일반현황

2-1. 선언문

저희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퍼니는 2005년 4월 1일 영업을 개시하여, 여러분들의 성원과 함께 성장하여 영업 2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시는 정보이용자에게 저희 지점의 경영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퍼니, 한국지점
CEO 신마이클성욱

2-2. 경영방침

1) 경영 이념

선별된 세계 시장의 우수한 회사들에게 생명 재보험과 상품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재보험 솔루션, 혁신적인 재보험 상품서비스, 그리고 우수한 임의재보험 계약심사 지원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에 부응

2) 경영 방침

고객에게 끝없이 노력하고,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보험회사를 목표로 함

3) 경영 자세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경영

4) 경영 비전

고객들의 미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상품, 서비스 및 아이디어를 지닌 세계적인 생명 재보험사의 선두주자 진입

2-3. 연혁.추이

1)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주요 변동 상황

2002. 07. 11	서울주재원 사무소 설치
2004. 11. 12	지점 예비허가 획득(금융감독위원회)
2004. 12. 20	한국지점 설립
2005. 01. 06	영업 기금 30억 도입
2005. 03. 25	한국지점 본허가 획득(금융감독위원회)
2005. 04. 01	영업 개시
2008. 03. 20 ~ 21	영업 기금 300억 도입
2009. 12. 23	영업 기금 50억 도입
2010. 06. 28	영업 기금 40억 도입
2011. 06. 24	영업 기금 100억 도입

2)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3) 합병 영업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4)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해당사항 없음

2-4. 조직

2-4-1) 조직도 (2024년 2월 29일 기준)

당 지점의 조직은 한국지사 총괄사장 하에 마케팅 관련 부서 및 재무 및 오퍼레이션 관련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2) 영업조직: 해당사항 없음

2-5. 임직원현황

(2023년: 2024년 2월 29일 기준 / 2022년: 2023년 2월 28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23년도	2022년도
임원	등기임원(사외이사포함)	1 (1)	1 (1)
	비등기임원	16	16
직원	정규직	52	49
	비정규직	19	14
합 계		88	80

2-6. 모집조직 현황: 해당사항 없음

2-7. 자회사: 해당사항 없음

2-8. 자본금

(단위 : 억원)

연월일	주식의 종류	발행 주식수	증자(또는 감자)금액	증자(또는 감자)내용	증자(또는 감자)후 자본금	비 고
2005년 01월 06일			30	영업기금도입	30	
2008년 03월 20일			300	영업기금도입	330	
2009년 12월 23일			50	영업기금도입	80	
2010년 06월 28일			40	영업기금도입	420	
2011년 06월 24일			100	영업기금도입	520	

2-9. 대주주: 해당사항 없음

2-10. 주식 소유 현황: 해당사항 없음

2-11. 계약자 배당: 해당사항 없음

2-12. 주주 배당: 해당사항 없음

2-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해당사항 없음

Ⅲ. 경영실적

3-1. 경영실적 개요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보험수익	1,639	1,263
보험서비스비용	1,475	827
당기순이익	155	239
총자산	2,753	2,942

* 업무보고서 AI672(사업실적표), AI801(재무상태표(총괄)), AI802(포괄손익계산서) 참조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IAS 39

3-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총괄)

3-2-1) 감독회계 기준 총괄계정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2022년	증감
보험손익	114	231	-117
(보험수익)	1,639	1,263	376
(보험서비스비용)	1,475	827	649
(재보험수익)	688	356	332
(재보험서비스비용)	728	556	172
(기타사업비용)	10	6	4
투자손익	73	65	7
(투자수익)	316	209	107
(투자비용)	244	144	100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186	296	-110
영업외손익	8	1	7
(영업외수익)	8	3	5
(영업외비용)	0	2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94	297	-103
법인세비용	39	58	-19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155	239	-84

* 주요변동 요인 : 2022년중 실제 손해율이 예상손해율보다 낮게 발생함에 따라, 2023년 초에 지급하는 실제 이익수수료가 예상 이익수수료보다 크게 발생하였음. 이로 인하여 2022년 대비 2023년의 보험손익이 감소하였음.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IAS 39

3-2-2)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차이

당사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일치합니다.

IV. 재무에 관한 상황

4-1. 요약 재무상태표(총괄)

4-1-1) 감독회계 기준 총괄계정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023년)		전년 동기 (2022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573	20.80	480	16.3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0	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0	0
	기타포괄손익-공정가 치측정 유가증권	2,038	74.0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1,850	62.90
	만기보유금융자산	—	—	0	0
	상각후 원가측정 유가증권	0	0	—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대출채권				
	부동산				
	비용자산	143	5.19	612	20.80
	기타자산				
	특별계정자산				
자산총계		2,753	100	2,942	100
부 채	책임준비금	385	13.97	622	21.13
	계약차지분조정				
	기타부채	215	7.80	267	9.06
	특별계정부채				
부채총계		599	21.77	888	30.19
자본	자본총계	2,154	78.23	2,054	69.81
부채와자본총계		2,753	100	2,942	100

* 전년동기는 IAS39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하였으며, 해당 분기는 IFRS9 기준으로 유가증권을 분류

* 주요변동요인 : 재보험계약 정산과 지난 1년간의 금리하락 영향으로 운용자산이 281 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2023년중 무해지/저해지 가이드라인 변경효과로 인하여 인하여 보험계약자산의 시가 평가액이 감소하였음. 이로 인하여 총자산 중 운용자산의 비율이 증가하였음. 또한 당기손익으로 인하여 자본은 증가하였으나, 무해지/저해지 가이드라인 변경효과로 인하여 책임준비금이 감소하였음 이로 인하여 책임준비금의 비율이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IAS 39

4-1-2)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차이

당사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일치합니다.

4-2. 대출채권 운용: 해당사항 없음

4-3.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가액1)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A)	주 식	
		출 자 금	
		채 권	
		수 익 증 권	
		외화표시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B)	주 식	
		출 자 금	
		채 권	2,038
		수 익 증 권	
		외화표시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C)	채 권	
		수 익 증 권	
		외화표시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D)	주 식		
	출 자 금		
	기 타		
소 계(A+B+C+D)		2,038	-51
특별계정	주 식		
	채 권		
	수 익 증 권		
	해외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소 계		
합 계		2,038	-51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 업무보고서 AI801(재무상태표(총괄)), AI803(재무상태표(실적배당형_특별계정)) 참조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4-4. 부동산 보유현황: 해당사항 없음

4-5. 보험계약부채 및 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일반 계정	보험계약부채	172	159
	보험계약자산	82	528
	재보험계약자산	0	0
	재보험계약부채	212	463
	투자계약부채	0	0
특별 계정	계약자적립금	0	0

* 업무보고서 AI801(재무상태표(총괄)), AI803(재무상태표(실적배당형_특별계정) 참조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4-6. 외화자산·부채

4-6-1) 형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자 산	예 치 금			
	유 가 증 권			
	외 국 환			
	부 동 산			
	기 타 자 산			
	자 산 총 계			
부 채	차 입 금			
	기 타 부 채	1,604	1,909	-305
	부 채 총 계	1,604	1,909	-305

* 주요변동요인: 관계사 미지급금 일부 지급으로 인하여 외화부채 평가액 감소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4-6-2) 국가별 주요자산운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4-7.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대 손 충 당 금	0	0
일 반 계 정	0	0
특 별 계 정	0	0
대 손 준 비 금	0	0
일 반 계 정	0	0
특 별 계 정	0	0
합 계	0	0
일 반 계 정	0	0
특 별 계 정	0	0
대 손 상 각 액	0	0
일 반 계 정	0	0
특 별 계 정	0	0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4-8. 부실대출채권 현황: 해당사항 없음

4-9. 계약현황: 해당사항 없음

4-10. 재보험 현황

* 업무보고서 AI190(재보험수지차현황) 참조

4-10-1) 국내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반기 (23.2Q)	당반기 (23.4Q)	전반기 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1,688	2,476	788
		수재보험금	1,251	1,746	496
		수재보험수수료	250	174	-77
		수재차액(A)	187	556	369
내	출재	출재보험료	0	0	0
		출재보험금	0	0	0
		출재보험수수료	0	0	0
		출재차액(B)	0	0	0
순수지 차액 (A+B)		187	556	369	

* 주요변동요인 : IFRS4기준의 재보험거래는 기중에 현금주의로 거래를 인식하며 기말에 기간 경과분 정산서를 수령하여 발생주의로 거래를 인식함. 이로 인하여 직전 상반기 대비 거래현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표시되나, 1년 기준으로 산출한 수재거래현황은 큰 변화가 없음. 1년 기준의 순수지차액은 전년대비 33억 증가하였음.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4-10-2)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반기 (23.2Q)	당반기 (23.4Q)	전반기 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0	0	0
		수재보험금	0	0	0
		수재보험수수료	0	0	0
		수재차액(A)	0	0	0
외	출재	출재보험료	845	1,241	396
		출재보험금	625	873	248
		출재보험수수료	147	118	-28
		출재차액(B)	-73	-249	-177
순수지 차액 (A+B)		-73	-249	-177	

* 주요변동요인 : 국외재보험거래는 국내재보험거래의 50% 비례재보험거래임. IFRS4기준의 재보험거래는 기중에 현금주의로 거래를 인식하며 기말에 기간 경과분 정산서를 수령하여 발생주의로 거래를 인식함. 이로 인하여 직전 상반기 대비 거래현황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표시되나, 1년기준으로 산출한 출재거래현황은 큰 변화가 없음. 1년 기준의 순수지차액은 전년대비 16억 감소하였음.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V. 경영지표

5-1. B/S상의 자기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3.4Q)	당분기-1분기 (23.3Q)	당분기-2분기 (23.2Q)
자본총계	2,154	1,483	1,521
자본금	520	520	520
자본잉여금	0	0	0
신종자본증권	0	0	0
이익잉여금	2,095	1,841	1,756
자본조정	0	0	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1	-878	-755

* 주요변동요인 : 보험영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할인율은 2023년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1월 이후 크게 하락하였음. 이로 인하여 기타포괄손실 금액이 4분기에 크게 감소하였음.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5-2. 지급여력비율

5-2-1)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로써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2023년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은 RBC제도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된 지급여력제도의 주요사항

RBC제도에서는 만기보유증권, 부동산 등 일부 자산과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지만, K-ICS 제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또한 RBC 지급여력비율은 99% 신뢰수준 하에서의 위험계수 방식으로 위험을 측정하였으나, K-ICS 지급여력비율은 99.5%의 신뢰수준 하에서의 충격시나리오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위험을 측정합니다.

2) 산출방법 개요

K-ICS 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여력금액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 지급여력기준금액

보험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금액을 의미하며,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시장, 신용,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다음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text{기본요구자본} = \sqrt{\sum_i \sum_j \text{상관계수}_{ij} \times \text{개별위험액}_i \times \text{개별위험액}_j} + \text{운영위험액}$$

- 상관계수_{ij}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생명·장기손해	일반손해	시장	신용
생명·장기손해	1			
일반손해	0	1		
시장	0.25	0.25	1	
신용	0.25	0.25	0.25	1

[지급여력비율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4Q)	당분기-1분기 (23.3Q)	당분기-2분기 (23.2Q)
경과 조치 전	지급여력비율	200.2	200.4	179.7
	지급여력금액	4,092	3,748	3,606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	1,871	2,007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	—	—	—
	지급여력금액	—	—	—
	지급여력기준금액	—	—	—

* 주요변동요인 : 수재보험 정산 등으로 인하여 운용자산이 증가하였음. 또한 할인을 변동 등으로 생명장기보험 위험액이 소폭 상승하여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함

[건전성감독기준 요약 재무상태표]

新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합니다.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4Q)	당분기-1분기 (23.3Q)	당분기-2분기 (23.2Q)
[운용자산]	2,611	2,396	2,271
현금및예치금	573	419	396
유가증권	2,038	1,977	1,87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0	0	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038	1,977	1,876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0	0	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	0	0
대출채권	0	0	0
- 개인대출	0	0	0
- 기업대출	0	0	0
- 보험계약대출 ^{주1)}	0	0	0
부동산	0	0	0
[비운용자산]	-3,480	-3,259	-3,272
재보험자산	-3,545	-3,362	-3,356
기타비운용자산	66	102	85
[특별계정자산 ^{주2)}	0	0	0
실적배당형퇴직연금	0	0	0
변액보험	0	0	0
자산총계	-869	-864	-1,000
[부채]			
책임준비금	-5,731	-5,336	-5,290
- 현행추정부채	-6,600	-6,087	-6,118
1. 생명-장기손해보험	-6,606	-6,066	-6,095
2. 일반손해보험	6	-20	-22
- 위험마진	869	751	828
1. 생명-장기손해보험	868	751	828
2. 일반손해보험	0	0	0
기타부채	771	724	684
특별계정부채	0	0	0
- 책임준비금	0	0	0
- 기타부채	0	0	0
- 일반계정미지급금	0	0	0
부채총계	-4,961	-4,612	-4,606
[자본]			
1. 보통주	520	520	520
2.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0	0	0
3. 이익잉여금	2,095	1,841	1,756
4. 자본조정	0	0	0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1	-878	-755
6. 조정준비금	1,938	2,265	2,085
자본총계	4,092	3,748	3,606
부채 및 자본 총계	-869	-864	-1,000

* 주요변동요인 : 고객사 정산으로 인한 예금증가, 이자수익 및 이자율 하락등으로 채권평가손익 증가 등 운용자산이 214억 증가하고, 보험자산 175억 증가(부채 감소)등으로 자본 344억 증가

5-2-2)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2023년 지급여력제도의 변경(RBC→K-ICS)에 따라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동을 완화하고자 금융당국은 최대 2032년까지 K-ICS 기준 일부를 완화(이하 '경과조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는 모든 회사에 공통적용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회사가 선택 적용하는 조치로 구분됩니다. 당사의 경과조치 적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과조치의 종류		적용여부	
공통적용	가용자본	제도시행前 기발행자본증권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TFI)	O	
	업무보고서	보고 및 공시기한 연장	O	
선택적용	가용자본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TAC)	X	
	요구자본	신규도입 위험	신규 보험위험 전진적 인식(TIR)	X
		기존측정 위험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ER)	X
			금리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IRR)	X
K-ICS비율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		X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세부]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4Q)	당분기-1분기 (23.3Q)	당분기-2분기 (23.2Q)
가. 지급여력금액 (기본자본 + 보완자본)	4,092	3,748	3,606
기본자본	4,092	3,748	3,606
보완자본	-	0	0
I.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1+2+3+4+5+6)	4,092	3,748	3,606
1. 보통주	520	520	520
2.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	0	0
3. 이익잉여금	2,095	1,841	1,756
4. 자본조정	-	0	0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1	-878	-755
6. 조정준비금	1,938	2,265	2,085
II.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항 목(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등)	-	0	0
III.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등)	-	0	0
나. 지급여력기준금액 (I - II + III)	2,043	1,871	2,007
I. 기본요구자본	2,580	2,361	2,533
- 분산효과 : (1+2+3+4+5) - I	372	337	356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2,247	2,019	2,189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1	1	1
3. 시장위험액	466	443	445
4. 신용위험액	92	66	87
5. 운영위험액	146	169	167
II. 법인세조정액	536	491	527
III. 기타 요구자본(1+2+3)	-	0	0
1.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중속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	0	0
2.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중속회사의 요구자본 대응치	-	0	0
3.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	0	0
다. 지급여력비율 : 가 ÷ 나 × 100	200.2	200.4	179.7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사항]

(1) 공통적용 경과조치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00.2	200.2
지급여력금액	409,156	409,156
기본자본	409,156	409,156
보완자본	-	-
보완자본 한도 적용 전	409,156	409,156
보완자본 한도	-	-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	-	-
(기발행 신종자본증권)	-	-
(기발행 후순위채무)	-	-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33	204,333

(2) 선택적용 경과조치 관련

①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00.2	-
지급여력금액	409,156	-
기본자본	409,156	-
보완자본	-	-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적용금액	-	-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38	-

* 당 지점은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②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00.2	-
지급여력금액	409,156	-
기본자본	409,156	-
보완자본	-	-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38	-
기본요구자본	257,963	-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224,678	-
사망위험	32,701	-
장수위험	-	-
장해·질병위험	167,615	-
장기재물·기타위험	-	-
해지위험	95,131	-
사업비위험	18,877	-
대재해위험	21,797	-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69	-
보험가격 및 준비금 위험	69	-
대재해 위험	0	-
시장위험액	46,611	-
신용위험액	9,261	-
운영위험액	14,585	-
법인세조정액	53,626	-
기타요구자본	-	-

* 당 지점은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 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③ 주식위험 경과조치 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00.2	-
지급여력금액	409,156	-
기본자본	409,156	-
보완자본	-	-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38	-
기본요구자본	257,963	-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224,678	-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69	-
시장위험액	46,611	-
금리위험	45,794	-
주식위험	591	-
부동산위험	-	-
외환위험	401	-
자산집중위험	7,238	-
신용위험액	9,261	-
운영위험액	14,585	-
법인세조정액	53,626	-
기타요구자본	-	-

* 당 지점은 주식위험(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5-2-3)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요 변동 요인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3.4Q)	직전년도 결산 (22.4Q)	전전년도 결산 (21.4Q)
경과 조치 전	지급여력비율	200.2	—	—
	지급여력금액	4,092	—	—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	—	—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	200.2	—	—
	지급여력금액	4,092	—	—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	—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 당 지점은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5-2-4) K-ICS 외부검증보고서 (별첨 K-ICS 외부검증보고서 참조)

5-3.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적립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3.4Q)	직전분기 (23.3Q)
이익잉여금	2,095	1,841
대손준비금	0	0
비상위험준비금	253	253
해약환급금준비금	0	0
보증준비금	0	0

* 주요변동요인 : 비상위험준비금은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적립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5-4. 자산건전성

[부실자산비율]

(단위: 억원, %, %p)

구 분	연도 (2023)	연도 (2022)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0	0	0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2,079	2,591	-512
비율(A/B)	0	0	0

* 주요변동요인: 가중부실자산 없음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5-5. 수익성

(단위 : 억원, %, %p)

구분	연도 (2023)	연도 (2022)	증감
투자이익(A)	50	36	14
경과운용자산(B)	2,445	2,209	236
(1) 운용자산이익률(A/B)	2.05	1.64	0.41
(2) 영업이익률	6.43	3.41	3.03
(3) 총자산수익률(ROA)	5.44	4.26	1.18
(4) 자기자본수익률(ROE)	7.36	13.59	-6.23

* 주요변동요인 : 운용자산이익률 상승은 낮은 수익률의 유가증권 만기도래와 높은 금리의 신규 유가증권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함. 영업이익률은 IFRS17 도입에 따른 투자요소금액이 수익금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승하였음. 총자산수익률의 증가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재)보험계약 시가평가의 영향으로 총자산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자기자본수익률 하락은 IFRS17 도입에 따라 회계전환이익 발생분이 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임.

* 시점별 회계기준 적용 :

- 해당 분기(23.4Q) 수치 : 23.1Q~4Q (IFRS17/9 기준), 22.1Q~4Q (IFRS17/IAS39), 21.4Q 및 그 이전 (IFRS4/IAS39)
- 전년 동기(22.4Q) 수치 : IFRS 4/ IAS39 (22.4Q 경영공시 수치와 동일)

5-6. 유동성

(단위 : 억원, %, %p)

구 분		연도 (2023)	연도 (2022)	증감
	유동성자산(A)	2,527	1,858	669
	평균지급보험금(B)	749	342	408
(1) 유동성 비율(A/B)		337.30	543.83	-206.53
	가용 유동성(C)	2,585	—	—
	조달 필요금액(D)	922	—	—
(2)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C/D)		280.42	—	—

* 주) 2023년 AI675 업무보고서 신설되어 2023년부터 작성하되, 4월말 공시 예정

* 시점별 회계기준: 23.1~4Q IFRS 17/9, 22.1~4Q IFRS 17/ IAS 39

5-7. 신용평가등급 (2024년 2월 29일 기준)

최근3년간 변동상황	S&P		Moody's		A.M Best	
	장 기	단 기	장 기	단 기	장 기	단 기
2023.12.31	AA-		A1		A+	
2022.12.31	AA-		A1		A+	
2021.12.31	AA-		A1		A+	

VI. 위험관리

6-1. 위험관리 개요

6-1-1) 위험관리정책, 전략 및 절차 등 체제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정책

당 지점은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등 중요한 리스크의 인식, 측정, 평가, 통제, 모니터링을 통해 당 지점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자산, 부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전략

당 지점은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통합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절차

가. 위험의 인식

보험회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 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며 보험, 금리, 신용, 시장 및 유동성리스크는 재무리스크로, 운영 리스크는 비재무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의 측정 및 평가

보험,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 등 유형별 리스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K-ICS (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 기준의 리스크량과 Value at Risk(최대손실예상액) 방식 등으로 계량화한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는 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을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유동성리스크의 적정 수준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의 통제

당 지점의 리스크의 회피, 수용, 전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이의 초과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운영합니다.

라. 위험의 모니터링/보고

당 지점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점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주기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징후 발견 시 경영진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1-2)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요구자본은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에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하며, K-ICS기준 순자산에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기준에 의한 지급여력비율100% 이상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이100%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여력비율별로 적기시정 조치를 통해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권고 (100% ~ 50%)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50% ~ 0%)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0% 미만)	주식소각, 영업양도, 합병 및 계약이전 등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도입현황

도입현황	유예사유	향후 추진일정
도입 여부 고려중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함	ORSA의 도입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이미 ORSA의 경험이 있는 본사 또는 관계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6-1-3)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조직의 구조와 기능

가. 위험관리 위원회

당 지점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이사결정기구로서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 리스크에 기초한 당 지점의 주요 경영전략, 당 지점의 리스크 한도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의사결정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성: 운영총괄임원을 포함하고 3명 이상의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당기 중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심의사항 7건, 보고사항 4건,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 제규정 수립 - 신지급여력제도 운영기준 - 1, 2, 3분기 KICS 산출의 적정성 - 위기상황분석(내규개정) - ORSA 유예 결정보고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3분기 KICS 산출결과 보고 - 위기상황분석 결과

나. 실무조직

위험관리 위원회를 실무조직으로 보좌하는 리스크관리 실무 조직은 보험계리부서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 전략에 대한 입안 및 과정관리
- 위험관리규정 및 지침의 관리
- 리스크관리를 위한 지표 및 목표, 한도의 설정 및 관리 등

6-1-4) 위험관리체계 구축 활동

가. 규정체제

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위험관리규정,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K-ICS 운영기준, 재보험관리규정과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한도설정관리

당 지점의 위험관리규정의 리스크한도관리 관련 조항에 허용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유관부서 협의,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허용한도 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분석·보고하여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시스템

당 지점은 보험, 금리, 시장, 신용 등 개별 리스크별로 리스크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리스크량을 산출하고 매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점 단위, 주요보험리스크 및 특약서 단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1-5)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사항

* 당 지점은 요구자본 산출 시,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관리

6-2-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이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여러 리스크 요인에 의해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의미합니다.

②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현황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 이외]

(단위: 백만원, %)

구분		I. 생명보험	II. 장기손해보험	III. 총계	
당기 (2023.4Q)	충격전 평가금액	측정대상자산	-342,233	-59,151	-401,384
		측정대상부채	-663,004	-114,473	-777,477
	위험액	사망위험	30,120	2,581	32,701
		장수위험	0	0	0
		장해·질병위험	138,957	28,658	167,615
		장기채물·기타위험	0	0	0
		해지위험	81,274	13,858	95,131
		사업비위험	16,107	2,770	18,877
직전 반기 (2023.2Q)	충격전 평가금액	측정대상자산	-315,760	-52,617	-368,377
		측정대상부채	-594,614	-98,032	-692,646
	위험액	사망위험	21,797	2,959	24,756
		장수위험	0	0	0
		장해·질병위험	119,729	34,525	154,254
		장기채물·기타위험	0	0	0
		해지위험	85,911	15,692	101,604
		사업비위험	16,625	3,050	19,674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4Q)		직전 반기 (2023.2Q)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I. 전염병위험액	21,772,154	21,772	27,392,196	27,392
1. 생명보험	21,183,293	21,183	26,350,117	26,350
2. 장기손해보험	588,861	589	1,042,079	1,042
II. 대형사고위험액	36,936,546	1,030	307,102,992	14,675
1. 생명보험	30,588,287	833	270,719,386	12,962
2. 장기손해보험	6,348,259	198	36,383,605	1,713
III. 총계	58,708,700	21,797	334,495,188	31,075

6-2-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당 지점은 보험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표준모형(K-ICS기준)을 사용합니다. 표준모형은 금융감독원 위험기준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라 보험리스크를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로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 장기손해보험리스크는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애·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분산효과를 감안하여 측정합니다.
- 당 지점은 매월 매분기 보험리스크 산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유형별로 집적하여 관리 및 점검하며, 또한, 극단적 상황하에서의 보험리스크 수준 및 감내능력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Stress Tes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2-3) 재보험정책

① 개요

- 당 지점은 국외 RGA Reinsurance Company (Barbados) Ltd. 한 곳에 출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출재보험금 및 출재수수료를 수취하는 재보험 거래를 통해 보험위험을 분산합니다.
- 당 지점은 고객사와 체결한 재보험계약을 일정 비율로 RGA Barbados에 출재하며, 재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수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RGA Barbados는 재보험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출재보험금을 RGA Korea에게 지급합니다. 고객사를 대면하는 재보험의 출재자인 당 지점은 계약을 자본력이 큰 대형 RGA재보험사 (재보험자)에게 재출재하여 자본을 활용하고 위험을 이전합니다.

② 상위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208,542			
비 중	100%	%	%	%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였음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208,542				208,542
비 중	100%	%	%	%	100%

6-3. 일반손해보험위험 관리

6-3-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① 개념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 요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위험을 말하며, 당 지점에는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 하위위험이 해당됩니다.

② 보험위험액 현황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4Q)		직전 반기 (2023.2Q)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익스포저	보험가격 위험액
I. 국내	102.2	-	100.5	-
1. 화재	-	-	-	-
2. 기술	-	-	-	-
3. 종합	98.8	68.2	96.7	66.8
4. 해상	-	-	-	-
5. 근재	-	-	-	-
6. 책임	-	-	-	-
7. 상해	3.5	0.7	3.8	0.8
8. 외국인상해	-	-	-	-
9. 농작물	-	-	-	-
10. 기타(일반)	-	-	-	-
11. 개인용자동차(인담보)	-	-	-	-
12. 개인용자동차(물담보)	-	-	-	-
13. 업무용자동차(인담보)	-	-	-	-
14. 업무용자동차(물담보)	-	-	-	-
15. 영업용자동차(인담보)	-	-	-	-
16.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	-	-
17. 기타(자동차)	-	-	-	-
II. 유럽	-	-	-	-
III. 미국·캐나다	-	-	-	-
IV. 중국	-	-	-	-
V. 일본	-	-	-	-
VI. 기타 선진국	-	-	-	-
VII. 신흥국	-	-	-	-
VIII. 해외 기타	-	-	-	-

주1) 당 지점은 국외 보험계약 인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보험가격위험] : 해당사항 없음

[준비금위험]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4Q)		직전 반기 (2023.2Q)	
	익스포저	준비금 위험액	익스포저	준비금 위험액
I. 국내	7.7	-	4.7	-
1. 화재	-	-	-	-
2. 기술	-	-	-	-
3. 종합	6.7	2.6	3.6	-
4. 해상	-	-	-	-
5. 근재	-	-	-	-
6. 책임	-	-	-	-
7. 상해	1.0	0.2	1.1	-
8. 외국인상해	-	-	-	-
9. 농작물	-	-	-	-
10. 기타(일반)	-	-	-	-
11. 개인용자동차(인담보)	-	-	-	-
12. 개인용자동차(물담보)	-	-	-	-
13. 업무용자동차(인담보)	-	-	-	-
14. 업무용자동차(물담보)	-	-	-	-
15. 영업용자동차(인담보)	-	-	-	-
16. 영업용자동차(물담보)	-	-	-	-
17. 기타(자동차)	-	-	-	-
18. 신원보증	-	-	-	-
19. 법률보증	-	-	-	-
20. 이행보증	-	-	-	-
21. 금융보증	-	-	-	-
22. 소비자신용	-	-	-	-
23. 상업신용	-	-	-	-
II. 유럽	-	-	-	-
III. 미국·캐나다	-	-	-	-
IV. 중국	-	-	-	-
V. 일본	-	-	-	-
VI. 기타 선진국	-	-	-	-
VII. 신흥국	-	-	-	-
VIII. 해외 기타	-	-	-	-

[대재해위험]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4Q)		직전 반기 (2023.2Q)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익스포저	대재해위험액
가. 자연재해위험액	-	-	-	-
I. 지진위험	-	-	-	-
II. 풍수해위험	-	-	-	-
III. 총계	-	-	-	-
나. 대형사고위험액	3,062	0.2	10,613	0.5
I. 대형사고재물위험	-	-	-	-
II. 대형사고상해위험	3,062	0.2	10,613	0.5
다. 대형보증위험액	-	-	-	-
라. 대재해위험액	-	0	-	-

6-3-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일반손해보험리스크는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분산효과를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6-3-3) 가격설정(pricing)의 적정성

- 합산비율(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계)

(단위: %)

구 분	당해년도(2023)				직전년도 (2022)	전전년도 (2021)
	2023. 1Q	2023. 2Q	2023. 3Q	2023. 4Q		
상해	44.18	-39.83	-26.70	-8.23	24.24	29.22
종합	54.07	20.26	22.39	12.28	45.60	58.92

- 재보험을 감안하여 산출되었으며 1분기에 계절적 요인 트렌드를 보입니다.

6-3-4)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① 지급준비금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유지급준비금
일반	4,510
자동차	-
합계	4,510

주1) 일반손해보험 준비금 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하였습니다.

② 보험금진전추이 : 해당사항 없음

[일반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당기(당반기)-3년					-
당기(당반기)-2년				-	-
당기(당반기)-1년			-	-	-
당기(당반기)		-	-	-	-

6-3-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

① 개요

- 당 지점은 국외 보험계약 인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당 지점은 국외 RGA Reinsurance Company (Barbados) Ltd. 한 곳에 출재보험료를 지급하고 출재보험금 및 출재수수료를 수취하는 재보험 거래를 통해 보험위험을 분산합니다.
- 당 지점은 고객사와 체결한 재보험계약을 일정 비율로 RGA Barbados에 출재하며, 재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수재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RGA Barbados는 재보험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재출재보험금을 RGA Korea에게 지급합니다. 고객사를 대면하는 재보험의 출재자인 당 지점은 계약을 자본력이 큰 대형 RGA재보험사 (재보험사)에게 재출재하여 자본을 활용하고 위험을 이전합니다.

② 상위 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208,542	-	-	-
비중	100%	0%	0%	0%

- 주1) 외국신용기관의 신용등급은 세척 별표22 기준에 따라 국내신용기관의 신용등급으로 전환한다.
 주2)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대비 비중을 기재한다.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백만원, %)

구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208,542	-	-	-	208,542
비중	100%	0%	0%	0%	100%

- 주1) 기타는 무등급, 부적격 재보험사를 포함하며 재보험사, 보험종목, 출재 경위 및 출재보험료 규모 등을 별도로 요약하여 기술한다.

6-4. 시장위험 관리

6-4-1) 개념 및 익스포져

① 개념

시장위험이란 시장변수(금리, 주가, 부동산가격, 환율)의 변동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의 분산도 부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며, 당 지점은 금리위험, 주식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의 하위위험이 해당됩니다.

② 금리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4Q)					
	충격 전	충격 후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금리경사
I. 자산총계	-150,745	-151,428	-115,710	-193,154	-165,726	-136,496
1. 직접보유	-150,745	-151,428	-115,710	-193,154	-165,726	-136,496
가. 현금 및 예치금	0	0	0	0	0	0
나. 주식	0	0	0	0	0	0
다. 채권	203,777	205,027	196,254	211,714	201,667	205,917
라. 대출채권	0	0	0	0	0	0
마. 부동산	0	0	0	0	0	0
바. 비운용자산	-354,522	-356,455	-311,963	-404,868	-367,393	-342,413
2. 간접투자	-	-	-	-	-	-
가. 현금 및 예치금	-	-	-	-	-	-
나. 주식	-	-	-	-	-	-
다. 채권	-	-	-	-	-	-
라. 대출채권	-	-	-	-	-	-
마. 부동산	-	-	-	-	-	-
바. 비운용자산	-	-	-	-	-	-
II. 부채총계	-659,965	-663,701	-577,018	-758,139	-685,217	-636,206
1. 직접보유	-659,965	-663,701	-577,018	-758,139	-685,217	-636,206
가. 현행추정부채	-659,965	-663,701	-577,018	-758,139	-685,217	-636,206
나. 기타부채	0	0	0	0	0	0
2. 간접투자	-	-	-	-	-	-
III. 순자산가치	509,221	512,273	461,309	564,984	519,492	499,710
IV. 금리 위험액						45,794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전 반기 (2023.2Q)					
	충격 전	충격 후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금리경사
I. 자산총계	-130,220	-130,924	- 95,094	-172,121	-145,202	-115,276
1. 직접보유	-130,220	-130,924	- 95,094	-172,121	-145,202	-115,276
가. 현금 및 예치금	-	-	-	-	-	-
나. 주식	-	-	-	-	-	-
다. 채권	187,556	188,612	180,636	194,899	185,876	189,262
라. 대출채권	-	-	-	-	-	-
마. 부동산	-	-	-	-	-	-
바. 비운용자산	-317,775	-319,536	-275,730	-367,020	-331,078	-304,538
2. 간접투자	-	-	-	-	-	-
가. 현금 및 예치금	-	-	-	-	-	-
나. 주식	-	-	-	-	-	-
다. 채권	-	-	-	-	-	-
라. 대출채권	-	-	-	-	-	-
마. 부동산	-	-	-	-	-	-
바. 비운용자산	-	-	-	-	-	-
II. 부채총계	-591,406	-594,711	-510,855	-685,820	-617,215	-565,712
1. 직접보유	-591,406	-594,711	-510,855	-685,820	-617,215	-565,712
가. 현행추정부채	-591,406	-594,711	-510,855	-685,820	-617,215	-565,712
나. 기타부채	-	-	-	-	-	-
2. 간접투자	-	-	-	-	-	-
III. 순자산가치	461,186	463,787	415,760	513,699	472,013	450,435
IV. 금리 위험액						44,079

③ 주식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격 전 공정가치		주식위험액
		자산	부채	
당기 (23.4Q)	I. 기본법			591
	(1) 선진시장 상장주식	-	-	-
	(2) 신흥시장 상장주식	-	-	-
	(3) 우선주	-	-	-
	(4) 인프라 주식	-	-	-
	(5) 장기보유주식	-	-	-
	(6) 기타주식	1,206	-	591
	II. 간편법			0
	III. 합 계 ^{주)}			591
직전 반기 (23.2Q)	I. 기본법			341
	(1) 선진시장 상장주식	-	-	-
	(2) 신흥시장 상장주식	-	-	-
	(3) 우선주	-	-	-
	(4) 인프라 주식	-	-	-
	(5) 장기보유주식	-	-	-
	(6) 기타주식	695	-	341
	II. 간편법			0
	III. 합 계 ^{주)}			341

주) 당 지점은 기타주식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요구자본(기타주식위험액)을 추가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④ 부동산위험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⑤ 외환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익스포저	환율 상승	환율 하락	가격변동 위험	외환위험액
당기 (23.4Q)	USD	1,604	401	-	-	
	EUR	-	-	-	-	
	CNY	-	-	-	-	
	JPY	-	-	-	-	
	기타 ^{주2)}	-	-	-	-	
	계	1,604	401	-	-	401
직전 반기 (23.2Q)	USD	1,977	494	-	-	
	EUR	-	-	-	-	
	CNY	-	-	-	-	
	JPY	-	-	-	-	
	기타 ^{주2)}	-	-	-	-	
	계	1,977	494	-	-	494

⑥ 자산집중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 초과 익스포져	위험액
당기 (23.4Q)	1. 거래상대방 관련 익스포져	48,253	7,238
	2. 부동산	-	-
	가. 개별부동산	-	-
	나. 부동산 보유 전체	-	-
	계	48,253	7,238
직전 반기 (23.2Q)	1. 거래상대방 관련 익스포져	30,510	4,577
	2. 부동산	-	-
	가. 개별부동산	-	-
	나. 부동산 보유 전체	-	-
	계	30,510	4,577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 당 지점은 K-ICS기준에 따라 금리부자산 및 금리부부채의 익스포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익스포져는 금리 변동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금리위험은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자산-부채)의 변화량으로 측정합니다.

- 매월 금리위험 데이터를 유형별로 집적하여 관리 및 점검합니다.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지표로 승인받아 가이드라인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시점의 금리수준을 점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듀레이션, 금리 VaR 등을 산출 및 분석하여 관리합니다.

- 금리위험을 제외한 시장위험측정은 주식, 외환, 부동산위험 측정을 위하여 K-ICS 표준모형을 사용합니다. K-ICS표준모형은 금융감독원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시장 위험액을 산출합니다.

② 관리방법

- 당 지점은 시장 리스크량을 측정하고, 익스포져 한도, 손실 한도 등을 설정 관리합니다.

6-5. 신용위험 관리

6-5-1) 개념 및 위험액

① 개념

신용위험이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신용위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2023.4Q)		직전 반기 (2023.2Q)	
	익스포저	위험액	익스포저	위험액
I. 신용자산	724,936	9,261	780,342	8,688
(1) 무위험	194,967	0	172,013	0
(2) 공공부문	8,810	79	15,542	83
(3) 일반기업	0	0	0	0
(4) 유동화	0	0	0	0
(5) 재유동화	0	0	0	0
(6) 기타	196,950	2,202	302,147	1,735
(7) 재보험관련	324,209	6,979	290,639	6,869
II. 담보부자산	0	0	0	0
(1)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0	0	0	0
(2) 주택담보대출	0	0	0	0
(3)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0	0	0	0
III. 합계	724,936	9,261	780,342	8,688

6-5-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당 지점은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표준모형(K-ICS) 사용합니다. 표준모형은 금융감독원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신용위험액을 산출합니다.

② 관리방법

당 지점은 매월 신용리스크 산출 대상자산의 데이터를 유형별로 집적하여 관리 및 점검하며, 익스포져 및 신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6-5-3)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

① 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합 계
당기 (23.4Q)	I. 무위험										196,344
	II. 공공부문	-	8,810	-	-	-	-	-	-	-	8,810
	III. 일반기업	-	-	-	-	-	-	-	-	-	0
	IV. 유동화	-	-	-	-	-	-	-	-	-	0
	V. 재유동화	-	-	-	-	-	-	-	-	-	0
	VI. 기타	-	106,352	41,302	27,451	-	-	-	20,467	-	195,573
	합 계	-	115,162	41,302	27,451	-	-	-	20,467	-	400,727
직전 반기 (23.2Q)	I. 무위험										174,792
	II. 공공부문	-	15,542	-	-	-	-	-	-	-	15,542
	III. 일반기업	-	-	-	-	-	-	-	-	-	0
	IV. 유동화	-	-	-	-	-	-	-	-	-	0
	V. 재유동화	-	-	-	-	-	-	-	-	-	0
	VI. 기타	-	206,703	58,112	25,339	-	-	-	9,214	-	299,368
	합 계	0	222,245	58,112	25,339	-	-	-	9,214	-	489,702

주) VI. 기타의 미수수익(국채)는 무위험 신용등급으로서 I. 무위험 합계에 합산하였습니다.

② 대출채권 : 해당사항 없음

③ 난외자산(파생, 신용공여) : 해당사항 없음

④ 재보험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	2	3	4	5	6	7	무등급	디폴트	합 계
당기 (23.4Q)	I.생명·장기손해보험	-	47,091	-	-	-	-	-	-	-	47,091
	1.출재보험료부채	-	-	-	-	-	-	-	-	-	-
	2.출재준비금부채	-	47,091	-	-	-	-	-	-	-	47,091
	II.일반손해보험	-	329	-	-	-	-	-	-	-	329
	1.출재보험료부채	-	329	-	-	-	-	-	-	-	329
	2.출재준비금부채	-	-	-	-	-	-	-	-	-	-
직전 반기 (23.2Q)	I.생명·장기손해보험	-	36,047	-	-	-	-	-	-	-	36,047
	1.출재보험료부채	-	-	-	-	-	-	-	-	-	-
	2.출재준비금부채	-	36,047	-	-	-	-	-	-	-	36,047
	II.일반손해보험	-	-32	-	-	-	-	-	-	-	-32
	1.출재보험료부채	-	-	-	-	-	-	-	-	-	-
	2.출재준비금부채	-	-32	-	-	-	-	-	-	-	-32

< 신용평가기관 K-ICS 신용등급 매핑표 >

K-ICS 신용등급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Fitch	AM Best
1		AAA	Aaa	AAA	
2	AAA	AA/A-1	Aa/P-1	AA/F1	A+
3	AA/A1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 이하	CCC ↓	Caa ↓	CCC ↓	C ↓

6-6. 운영위험 관리

6-6-1) 개념 및 위험액

① 개념

운영리스크란 부적절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② 운영위험액 현황

[일반운영위험]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직전 반기		
	익스포저		위험액	익스포저		위험액
	현행추정 부채 기준	보험료 기준		현행추정 부채 기준	보험료 기준	
생명·장기손해보험	- 660,595	416,230	14,568	- 609,546	475,528	16,643
일반손해보험	629	298	17	- 2,236	403	8
합계			14,585			16,652

[기초가정위험] : 해당사항 없음

6-6-2) 인식 및 관리방법

① 측정방법

- 당 지점은 운영 리스크는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고 수입보험료 및 현행추정부채를 익스포저로 하는 위험계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Max (직전1년수입보험료× 보험료 위험계수, 현행추정부채 × 보험부채 위험계수)로 측정하였습니다.

② 관리방법

- 당 지점은 운영위험 관리를 위해 유관부서 협의,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허용한도 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분석·보고하여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7. 유동성위험 관리

6-7-1) 개념 및 유동성갭 현황

① 개념

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운용과 조달의 기간 또는 금액 불일치,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거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 자금의 조달, 보유 유가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② 유동성갭 현황 (만기 기준)

유동성 갭 현황은 '생명보험회사 일반계정과 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작성되나, 당 지점의 계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7-2) 인식 및 관리방법

당 지점은 유동성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유동성비율을 측정하여 한도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수립된 유동성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유동성위험 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점은 유동성 비율을 통해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이란 직전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금액 대비 잔존만기 3개월이하 유동 자산의 비율로 유동자산 보유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당 지점은 급격한 보험금지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산을 유동화 가능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예금을 포함한 유동성 잔고를 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VII. 기타 일반 현황

7-1. 자회사 경영실적: 해당사항 없음

7-2. 타금융기관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7-3. 내부통제 (2024년 2월 29일 기준)

1) 준법감시인 현황

직 위	성 명	선 임 일 자	주 요 경 력
준법감시인/이사	신승식	2017년 12월 12일	AIG손해보험

2) 내부통제 방침

- 문제 발생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수행합니다.
- 부정과 부조리의 척결을 위한 실질 감사를 수행합니다.

3) 내부통제 빈도

- 본사에서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며 본사와의 협의 하에 당 지점 자체감사도 추가로 실시합니다.

7-4. 기관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 해당사항 없음

7-5. 임직원대출잔액: 해당사항 없음

7-6.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7-6-1) 2023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3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해당 없음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해당 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해당 없음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 없음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 없음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해당 없음
	7	임직원에게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해당 없음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해당 없음

주) 당 지점은 전업재보험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대상이 아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2항 7호)

7-6-2) 2022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2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해당 없음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해당 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해당 없음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 없음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 없음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해당 없음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해당 없음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해당 없음

주) 당 지점은 전업재보험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대상이 아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2항 7호)

7-6-3) 2021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1년)
계량 지표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해당 없음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해당 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해당 없음
	4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 없음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 없음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해당 없음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해당 없음

주) 당 지점은 전업재보험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대상이 아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2항 7호)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가. 민원 발생건수 나. 민원증감률 다. 민원처리기한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가. 금융사고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7-7 민원발생건수 : 해당사항 없음

7-8.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및 유지율 현황: 해당사항 없음

7-9.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현황: 해당사항 없음

7-10. 사회공헌활동

7-10-1) 사회공헌활동 비전

RGA 재보험 한국지점은 지난 2012년부터, 기업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추구의 목적을 넘어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후원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을 하고자 함.

7-10-2)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 수	내규 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4Q 누적	15.5	1	○	64	0	234	0	81	0	15,493

7-10-3)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집행)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공익	저소득자를 위한 제빵봉사	5.5	16	64		
문화·예술·스포츠						
학술·교육						
환경보호	한강플로깅		18	72		
글로벌 사회공헌	글로벌호프와 함께한 이태원학교를 위한 연말행사	10	30	98		
공동사회공헌						
서민금융						
기타						
총 계		15.5	64	234	0	0

* 23년 4분기 누적실적 기준임

7-11. 손해사정업무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7-12. 손해사정사 선임 등: 해당사항 없음

7-13. 신탁부분: 해당사항 없음

VIII. 재무제표 :

8-1. 감사보고서 (별첨 감사보고서 참조)

8-2. 재무상태표 (별첨 감사보고서 참조)

8-3. (포괄)손익계산서 (별첨 감사보고서 참조)

8-4.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별첨 감사보고서 참조)

8-5. 현금흐름표 (별첨 감사보고서 참조)

8-6. 자본변동표 (별첨 감사보고서 참조)

8-7. 주식사항 (별첨 감사보고서 참조)

8-7-4) 금융상품관련 주요사항

① 금융상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장부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038	2,038	1,850	1,85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대여금및수취채권				
	합 계	2,038	2,038	1,850	1,850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합 계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VIII. 기타

9-1. 임원현황

(2024년 2월 29일 현재)

구 분	성 명	직 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등기임원	신성욱	사장	한국지사 총괄	ACE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이은화	부사장	마케팅 총괄	General Electric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송광철	전무	재무·오퍼레이션 총괄	삼성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이현규	전무	마케팅	DB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김진국	상무	마케팅	KB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김경화	상무	계리	미래에셋증권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이병무	상무	상품개발	삼성화재
비등기임원(이사대우)	박영하	상무	신사업개발	라이나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신승식	이사	준법감시	AIG손해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주성민	이사	인사	AIG손해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황현식	이사	계리	밀리만코리아
비등기임원(이사대우)	박찬용	이사	비즈니스매니지먼트	AIA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변정운	이사	신사업개발	삼성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조일권	이사	언더라이팅	ING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신해성	이사	마케팅	스위스리아시아
비등기임원(이사대우)	김민경	이사	재무	한화생명보험
비등기임원(이사대우)	김정률	상무	계리	삼성생명보험

9-2. 이용자 편람(주요 용어 해설)

1. 이용자편람은 공시내용중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라 한다)는 이 지침에서 정한 주요 용어를 모두 공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주요 용어의 종류 및 해설은 아래와 같다.

- 주주배당률

주주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circ \text{주주배당률} = \text{배당금액} / \text{납입자본금} \times 100$$

- 주당배당액

주당배당액은 1주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circ \text{주당배당액} : \text{배당금액} / \text{발행주식수}$$

-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circ \text{배당성향} = \text{배당금액} / \text{세후 당기순이익} \times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일반계정의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 계약자배당전잉여금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이란 손보사의 회계연도중에 신규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과 계약자배당금의 부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액을 말하며 계약자배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측정하는 유가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 및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중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한 유가증권

-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유가증권으로,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하고, 손실충당금을 조정하여 측정한 금액

- 부실대출

부실대출은 총대출 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1) 고정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3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2) 회수의문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3월이상 12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추정손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12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파생금융상품거래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1)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

입니다.

2)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3)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4)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금융상품 거래입니다.

-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정 참조)

-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은 손보사의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조달 필요금액 대비 가용 유동성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유가증권평가손익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회계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취득원가와 당해 회계연도말의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의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직계존비속 등 친족 및 그들과 합산하여 30%이상을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기타 단체와 그 임원 등을 말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정한 등급을 의미하며, 평가등급으로는 채무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장·단기신용등급 등이 있습니다. 장기신용등급은 장기 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 위험, 투자자에 법적인 보호정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단기신용등급은 1년미만 단기채무 상환능력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나타냅니다.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신용등급 체계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시) 외국의 주요 신용평가 전문기관 등급표

구 분		Moody's	S & P	IBCA
장기	투자 적격 등급	Aaa~Baa3(10등급)	AAA~BBB-(10등급)	AAA~BBB(4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	Ba1~C(9등급)	BB+~D(12등급)	BB~C(5등급)
단기	투자 적격 등급	P-1~P-3(3등급)	A-1~A-3(3등급)	A1~A3(3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	NP	B~D (3등급)	B~C (2등급)

<참고> 평가기관별 장·단기 신용평가등급 체계

1) Moody's

	장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단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순위			순위	
투 자 적 격 등 급	Aaa	1	최상의 신용상태 (Exceptional Financial Security)	P-1 (Prime-1)	1	최상의 신용등급 (Superior Ability for Repayment)
	Aa1	2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우수하나 Aaa에 비해서는 약간의 투자위험 존재 (Excellent Financial Security)	P-2 (Prime-2)	2	신용등급 양호 (Strong Ability for Repayment)
	Aa2	3				
	Aa3	4				
	A1	5	신용상태 양호 (Good Financial Security)	P-3 (Prime-3)	3	신용등급 적절 (Acceptable Ability for Repayment)
	A2	6				
	A3	7				
	Baa1	8	신용상태 적절 (현재 문제는 없으나 미래에는 신용위험 존재) (Adequate Financial Security)	Not Prime	4	
	Baa2	9				
	Baa3	10				
투 자 요 주 의 및 부 적 격 등 급	Ba1	11	투자시 요주의 대상 (Questionable Financial Security)	Not Prime	4	
	Ba2	12				
	Ba3	13				
	B1	14	바람직한 투자대상이 아님 (Poor Financial Security)			
	B2	15				
B3	16					
Caa	17	신용상태 나쁨 (Very Poor Financial Security)				
Ca	18	신용상태 매우 나쁨 (extremely poor financial security)				
C	19	최악의 신용상태 (The Lowest Rated Class)				

2) S & P

	장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단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순위			순위	
투 자 적 격 등 급	AAA	1	최상의 신용상태 (Extremely Strong)	A-1	1	최상의 신용등급 (Strong)
	AA+	2	신용상태 우수 (Very Strong)	A-2	2	신용등급 양호 (Good)
	AA	3				
	AA-	4				
	A+	5	신용상태 양호 (Strong)	A-3	3	신용등급 적절 (Adequate)
	A	6				
	A-	7				
	BBB+	8	신용상태 적절 (Adequate)			
	BBB	9				
	BBB-	10				
투 자 요주의 및 부적격 등 급	BB+	11	투자시 요주의 대상 (Less Vulnerable)	B	4	투자시 요주의 대상 (Vulnerable)
	BB	12				
	BB-	13				
	B+	14	투자시 요주의 대상 (More Vulnerable)	C	5	상환불능위험 상존 (Currently Vulnerable)
	B	15				
	B-	16				
	CCC+	17	투자시 요주의 대상 (currently Vulnerable)			
	CCC	18				
CCC-	19					
CC	20	최악의 신용상태 (Currently Highly-Vulnerable)				
C	21					
D	22					

3) IBCA

	장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단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순위			순위	
투 자 적 등급	AAA	1	투자위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음 (the lowest expectation of investment risk)	F1	1	최상의 신용등급 (Highest Credit Quality)
	AA	2	아주 약간의 투자위험 발생가능성 있음 (very low expectation of investment risk)	F2	2	신용등급 양호 (Good Credit Quality)
	A	3	약간의 투자위험 발생가능성 있음 (Currently low expectation of investment risk)	F3	3	신용등급 적절 (Fair Credit Quality)
	BBB	4	약간의 투자위험 발생가능성 있음 (Currently low expectation of investment risk)			
투 자 요주의 및 부적격 등급	BB	5	투자위험 발생가능성 있음 (possibility of investment risk developing)	B	4	투자시 요주의 대상 (Speculative)
	B	6	투자위험 상존 (investment risk exist)			
	CCC	7	상환불능 가능성이 있음 (currently perceived possibility of default)			
	CC	8	상환불능 가능성이 높음 (high risk default)	C	5	상환불능 상태 (High Default Risk)
	C	9	상환불능 상태 (currently default)			

4) A.M. Best

	장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단기신용 등급		신용등급내용
		순위			순위	
투 자 격 등 급	AAA	1	채무상환능력 최상 (Exceptional ability to meet the terms of obligation)	AMB-1 +	1	Exceptional
	AA+ AA-	2	채무상환능력이 극히 높음 (Superior ability to meet the terms of obligation)	AMB-1	2	Superior
	A+ A-	3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음 (Excellent ability to meet the terms of obligation)			Excellent
	BBB+ BBB-	4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함 (Good ability to meet the terms of obligation)	AMB-2	3	Good
투 자 요 주의 및 부 적 격 등 급	BB+ BB-	5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신용도가 다소 취약함 (Fair credit characteristics exist)	AMB-3	4	Fair
	B+ B-	6	채무상환능력이 다소 존재하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신용도가 다소 취약함 (Marginal credit characteristics exist)			Marginal
	CCC+ CCC-	7	채무상환능력이 다소 낮으며,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신용도가 다소 취약함 (Weak credit characteristics exist)	AMB-4	5	Weak
	CC	8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낮으며,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신용도가 매우 취약함 (Very weak credit characteristics exist)			Very Weak
	C	9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으며,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신용도가 극도로 취약함 (Poor credit characteristics exist)			Poor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20 기 2023년 12월 31일

안진회계법인

목 차

	페이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첨 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5
· 지급여력금액.....	6
· 지급여력기준금액	8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지점장 귀중

2024년 4월 30일

감사의견

우리는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이하 “지점”)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회사의 작성기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 6-8 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금융감독원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큼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안 진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洪 鐘 聲



홍 종 성

2024년 4월 30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4년 4월 3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별첨된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제 20 기 2023년 12월 31 일

“첨부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당 지점이 작성하였습니다”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대표이사 신성욱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전 화) 02-6730-1350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제 20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운용자산		261,051
1. 현금및예치금	57,274	
2. 유가증권	203,777	
3. 대출채권	-	
4. 부동산	-	
비운용자산		(347,951)
1. 재보험자산	(354,522)	
2. 미수금	22	
3. 보증금	2,715	
4. 미수수익	1,421	
5. 선급비용	38	
6. 유형자산	1,169	
7. 이연법인세자산	-	
8. 무형자산	1,206	
9. 기타의비운용자산	-	
특별계정자산		-
자산총계		(86,901)
책임준비금		(573,115)
1. 현행추정부채	(659,965)	
2. 위험마진	86,851	
기타부채		77,057
1. 미지급금	1,604	
2. 미지급비용	3,836	
3. 미지급법인세	910	
4. 예수금	350	
5. 이연법인세부채	69,386	
6. 복구충당부채	384	
7. 그밖의기타부채	587	
특별계정부채		-
부채총계		(496,057)
1. 영업기금	52,000	
2. 이익잉여금	209,49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101)	
4. 조정준비금	193,767	
자본총계		409,157

지급여력금액

제 20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I.순자산	409,156
1. 영업기금	52,000
2. 이익잉여금	209,49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6,101)
4. 조정준비금	193,767
II.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항목	-
1. 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
2. 지급여력 제고를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과 교차보유한 자본증권	-
3.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증권	-
4.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	-
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와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의 합계액 중 한도 초과액	-
6. 보완자본 한도를 초과한 금액	-
7. 비지배지분 중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 초과액	-
III.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
1.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
2. 보완자본 자본증권	-
3.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
4.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을 초과한 금액	-
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와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의 합계액 중 한도 이내액	-
IV.기본자본	409,156
V.보완자본	-
1.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
2. 보완자본 자본증권	-
3.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
4. 담보제공자산 중 피담보채무의 현재가치를 초과한 금액	-
5.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 상당액의 50%와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의 합계액 중 한도 이내 금액	-
6. 지급여력금액으로 가산하는 항목	-
VI. 지급여력금액	409,156

지점은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보험리스크, 주식리스크,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의 지급여력금액은 동일합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

제 20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I. 기본요구자본		257,963
1.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224,678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69	
3. 시장위험액	46,611	
4. 신용위험액	9,261	
5. 운영위험액	14,585	
(분산효과)	37,241	
II. 법인세조정액		53,626
III. 기타요구자본		-
1.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	
2.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대응치	-	
3.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	
IV. 지급여력기준금액		204,338

지점은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보험리스크, 주식리스크,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동일합니다.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 보고서

2024. 3



Reinsurance Group of America

검토보고서

「보험업감독규정」 제 6-8 조 4 항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 개요

1. 자격요건의 확인

법인명	지에스금융보험계리컨설팅	대표자명	업 재섭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1.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5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고 있는 법인만 해당한다)인 보험계리업자일 것		적정함		
2. 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보험계리업자가 아닐 것		적정함		
3. 대표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있는 보험계리업자가 아닐 것		적정함		
4. 대표자나 그 배우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인 보험계리업자가 아닐 것		적정함		
5.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계리업자가 아닐 것		적정함		
6.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대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 또는 문책 나. 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다. 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라. 법 제 192 조제 1 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		적정함		
<u>종합의견</u>				
자격요건을 확인한 결과 적정함				
2024 년 4 월 15 일				
지에스금융보험계리법인 대표이사 업 재섭 (인)				



2. 검증대상

회사명	알지에이재보험
검증대상 사업연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 검증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검증시간

(단위: 명, 시간)

검증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보험계리사		非 보험계리사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2	-	2	-	2	-	4	-
투입시간		-	240	-	-	-	240	-
		-	240	-	-	-	240	-
					240	-	240	-
					240	-	240	-

주: 1) 각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시간이 없을 경우 "-"로 표기

2) 검증참여 인원수 모두를 기록(담당이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당이사가 2명 이상일 수 있음)

3) 담당이사이면서 등록계리사는 2명

4. 주요 검증실시내용

구분	내역		
전반검증계획 (검증착수단계)	-수행시기: (연도말검증): 2024.3.11 ~ 2024.3.29 (15 일) -주요내용: 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와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의 적정성(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② 보험위험액 적정성 검증(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③ 금리위험액 적정성 검증		
검증 주요내용	수행시기	투입인원	주요 검증업무 수행내용
	24. 3 . 11 . ~24. 3 . 29 . (15 일)	상 주 (4)명 비상주 ()명	연도말 검증으로 상기 검증계획상의 검증항목 검증
	. . . ~ . .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 . . ~ . .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 . . ~ . .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 . . ~ . .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 . . ~ . .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외부 전문가 활용	-검증 활용 내용: 상기 검증계획상의 검증항목 검증 -수행시기: (연도말검증): 2024.3.11 ~ 2024.3.29 (15 일)		

주: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로 표기

2) 해당 검증업무를 수행한 기간(또는 날짜)과 일수를 기재, 단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검증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일수 계산 시 제외

3) '실무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검증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입

4) '검증 활용 내용'은 구체적인 업무 성격과 범위를 기재하며, 다수의 활용 건이 있는 경우 구분하여 표시

5. 피검증사(리스크관리팀)와의 커뮤니케이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차	24.3.11	5 명 -알지에이: 김대환차장	대면 회의	-업무계획및 진행경과
2 차	24.3.18	-지에스:김운환대표,임대식대표,김길미사원, 김은희사원	대면 회의	-각 항목별 질의 및 답변
3 차	24.3.25	5 명 -알지에이: 김대환차장 -지에스:김운환대표,임대식대표,김길미사원, 이제하사원	대면 회의	-계리방법서 등 문서화 내용 협의

- 주: 1) 피검증사와 검증 관련 실시한 회의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
 2) 참석자는 피검증사 측과 검증인 측 각각에 대해 주요 참석자의 소속, 직위, 총 참석인원을 기재
 3)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대면회의, 비대면회의(화상, 유선 등),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

II 검증의견

1. 「검토보고서 실무매뉴얼」에 따른 항목별 검증의견

검증항목	검증의견
1.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항에 따라 외부검증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검토보고서에 대해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 발간한 「검토보고서 실무매뉴얼」의 검증목적, 항목 및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함
2.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일반손해보험)	
3.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4.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5.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등의 적정성 검증	

2. 종합의견

종합의견	적정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근거</p>	<p>□산출기준</p> <p>-「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p> <p>□검증항목</p> <p>-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p> <p>-「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p> <p>-「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등의 적정성 검증</p> <p>상기 규정에 의거 수행된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기초자료 비교 분석, 재계산, 통계적 추정, 제반가정,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함</p> <p style="text-align: center;">-</p>

목 차

Part 1-1. [생명장기손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 자산의 적정성 검증.....	9
1.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적정성 검증	9
1.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9
1.2. 보험료부채 산출의 적정성.....	16
1.3. 준비금부채 산출의 적정성 검증.....	47
1.4. 위험마진 산출의 적정성 검증.....	52
2. 보험계약대출 산출의 적정성 검증.....	55
3.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59
3.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59
3.2. 재보험자산 산출의 적정성 검증.....	63
Part 1-2. [일반손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 자산의 적정성 검증.....	69
1.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적정성 검증	69
1.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69
1.2. 보험료부채 산출의 적정성 검증.....	73
1.3. 준비금부채 산출의 적정성 검증.....	77
1.4. 위험마진 산출의 적정성 검증.....	81
2.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84
2.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84
2.2. 재보험자산 산출의 적정성 검증.....	89

Part 2-1. [생명장기손해] 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95
1. 업무보고서 적정성 검증.....	95
1.1. 계리현금흐름모델 생성 현금흐름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대사.....	95
1.2. 금융감독원 제출 업무보고서 간의 비교 대사.....	102
1.3. 분석적 검토	106
2. 업무 적정성 검증.....	115
2.1. 기본 확인 사항 점검.....	115
2.2. 운영사항 점검.....	115
Part 2-2. [일반손해] 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116
1.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116
1.1. 계리현금흐름모델 생성 현금흐름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대사.....	116
1.2. 보험가격 및 준비금 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검증	119
1.3. 대재해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검증	125
Part 3. 금리위험액 산출 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	130
1. 업무보고서 적정성 검증.....	130
1.1. 기본사항.....	130
1.2. 계리현금흐름모델 생성 현금흐름과 금융감독원 업무 보고서 대사	131
1.3. 금융감독원 제출 업무보고서 간의 비교 대사.....	134
1.4. 분석적 검토	137
2. 업무 적정성 검증.....	141
2.1. 기본 확인 사항 점검.....	141
2.2. 운영사항 점검.....	141

Part 1-1. [생명장기손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 보험 자산의 적정성 검증

1.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적정성 검증

1.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3장 제3-1조의 나(평가대상)
- 별표22 제3장 제3-1조의 다(분류기준)
- 별표22 제3장 제3-2조의 가(원칙)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제3-1조 일반원칙

- 가. (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 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 (1) 장기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3 조제 12 호의 기준을 따른다.
- 나. (평가대상)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1) "나."에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6-11 조 제 3 항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을 포함한다.
- 다. (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제3-2조 현행추정부채

- 가. (원칙)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 간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1) 현행추정부채는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① 불확실성이라 함은 관련된 지급보험금의 발생시기/주기/심도, 사업비 발생규모, 계약자행동,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말한다.
 - (2)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유입, 유출)을 반영해야 한다.
 - (3) 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4)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연관된 항목의 경우 현행 추정부채에 포함한다.
 - (5)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6)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제 5 장 보험부채 할인율"에서 정한 조정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7) "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감독회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검증 목적

- (1) 평가대상 보험계약의 적정성 확인
- (2) 보험계약 분류의 적정성 확인
- (3) 현행추정부채 산출원칙 준수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평가대상의 적정성

① '23년 12월 기준 보유계약의 현행추정부채 현황

☞ 보유계약은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분류함.

(단위 : 천원)

(현행추정부채)	전년말	당년 1 분기	당년 2 분기	당년 3 분기	당년말	증감
	('22.12)	('23.03)	('23.06)	('23.09)	('23.12)	(전년말대비)
생명·장기손해보험 계		-379,961,741	-609,546,192	-606,643,963	-660,594,569	
생명 - 01. 보장성		-308,075,919	-542,949,132	-541,252,936	-584,236,956	
장기 -01. 인보험		-71,885,822	-66,597,060	-65,391,027	-76,357,612	
일반손해보험 계		-2,639,021	-2,236,436	-2,040,329	629,262	
03. 종합/국내		-2,624,368	-2,226,243	-2,028,040	642,575	
07. 상해/국내		-14,653	-10,193	-12,289	-13,313	

② 현금흐름 추정대상 현황

☞ 현금흐름 산출대상이 모든 계약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선정됨을 확인함

구 분	보유계약 건수	현금흐름 산출건수	비고
생명/건강	486	486	
생명/사망	135	135	
생명/종합	1	1	
장기/질병	134	134	
장기/상해	7	7	
일반/종합	1	1	
일반/상해	2	2	
합 계	766	766	

(2) 분류 기준의 적정성

☞ 보험부채는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 보험계약대출/재보험자산은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함.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생명 장기	일반	합계
현행추정부채	-660,594,569	629,262	-659,965,306
위험마진부채	86,840,426	10,375	86,850,801
보험계약대출자산	-	-	-
재보험자산	-354,819,469	297,686	-354,521,784

(3) 현행 추정부채 산출원칙 준수

① 산출 대상

i) 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험계약 관련 모든 현금흐름(간접사업비, 수취채권, 지급채무 포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는지 확인

☞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확실성을 반영함을 확인함

불확실성	고려 방식
지급보험금 시기/주기/심도	경과보험료 대비 보험금간 비율에 대해 과거 통계에 기반한 장래가정(위험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해 장래 현금흐름(보험금 발생액)을 추정
사업비 발생규모	모든 사업비 지급 통계에 기반하여 장래가정(사업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해 장래 현금흐름(사업비 지출액)을 추정
계약자행동	과거 통계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자 해지로 인한 장래 보험료 규모의 감소에 대한 장래가정(해지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해 장래 보험료 규모를 추정
재보험사별 거래상대방 위험	재보험사별 신용등급에 기반한 장래 부도율 가정을 산출하고 이에 의해 부도시 장래 손실액을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

ii) 현금흐름 및 현재가치 산출 내역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보험금, 이익수수료, 사업비 등 모든 현금흐름에 대해 원수보험계약의 만기(최대 100년) 까지 발생시점별 장래 추정치를 산출하고, 현재(결산시점)와 현금흐름 발생시점간 시간가치를 적정 반영함을 확인함

- ☞ 생명/장기보험은 신규계약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체결비가 존재하나, 일반손해보험은 신규유입이 없어 체결비 없음
또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손실계약이며 이익수수료도 없음
- ☞ 장래 발생시점별 현금흐름 추정치에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할인시 업무보고서 수치와 일치함을 확인함

[생명/장기보험(수재)]

(단위 : 천원)

시점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보험료	보험금	이익수수료	체결비	관리비	
1 차년	497,286,804	387,045,965	51,553,571	3,958,179	14,255,976	-40,473,113
2 차년	481,853,788	374,675,716	86,224,660	-	13,813,543	-7,139,869
3 차년	462,289,875	358,743,770	81,033,658	-	13,252,712	-9,259,735
4~5 차년	868,470,930	677,634,210	133,387,530	-	24,895,739	-32,553,450
6~10 차년	1,881,837,750	1,470,663,184	267,380,510	-	53,941,166	-89,852,890
11~30 차년	5,477,352,422	4,128,873,332	659,062,545	-	157,002,994	-532,413,550
31~50 차년	2,281,307,744	1,624,265,437	188,644,882	-	65,391,406	-403,006,019
51~100 차년	413,582,709	313,911,086	30,426,610	-	11,854,935	-57,390,079
단순합계	12,363,982,024	9,335,812,700	1,497,713,967	3,958,179	354,408,472	-1,172,088,705
현가합계	6,761,136,452	5,155,030,764	630,953,343	3,867,365	193,807,869	-777,477,111
(평균현가율)	54.68%	55.22%	42.13%	97.71%	54.68%	66.33%
결산금액	6,761,136,452	5,155,030,764	630,953,343	3,867,365	193,807,869	-777,477,111

[일반손해보험(수재)]

(단위 : 천원)

시점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보험료	보험금	이익수수료	체결비	관리비	
1 차년	176,878	201,388			24,250	48,760
2 차년	176,315	200,978			24,182	48,845
3 차년	176,004	200,309			24,142	48,447
4~5 차년	350,029	395,936			47,999	93,906
6~10 차년	808,918	898,126			110,577	199,785
11~30 차년	2,202,708	2,402,661			292,542	492,495
31~50 차년	472,119	487,802			45,764	61,447
51~100 차년	52,389	56,254			3,306	7,171
단순합계	4,415,360	4,843,455			572,762	1,000,857
현가합계	2,630,998	2,902,551			352,073	623,626
(평균현가율)	59.59%	59.93%			61.47%	62.31%
결산금액	2,630,998	2,902,551			352,073	623,626

iii) 수취채권, 지급채무 내역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상채권과 선수보험료는 없음)

(단위 : 천원)

구분		생명·장기	일반손해	합계	분류
수취채권	보험미수금	-134,220,680	-54,127	-134,274,807	준비금부채
	구상채권	-	-	-	(반영대상 없음)
지급채무	보험미지급금	138,149,572	44,271	138,193,842	준비금부채
	선수보험료	-	-	-	(반영대상 없음)

② 구분산출

i) 현행추정부채 내역

☞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생명/장기보험과 일반손해보험 각각에 대한 '23년말 평가금액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함

☞ 생명/장기보험의 경우, 이익이 발생되고 있어 보험료부채 평가금액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손해보험은 손실계약으로 보험료부채 평가금액이 양수(+)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생명, 장기손해	일반손해	합계
현행추정부채	보험료부채	-777,477,111	623,626	-776,853,484
	준비금부채	116,882,542	5,636	116,888,178
	합 계	-660,594,569	629,262	-659,965,306

ii) 퇴직보험/퇴직연금부채 비교

☞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채 없음.

(단위 : 천원)

구분		건전성 재무상태표	감독회계 재무상태표	차이
원리금보장형	퇴직보험	-	-	-
	퇴직연금	-	-	-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	-	-

③ 할인율 시나리오 적용 현황

※ 요건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출 시, 시행세칙 별표22의 제5장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를 적용하였는지 확인

☞ 보험위험을 담보로 하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결정론적 시나리오 적용

공동재보험의 경우는 금리확정형 원수계약이 수재 대상으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하지 않음을 확인함

구분	적용 시나리오	비고
일반재보험	결정론적 시나리오	일반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재보험의 경우,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통한 시간가치만을 반영
공동재보험	결정론적 시나리오	금리확정형 원수계약을 대상으로 수재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 미적용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평가대상 모든 보험계약이 포함되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 6-11 조 제 3 항에 따른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이 포함되었는가?	적정	
2. 분류기준 보험부채가 현행추정부채, 위험마진으로 구분되었는가? 보험계약대출과 재보험자산이 별도의 자산으로 기재되었는가?	적정	
3. 예외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보험감독회계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는가?	적정	

1.2. 보험료부채 산출의 적정성

1.2.1. 보험료 부채

① 보험료 부채 평가 현황

☞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상품그룹을 구분하였으며, 보유한 상품은 생명의 보장성과 장기손해의 인보험에 해당함.

평가금액은 보험부채 평가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금액을 산출함.

(단위 : 천원)

상품그룹		평가금액	비고
생명	01. 보장성	-663,004,430	
장기손해	01. 인보험	-114,472,680	
생명·장기손해	계	-777,477,111	

1.2.1.1 현금흐름 산출

가. 관련 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나항(보험료부채)의(1)-(4)

나. 보험료부채

(1) 현금흐름 산출단위

- ① 보험료부채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은 주계약(장기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산출결과는 주계약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② 위험률 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아야 된다.

(2) 현금흐름 산출대상

-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에 대한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3) 계약의 경계

- ①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③ 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ㄱ."에 해당하는 동시에 "ㄴ." 또는 "ㄷ."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시점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은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ㄱ." 부터 "ㄷ."까지의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 ㄴ.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 ㄷ.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③"ㄷ."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ㄱ. 보험회사가 장래 모든 갱신시점에 최초 계약시점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ㄴ. 단체보험의 경우 상기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단위인 단체를 의미한다.

④ 보험회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 ㄱ.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과거 경험통계에 따른 경과기간별 보험료의 조정률 및 합리적 수준의 최종 목표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 ㄴ. "ㄱ."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경험통계에 "(5) ⑥경영자행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 ㄷ. "ㄱ." 및 "ㄴ."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자행동을 포함한 보험료 조정률의 최대 한도는 갱신주기별로 다음 "a."부터 "c."까지 중 가장 작은 비율로 한다.
"a."와 "b."의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과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되, 변경을 요하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보험회사는 위험구분단위별 최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 a.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b.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실손의료보험 위험구분단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별로 감독장관이 제시하는 보험료 조정률 표준 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 c. 「보험업감독규정」 제 7-63 조에 의한 조정한도

ㄹ. 갱신시점 이후 사업비율과 해약율은 "(5)계리적 가정"의 산출원칙을 적용한다.

⑤ 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재계약은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4) (현금흐름 산출기간)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3)계약의 경계"에 따라 판단한 계약의 경계까지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검증목적

- (1) 보험료부채 현금흐름 산출에 있어, 산출단위, 산출대상, 계약의 경계, 산출기간 등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 확인
- (2) 보험료부채 현금흐름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주계약과 특약의 구분

※ 요건 : 주계약과 특약의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그 결과를 주계약 기준으로 통합하는지 확인

☞ 재보험계약의 경우, 원수와 달리 주계약 / 특약의 구분 구조가 없으며
수재 대상인 원수보험을 주계약 / 특약으로 구분하여 인수하지 않으므로
구분 산출 미적용

(2) 위험률 가정 구분 산정

※ 요건 : 서로 다른 담보를 구분하여 위험률 가정을 산정하는 지 확인

☞ 담보 유형별로 위험율 가정을 세분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3) 현금흐름 산출대상

※ 요건 : 평가시점 현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 사고 관련 금액만 현금흐름에 반영하는지 확인

☞ 사고발생일이 평가시점 이후인 보험사고 관련 현금흐름과 지급사유 해당일이 평가시점 이후인 비보험사고 관련 현금흐름만 반영하여 보험료부채를 산출함을 확인함

현금흐름 산출 항목	해당 사유
보험사고 관련	사고발생일이 평가시점 이전인 경우 준비금 부채로 반영 평가시점 이후인 경우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험료부채로 반영
비보험사고 관련	지급사유 해당일이 평가시점 이전인 경우 준비금 부채로 반영 평가시점 이후인 경우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보험료부채로 반영

(4) 계약의 경계

※ 요건 : 계약의 경계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

- ①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확인
- ②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 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③ 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수재계약이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 평가시점 보유하고 있는 수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음

☞ 수재 / 출재 중단가능 시점을 계약의 경계로 반영

수재계약(Treaty)별로 Recapture 조항에 따라 (출재/수재)보험회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 가능한 경우 계약의 경계를 단절함

☞ 평가시점 보유중인 공동재보험 계약은 Recapture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원수보험계약과 계약의 경계가 일치

계약의 경계 이슈 없음

(5) 현금흐름 산출기간

※ 요건 :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계약의 경계에 따라 판단한 계약의 경계까지로 하며 기간 내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하였는지 확인

☞ 수재 / 출재 중단가능 시점을 수재계약(Treaty) 조건에 따라 설정하여 해당시점까지 유입되는 원수보험의 현금흐름을 계약의 경계로 반영하여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추정

(6) 주요한 상품에 대하여 현금흐름 산출모델(엑셀 등)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 검증 수행

☞ 장래 이익수수료 및 사업비 산출모델(엑셀 및 VBA)을 점검하여 적정성을 확인함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p>1. 원칙</p> <p>현행추정부채에 보험계약의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는가? 이 경우에 미래현금흐름에 직접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포함되었으며,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적용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확률론적으로 산출하였는가?</p>	적정	
<p>원수보험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의 연관된 항목이 포함되었는가?</p>	적정	
<p>2. 보험료부채 (현금흐름)</p> <p>현금흐름은 주계약과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주계약을 기준으로 통합하였는가?</p>	적정	
<p>위험률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았는가?</p>	적정	
<p>평가시점 현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금액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만 현금흐름에 반영되었는가?</p>	적정	
<p>현금흐름산출과 관련한 "계약의 경계"는 IFRS17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계약의 경계"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단,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3-2 의 나.(3) 계약의 경계 ④에 따라 판단되어 처리되었는가?</p>	적정	
<p>공동재보험의 계약의 경계판단은 인수보험사와 출재보험사가 동일한가?</p>	적정	

1.2.1.2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계약자배당관련 부채

☞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은 건전성 재무상태표와 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내 작성된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함

선수보험료와 계약자배당관련 금액은 없음.

(단위 : 천원)

구분	건전성 재무상태표	감독회계 재무상태표	비고
보험미수금	134,274,807	134,274,807	준비금부채로 반영
보험미지급금	138,193,842	138,193,842	준비금부채로 반영
선수보험료	-	-	관련금액 없음
계약자배당관련	-	-	관련금액 없음

1.2.1.3 계리적, 경제적 가정

1.2.1.3.1 일반원칙

가. 관련 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나항(보험료부채)의(5)
- 별표 22 제 3-2 조 나항(5)의 ①(일반원칙)

(5) 계리적 가정

① 일반원칙

- ㄱ.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이하 '계리적 가정')은 현행추정에 따라 산출한다.
- ㄴ. 계리적 가정은 보험회사의 내·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보험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a.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것 보다 외부정보를 이용함이 보다 적절함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b.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c. 외부정보의 변화추세 및 당해 정보 처리에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
 - d. 외부정보 처리에 사용한 가정 및 방법론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갖출 것
 - e. 외부정보를 사용한 이후의 계량적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
 - f. "a."부터 "e."까지의 외부정보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ㄷ. 계리적 가정은 "㉔"부터 "㉘"까지를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a.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 b. 변경 전 산출기준 대비 변경 후 산출기준에 따른 가정이 미래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것
 - c. 산출기준 변경 전·후 계리적 가정의 차이와 부채평가에 미치는 계량적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것
 - d. "a."부터 "c."까지의 계리적 가정 변경·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 및 체계,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화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 ㄹ. 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 할 경우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ㅁ. "ㄹ."에서 일관성이란 산출된 가정의 계량적 수준을 의미하지 않고 고려된 요소, 산출 절차 등의 질적 요소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 ㅂ. 보험회사는 "㉔"부터 "㉘"까지의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경험통계 기간, 산출근거 등),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검증 목적

- (1) 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 원칙에 따라 산출하였는지 확인
- (2)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보험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외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확인
- (3) 계리적 가정을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출기준을 변경하였는지 확인
- (4)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계리적 가정을 현행추정을 하였는지 확인

다. 검증항목

(1) 내외부정보 사용

※ 요건 : 계리가정의 내·외부정보 사용 관련 방법론, 효과에 대한 검증, 변화의 추세, 합리적 판단 근거, 주 기적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사결정 기준 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내부통제, 문서화 이행이 적정한지 검증

☞ 가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2024년('23년말 결산 포함)에 적용할 가정을 결정

[2024년 제1차 가정관리위원회]

- 일시 : 2024. 2. 15

- 내용 : 2024년도 최선추정가정

- 대상 가정 : 위험률 / 해지율 / 사업비율 / 실손가정 / 기타 계리적 가정 / 경제적 가정

- 결정사항 : 2024년 최선추정가정 원안 의결

☞ 가정관리위원회의 부의시 가정산출 방법론 및 세부내역, 결과 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며 별도의 가정산출 매뉴얼(Assumption Calculation Manual, Jan 2022)도 문서화하여 관리

(2) 가정 적용의 일관성

※ 요건 : 계리적 가정이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된 가정과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 검증

☞ 계리적 가정이 보험료 산출 가정과 일관됨을 확인(계리적가정 산출 매뉴얼 참조)

(3) 변경관리

※ 요건 : 계리적 가정이 변경되는 경우, 중대한 외부환경변화 여부, 변경에 대한 적절한 확신의 근거, 변경으로 인한 계량적 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인지, 또한, 전 과정에 대한 산출 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에 대한 문서화는 적정한지 확인

☞ 검증결과 총괄 : 가정 변경 시, ① 외부 참조지표의 변경(표준사망률 등) 여부, ② 변경에 대한 적절한 확신의 근거 (경험통계분석 등), ③ 변경으로 인한 계량적 영향평가 (아래 표 참조)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 적인지, 또한 전 과정에 대한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에 대한 ④ 문서화 정도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 외부 참조지표의 변경 여부 :

외부지표 변경에 대해 가정산출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함

☞ 변경에 대한 적절한 확신 근거 :

경험통계분석 등을 통한 변경의 근거 또는 주기적 제산출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가정산출 기준 및 결과는 위험율, 해지율, 사업비율, 실손관련 가정 등 각 가정별로 문서화하여 정리함

☞ 변경으로 인한 계량적 영향평가 :

별도의 계량영향 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 문서화 :

가정관리위원회 부의자료 및 별첨의 가정산출 방법론 및 세부내역, 결과 자료,
별도의 가정산출 매뉴얼(Assumption Calculation Manual, Jan 2022)의 문서자료를 통해
문서화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2.1.3.2 사업비율 가정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3-2조 나항(5)의 ②(사업비율)

②사업비율

ㄱ. 사업비율은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 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a. "ㄱ."의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을 반드시 구분하여 야 한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㉞각 보험종목에 대한 사업비는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비와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직접귀속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ㄴ. 사업비율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a.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 미래기간 중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ㄷ. 사업비율은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검증목적

(1) 사업비율을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명예퇴직금 등 보험계약(투자계약 포함)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2) 사업비율을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3) 사업비율을 판매채널별 사업비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과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다. 검증항목

(1) 대상 사업비

※ 요건 :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비율을 산출하는지 확인

☞ 사업비율 산출시 일회성 비용으로 간주하여 제외하는 금액 없음

(단위 : 원)

발생총액 ①	일회성비용 ②	사업비율 산출 금액 ③	차이 ①-②-③
18,200,346,604	0	18,200,346,604	0
100.0%	0.0%	100.0%	0.0%

(2) 사업비 구분

※ 요건 : 합리적 기준에 따른 보험종목별 사업비 구분 여부, 각 보험종목별로 직접귀속 가능 /불가능 구분 및 직접귀속 불가능한 사업비의 합리적 반영 여부, 보험종목별 구분기준의 일관된 적용 및 문서화 여부를 확인

☞ 발생사업비는 비용유형(계정코드)과 조직(부서코드)별로 구분하여 집계 후, 사업비 현금흐름 산출 기준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함

☞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배분을 통해 계약(or 계약집합)에 귀속시키고 있음

(3) 사업비율의 선정

※ 요건 :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미래의 관련 정책변화, 효율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특히,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경우에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는지 확인

☞ 미래의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물가상승도 보험료를 원가동인으로 적용하여 추가로 고려하지 않음

(4) 사업비율 산출

※ 요건 : 판매채널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구분하고, 규정에 따라 산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확인

- ① 계약체결비용: 경과기간별로 구분 산출, 미래에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 물가상승률 반영 (신계약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구분)
- ② 계약유지비용: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물가상승률 반영
- ③ 손해조사비용: 보험사의 경험통계 활용
- ④ 투자관리비용: 투자관리비용은 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투자관리 비용을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해지 시 지급해야 할 금액(보험계약대출 잔액 차감)에 곱하여 경과기간별로 산출
 - 투자관리비용률은 현금흐름 산출단위별로 산출하며, 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
 - 투자관리비용률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
 - 보험계약대출의 현금흐름 산출단위별 투자관리비용은 별도로 구분 산출

☞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간접비로 구분하고 규정에 따라 산출한 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계약체결비는 초년도 보험료를 원가동인으로 적용하여 배부하며, 그 외 계약유지비 및 간접비는 총 보험료를 원가동인으로 적용하여 배부함

☞ 산출기준 :

구분	통계기간	원가동인	기타
계약체결비용	1년('22.7~'23.6)	초년도 보험료	
계약유지비용		총 보험료	
간접비용		총 보험료	

☞ 산출결과 :

(단위 : %)

구분	원가동인	전년도 가정	당년도 가정
계약체결비용	초년도 보험료		15.92%
계약유지비용	총 보험료		2.77%
간접비용	총 보험료		0.1%

☞ 문서화 :

가정관리위원회 부의자료 및 별첨의 가정산출 방법론 및 세부내역, 결과 자료,
 별도의 가정산출 매뉴얼(Assumption Calculation Manual, Jan 2022)의 문서자료를 통해
 문서화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2.1.3.3 해약률 가정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3-2조 나항(5)의 ③(해약률)

③해약율

- ㄱ.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이 때, 경험통계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ㄴ. 해약율 산출 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시 연령,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 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의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 시 세금효과, 보험가입 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 a.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다음의 해약률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 ㉞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은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 및 누적해약률을 낮은 수준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i) "㉞"에도 불구하고,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된 초기 경과년도에는 해약환급금 수준이 낮게 설계된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약률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높을 수 있다
 - ㉟ 납입기간 종료 등 일정기간 경과 후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100% 등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상품을 설계한 경우에는 "i)" 및 "ii)"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지유보효과 및 해지상승효과 반영방법에 대한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증 결과를 문서화할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계약자행동 가정을 적용할 수 있다.
 - i) 해약환급금 증가 직전 해지유보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증가규모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간동안 해약률이 "0"으로 수렴하는 해약률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 ii) "㉞"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이후 1년 이상은 해약환급금이 더 높게 설계된 상품보다 경과기간별 해약률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b.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㉞"b."에서 해약률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기준(이하, 고금리 구분 이율)으로 "제5장"에 따라 산출된 장기선도금리를 사용한다.
 - ㉟이 경우, 회사가 직전 회계연도에 설정한 고금리 구분 이율과 장기선도금리의 차이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도 직전 회계연도의 고금리 구분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검증목적

- (1) 경험통계의 적용, 통계기간 및 경과기간 구분의 적정성 및 일관성 확인
- (2)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등 계약별 위험인자 반영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일반원칙

※ 요건 :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 구분하여 경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약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매 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지 확인하였음.

☞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유형과 경과년도별로 구분하여 매기 일관되게 산출/적용함

(2) 해약률 산출

※ 요건 : 해약률 산출 시 보험종목 및 계약자 옵션의 종류, 보험가입 시 연령,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 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 예상액, 해지 시 세금효과, 보험가입채널(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계약부활, 승환계약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는지 확인

☞ 산출기준 :

구분	산출기준	비고
통계기간	총 5년	
관찰기간	2018. 07월~ 2023. 06월	
원가동인	원수계약 건수	
경과기간구분	1 ~ 10년	
상품구분	생명(사망/건강), 장기(사고/질병), 일반손보	무해지/저해지, 고금리계약 구분
보정방법	오류율이 과도하게 높은 회사의 통계자료 제외 Premium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Treaty의 Data 사용	

☞ 산출결과 : 상품군별 산출결과는 아래와 같음을 확인함(경과년도별 연간 해지율%)

1. Life-Death

Year	1	2	3	4	5	6	7	8	9	10
%	14%	18%	15%	12%	9%	7%	7%	7%	6%	6%

2. Life-Health

Year	1	2	3	4	5	6	7	8	9	10
%	16%	16%	13%	11%	9%	9%	7%	6%	6%	6%

3. Non Life-Accident

Year	1	2	3	4	5	6	7	8	9	10
%	9%	16%	15%	14%	13%	12%	11%	8%	7%	7%

4. Non Life-Disease

Year	1	2	3	4	5	6	7	8	9	10
%	16%	14%	12%	11%	10%	9%	7%	6%	6%	6%

5. General

Year	1	2	3	4	5	6	7	8	9	10
%	11%	14%	11%	10%	10%	8%	8%	7%	7%	6%

☞ 문서화 :

가정관리위원회 부의자료 및 별첨의 가정산출 방법론 및 세부내역, 결과 자료,
 별도의 가정산출 매뉴얼(Assumption Calculation Manual, Jan 2022)의 문서자료를 통해
 문서화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2.1.3.4 위험율 가정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2 조 나항(5)의 ④(위험률)

① 위험률

- ㄱ.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보험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한다.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ㄴ.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담보 별로 산출해야 하며 연령, 성별, 직업, 흡연 유무 등 위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a. 위험담보는 사망담보, 생존담보(연금), 생존담보(건강),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

나. 검증목적

- (1) 경험통계 적용, 통계기간 및 경과기간의 구분, 미래 관리정책 반영의 적정성 및 일관성 확인
- (2) 위험담보 구분과 연령 등 위험인자 반영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일반원칙

※ 요건 :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미래의 관리정책을 반영하고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위험률을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위험률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경험오차 분석 수행을 통해
 매기 일관되게 위험률 가정을 적용함

(2) 위험률 산출

※ 요건 : 위험률 산출 시 위험담보별로 산출하고 (사망, 생존연금, 생존건강, 일반손해 등/보다
 세분화 가능), 연령·성별·직업·건강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는지 확인

☞ 산출기준 : 수재 고객사의 경험통계와 참조위험율 및 자사통계를 활용하여
 위험율 가정을 산출함을 확인함.

[암담보 위험률]

구분	산출기준	비고
통계기간	A사: 2012.Q4 ~ 2018.Q4	
산출동인	건수	
경과기간구분	있음	
상품구분	없음	
납기구분	없음	
산출단위	연령, 성별	
판매채널 구분	없음	
보정방법	A/E ratio를 이용한 참조율 수정	
산출방법	고연령 구간 국민통계활용 보외	
기타사항		

[CI 담보 위험률]

구분	산출기준	비고
통계기간	A사: 2012~2021, B사: 2014~2019	
산출동인	건수	
경과기간구분	있음	
상품구분	없음	
납기구분	없음	
산출단위	연령, 성별	
판매채널 구분	없음	
보정방법	A/E ratio를 이용한 건강보험기초율에 수정	
산출방법	고연령구간 미국 워싱턴대학 의대산하 보건계량연구소의 2017년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보외	
기타사항		

☞ 산출결과

[암담보 위험률]

(가입자 1000명당 발생률)

구분	경과기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보정전	0.6019	0.6583	0.7200	0.7921	0.8713	0.9585	1.0545	1.1600	1.2609	1.3705
보정후	0.6293	0.6883	0.7528	0.8281	0.9110	1.0022	1.1025	1.2128	1.3183	1.4329

[CI 담보 위험률]

(가입자 1000명당 발생률)

구분	경과기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보정전	0.2949	0.3284	0.3669	0.4109	0.4610	0.5175	0.5811	0.6519	0.7304	0.8169
보정후	0.3577	0.3848	0.4147	0.4471	0.4816	0.5447	0.6147	0.6926	0.7780	0.8704

☞ 문서화 :

가정관리위원회 부의자료 및 별첨의 가정산출 방법론 및 세부내역, 결과 자료,
별도의 가정산출 매뉴얼(Assumption Calculation Manual, Jan 2022)의 문서자료를 통해
문서화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2.1.3.5 계약자행동가정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2 조 나항(5)의 ⑤(계약자행동)

② 계약자행동
ㄱ. 계약자행동 가정(해약율,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율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 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ㄴ. 계약자행동 가정은 금융시장의 상황, 보험회사의 대고객 정책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나. 검증목적

- (1) 과거 계약자행동에 기반하여 산출하였는지 확인
- (2) 금융시장의 상황, 회사의 대고객 정책 등의 위험인자 반영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일반원칙

※ 요건 : 계약자행동 가정을 과거 계약자행동 기반으로 산출하였는지 확인

☞ 해지율 외 계약자 행동 가정은 적용하지 않음

(2) 계약자행동 가정 산출

☞ 해지율 외 계약자 행동 가정은 적용하지 않음

1.2.1.3.6 할인율 가정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5 장 (보험부채 할인율)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

5-1. 일반원칙

- 가.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 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금리기간구조)을 사용한다.
- 다. 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5-2. 할인율 산출구조

- 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산출한다.
- 나. (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

5-3. 원화 할인율 산출

- 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1) (관측구간)국고채 등 시장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최종관찰만 기(LOT; Last Observed Term)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 ① 최종관찰만기는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 지표물 호가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②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만기별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 ③ 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 시에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한다.
 - ④ 관측구간은 최종관찰만기의 기간까지로 한다.
 - (2) (수렴구간)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가 없어 장기선도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선도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금리기간구조 결정의 적정성 확인
- (2)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 및 확률론적 시나리오 산출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일반원칙

- ※ 요건 :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수익률 곡선에 기반을 두어 금리기간구조를 결정하였는지, 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 자본시장의 수익률 곡선에 기반을 두어 현금흐름 기간별 할인율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통화는 적용사항 없음(원화 할인율만 사용)

(2) 할인율 산출

- ※ 요건 :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 가산된 조정 무 위험 금리기간 구조로 산출되었는지,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한 산출 여부를 확인

☞ 결정론적 시나리오 :

채권시장에서 관측되는 무위험수익률(국채금리)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 곡선을 적절히 산출하여 적용

[할인율 산출 파라미터]

장기선도금리	최종관찰만기	수렴시점	수렴오차	변동성조정
4.80%	20년	60년	1bp	0.762%

[기간별 할인율 곡선]

경과년	경과월	할인율 FWD	할인율 SPOT	현가율
0.5	6	4.20%	4.28%	97.93%
1	12	4.07%	4.23%	95.96%
3	36	3.90%	3.93%	89.09%
5	60	3.79%	3.94%	82.44%
10	120	3.81%	3.96%	67.82%
30	360	4.49%	3.97%	31.05%
50	600	4.77%	4.26%	12.44%
75	900	4.80%	4.43%	3.86%
100	1200	4.80%	4.52%	1.20%

☞ 확률론적 시나리오 :

해당 없음(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적용하지 않음)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계리적·경제적 가정	적정	
계리적 가정의 내부정보, 외부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방법론, 효과에 대한 검증, 변화의 추세, 합리적 판단근거, 주기적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사결정 기준 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내부통제, 문서화 이행 여부가 적정한가?	적정	
계리적 가정이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된 가정과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적정	
계리적 가정이 변경되는 경우, 중대한 외부 환경변화 여부, 변경에 대한 적절한 확신의 근거, 변경으로 인한 계량적 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인가? 또한, 전과정에 대한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에 대한 문서화는 적정한가?	적정	
2. 사업비 가정	적정	
사업비 가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구분되며, 장기, 일반보험과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분 기준이 문서화되었는가? 또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이때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사업비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가정이 산출된 것인지 확인하였는가?	적정	
사업비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미래의 관련정책변화, 효율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특히,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적정	
사업비 가정은 판매채널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적절하게 구분되었는가?	적정	
특히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계약체결비용: 경과기간별로 구분산출, 미래에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물가상승률 반영 (신계약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구분) - 계약유지비용: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물가상승률 반영 - 손해조사비용: 보험사의 경험통계 활동 - 투자관리비용: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부동산, 주식 운용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 등(상세 규정 참조)	적정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p>투자관리 비용을 가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대상: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 - 제외: 부동산, 주식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 (개별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 자산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 발생 비용은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배분) - 보험료부채 현금흐름 단위별 투자관리 비용 = 투자관리비용을 X 해지시 지급액 (보험계약대출 잔액 차감, 직전 결산기말 시점 기준, 경과기간감안) (*) 투자관리비용율: 보험료부채 현금흐름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로 산출, 보험료부채 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p>	적정	
<p>3. 해약률 가정</p>		
<p>해약률은 보험사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 구분하여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매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해약률의 가정에 다음의 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보험종목, 계약자옵션종류, 보험가입 연령, 경과 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보험료 납입 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수준, 해약환급금 규모, 계약자배당예상, 해지 시 세금효과, 판매채널, 수당, 계약상태(부활, 승환 여부 등),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 차이</p>	적정	
<p>4. 위험률 가정</p>		
<p>위험률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미래의 관리정책을 반영하고 경험통계 기간은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였는가? 당의 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위험담보별 산출 (사망, 생존연금, 생존건강, 일반손해 등/보다 세분화 가능) - 연령, 성별, 직업, 건강 요소 등</p>	적정	
<p>5. 계약자 및 경영자행동 가정</p>		
<p>계약자행동 가정(해약률,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률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통계에 기반하고, 금융시장 상황, 대고객정책을 반영하여 산출되었는가?</p>	적정	
<p>경영자행동 가정은 객관적인 방법이 결정되었고, 사업관행을 변화시킬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 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p>	적정	
<p>경영자 행동가정은 검증인의 독립적인 검증결과 적정한가? 경영자행동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다음 사항의 합리성을 회사가 검증하고 분서화 하였는가? (대상: 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정책, 사업비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 -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 행동 비교 -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 행동 가정 비교 -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공</p>	적정	
<p>6. 할인율 가정</p>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수익률 곡선에 기반을 두어 금리기간 구조를 결정하였는가? 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였는가?	적정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저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로 산출되었는가?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보형을 통한 산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적정	

1.2.1.4 옵션 및 보증 평가

가. 관련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 6-12 조제 3 항제 3 호(설정률 가감한도 : 공시이율의 20%)
- 제 7-6 조제 3 항제 3 호(공시이율 적용단위)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5 장 (보험부채 할인율)
- 별표 22 제 3 장 제 3-2 조나항(5)(계리적 가정)
- 별표 22 제 3 장 제 3-2 조나항(6)(옵션 및 가정평가)
- 별표 22 제 5 장 제 5-3 조나항(5)(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 별표 22 제 5 장 (보험부채 할인율)
- 별표 27 (미래공시기준이율)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

5-1. 일반원칙

- 가.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를 현행추정현금흐름에 조정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 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yield curve)에 기반을 두어 기간별로 다른 할인율(금리기간구조)을 사용한다.
- 다. 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5-2. 할인율 산출구조

- 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산출한다.
- 나. (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하는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

5-3. 원화 할인율 산출

- 가.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구간(관측, 수렴, 보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1) (관측구간)국고채 등 시장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최종관찰만 기(LOT; Last Observed Term)까지의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 ① 최종관찰만기는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 지표물호가 스프레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②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국고채의 만기별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민평평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한다.
 - ③ 만기별 수익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 시에는 Smith-Wilson 보간법을 사용한다.
 - ④ 관측구간은 최종관찰만기의 기간까지로 한다.
 - (2) (수렴구간)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시장정보가 없어 장기선도금리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구간으로, 이 구간의 선도금리가 장기선도금리(LTFR; Long Term Forward Rate)에 수렴하도록 무위험이자율을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TVOG 검증결과의 적정성 확인
- (2) 공시이율 적용의 적정성 확인
- (3) 변액보험 평가 및 펀드 시나리오 적용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 TVOG / 공시이율 / 변액보험 평가는 해당사항 없음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보험료 부채의 미래 현금흐름에 다음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평가되었는가? - 옵션: 계약해지, 위험보장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약자 행동에 따른 옵션 - 보증: 최저보증이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소적립금 보증	적정 적정 적정	
옵션 및 보증가치(TVOG)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에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는가?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의 검증결과는 적정한가?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의 검증결과는 적정한가?	적정	
금리연동형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되었고, 시나리오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가 적용되었고, 미래 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금리시나리오는 503.나.의 조정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5-3.다.의 기준에 따라 산출 - 투자관리비용률은 3-2. 나.(5) ㉔.㉕.h.㉖에서 정한 기준 - 조정률은 3-2. 나.(5) ㉗에서 정한 기준, '17.3월까지 판매된 상품의 경우 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제3항 제3호의 설정률 가감한도 준수 여부	적정 적정 적정 적정	
변액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3-2.나. (6) ㉘에서 정한 기권에 의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 (채권수익률 시나리오의 적정성, 주식수익률 시나리오의 적정성, 자체 기준 적용시 입증 결과 등 문서화의 적정성)	적정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되었는가? 유효성검증 기준은 5-3 다(4)를 준용하였는가? 이외의 검증 기준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 결과의 타당성 및 문서화는 적정한가?	적정	

1.3. 준비금부채 산출의 적정성 검증

1.3.1. 현금흐름 산출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3-2조(현행추정부채)의 다.준비금부채

다. 준비금부채

(1)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 준비금 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ㄱ.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ㄴ.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a. "ㄴ."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3-2.나.(5)㉗"을 준용한다.

ㄷ.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a. 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래손해조사비=(개별추산액×50%+미보고발생손해액×100%)× 손해조사비율

▶ 개별추산액 :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미보고발생손해액 : 미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추산보험금

▶ 손해조사비율 : 최근 3년 지급보험금 대비 손해조사비 비율

ㄹ.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가능액

나. 검증목적

(1)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 요소인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장래손해조사비, 담보 매각 또는 구상권 행사 등으로 인한 회수가가능액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일반원칙 :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2)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장래손해조사비, 회수가능액의 적정성 확인

☞ 평가시점 이전에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으며,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미수보험료 등도 추가로 포함하여 반영하고 있음

☞ 평가시점 이전에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으며, 보험회사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포함하여 미보고발생손해액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미보고발생손해액과 관련하여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장래손해조사비로 반영함을 확인함

(단위 : 천원)

금액구분	K-ICS 기준	감독회계	차 이	비고
기보고발생손해액	10,618,945	10,618,945		개별추산액 (OS)
미보고발생손해액	101,843,617	101,689,920	153,697	할인율 차이(RA 제외 비교)
장래손해조사비	506,582	505,889	693	할인율 차이
미수/미지급	3,919,035	3,919,035	0	
회수가능금액	0	0	-	
합계	116,888,178	116,733,787	154,390	

1.3.2.계약자 배당 관련 부채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

- 제 6-11 의 7 조(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 제 6-14 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제6-11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 ①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 ②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 31.>
- ③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총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④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제6-14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 ① 계약자배당은 총괄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 31.>
- ② 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③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에서 제6-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04. 3. 31. 2010. 4. 1.>
- ④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원천을 감안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1.>
- ⑤ 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⑦ <삭제 2010. 4. 1.>
- ⑧ 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 지급시까지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개정 2010. 4. 1.>
- ⑨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납입할 보험료와 상계·보험금 또는 제한금 지급시 가산방법 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 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1.>

나. 검증목적

(1) 계약자배당 준비금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적립대상계약의 적정성

☞ 대상 없음

(2) 분석적 검증

☞ 대상 없음

(3) 배당금 부리이자

☞ 대상 없음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 다음 항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산출되었는가?	적정	
-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적정	
- 보고되지 않았으나, 기 발생한 보험금	적정	
- 장래손해조사비(직접산출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3-2.다.(1)①ㄷ.㉠에서 정한 간편법 적용가능)	적정	
-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적정	

1.4. 위험마진 산출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3-3조(위험마진)

3-3. 위험마진

가.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85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1)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①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 ② "①"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현행추정부채에서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 ③ "①"의 정규분포의 99.5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의 크기와 같다.

ㄱ.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은 "IV.2-1.나."에 따라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애·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에 대해 위험액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검증목적

(1) 위험마진 산출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위험마진 산출의 적정성

※ 요건 :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85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하는지 확인

☞ 시행세칙 [별표22] 제3장제3-3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의 특성에 기반한 위험마진 산식을 적용

- 위험마진 = 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제외) ÷ $Z_{99.5\%}$ × $Z_{85\%}$

- 회사의 위험마진 = 215,823 ÷ 2.576 × 1.036 = 86,840 백만원

(2) 위험마진 산출요소의 적정성

※ 요건① : 위험마진 산정 시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예; 99.5%, 85%), 대상위험(생명, 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 제외)의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

※ 요건② : 상관관계 반영 및 계약별 배분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 위험마진 산정 시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고(99.5%, 85%), 대상위험(생명, 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 제외)의 범위를 정확히 반영함.

(단위 : 천원)

하위위험요인	보험위험액 (대재해포함)	보험위험액 (대재해제외)	위험마진	비율
사망	32,701,111	32,701,111	13,157,907	40.2%
장수	-	-	-	40.2%
장해질병	167,614,739	167,614,739	67,442,944	40.2%
장기재물기타	-	-	-	40.2%
해지	95,131,493	95,131,493	38,277,946	40.2%
사업비	18,877,116	18,877,116	7,595,563	40.2%
대재해	21,796,525	-	-	-
보험위험계 (분산효과반영전)	336,120,985	314,324,460	126,474,361	40.2%
보험위험계 (분산효과반영후)	224,678,049	215,822,952	86,840,426	40.2%
분산효과비율 (반영후/반영전)	66.8%	68.7%	68.7%	

<분산효과 반영 상관계수>

구분	사망	장수	장해질병	재물기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사망	1	-0.25	0.25	0	0	0.25	
장수	-0.25	1	0	0	0.25	0.25	
장해질병	0.25	0	1	0	0	0.5	0.25
재물기타	0	0	0	1	0	0.5	0.25
해지	0	0.25	0	0	1	0.5	0.25
사업비	0.25	0.25	0.5	0.5	0.5	1	0.25
대재해	0.25	0	0.25	0.25	0.25	0.25	1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위험마진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3-3 의 위험마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되었는가?	적정	
위험마진 산정 시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eg: 99.5%, 85%), 대상위험(생명, 장기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위험액 제외)의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적정	
상관관계 반영 및 계약별 배분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가?	적정	

2. 보험계약대출 산출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4 조(보험계약대출)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나(1)(현금흐름산출단위), 동조 나(4)(현금흐름산출기간)
- 별표 22 제 5 장(보험부채할인율)

상기 기술된 내역과 중복되므로 본절에서 기술 생략

나. 검증목적

- (1) 보험계약대출 산출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 (1) 원칙

※ 요건 :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자산으로 기표하며, 시행세칙 [별표 22] 제5장(보험부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것인지 확인

☞ 해당없음(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자산 없음)

- (2) 현금흐름

※ 요건① : 관련 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분되어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 확인

-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 미포함)
- 미래신규대출
- 미래대출상환(단, 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기준으로 구성 가능)
- 대출이자
- 투자관리비용

※ 요건② : 투자관리비용 산출 시 다음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시행세칙 [별표22] 제3장제3-2조나(5)의②(사업비율)의 투자관리비용률 관련 내용
- 시행세칙 [별표22] 제3장제3-2조나(1)(현금흐름 산출단위)의 산출단위 관련 내용

※ 요건③ : 미래가산이자율

- 미래가산이자율은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는지 확인
- 미래가산이자율은 최근3년 상품별 월별 평균, 감독원장 제시 상품군별 가산이자율, 평가시점 현재 상품별 가산이자율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 요건④ : 산출단위

- 산출단위는 시행세칙 [별표22] 제3장제3-4조다의(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를 준용하였는지 확인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

생명보험	유배당 금리확정형 사망보험, 무배당 금리연동형 사망보험
	유배당 금리확정형 생사혼합, 유배당 금리연동형 생사혼합
	유배당 금리확정형 연금, 유배당 금리연동형 연금
	무배당 금리확정형 사망보험, 무배당 금리연동형 사망보험
	무배당 금리확정형 생사혼합, 무배당 금리연동형 생사혼합
	무배당 금리확정형 연금, 무배당 금리연동형 연금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손해보험	금리확정형 상해보험, 금리연동형 상해보험
	금리확정형 운전자보험, 금리연동형 운전자보험
	금리확정형 재물보험, 금리연동형 재물보험
	금리확정형 질병보험, 금리연동형 질병보험
	금리확정형 저축, 금리연동형 저축
	금리확정형 연금, 금리연동형 연금
	금리확정형 통합형 보험, 금리연동형 통합형 보험

※ 요건⑤ : 예외사항 고려

- 장래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개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가 문서화되었고 그 사유가 적정한지 확인

※ 요건⑥ : 문서화

-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였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 ☞ 해당없음(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자산 없음)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 의견	비고
1. 원칙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자산으로 기표하며, 이는 5 장 보험부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것인가?	적정	
2. 현금흐름		
관련 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분되어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 미포함) - 미래신규대출 - 미래대출상환 (단, 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기준으로 구성 가능) - 대출이자 - 투자관리비용	적정	
투자관리비용은 3-2 나 (5) ②의 규정을 따르며, 3-2 나 (1)의 단위별로, 3-2 나(4) 산출기간 적용을 준수하였는가?	적정	
투자관리비용율은 직전 3 년 보험계약대출 잔액대비 관련 투자관리비용의평균으로 산출되었는가?	적정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였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적정	
3. 예외사항 고려		
장래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 개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가 문서화되어있고 그 사유가 적정한가?	적정	
4. 산출단위		
산출단위는 표 2 의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를 준용하였는가?	적정	
5. 미래가산이자율		
미래가산이자율은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되는가? 미래가산이자율은 최근 3 년 상품별 월별 평균, 감독원장 제시 상품군별 가산이자율, 평가시점 현재 상품별 가산이자율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적용되었는가?	적정	
6. 공동재보험		
공동재보험 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평가가 출제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적정	

3.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3.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3장제3-1조의나(평가대상)
- 별표22 제3장제3-1조의다(분류기준)
- 별표22 제3장제3-2조의가(원칙)

나.(평가대상)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계약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나."에서 정한 보험계약은 「보험업감독규정」제 6-11조제3항에 따라 투자 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3-2. 현행추정부채

가.(원칙)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간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 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 (1) 현행추정부채는 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 ① 불확실성이라 함은 지급보험금의 발생시기/주기/심도, 사업비 발생규모, 계약자행동,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말한다.
- (2)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유입, 유출)을 반영해야 한다.
- (3) 현행추정부채는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 (4)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과 연관된 항목의 경우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한다.
- (5)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 및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6)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7) "가."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감독회계 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나. 검증목적

- (1) 검증 대상 범위 확인
- (2) 재보험자산 평가와 분류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검증 대상 범위

※ 요건 : 검증 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확인

- 원수보험계약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했는지 확인
- 출재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종료여부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경계 확인
-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 포함여부 확인

☞ 재보험은 원수보험과 별도로 권리/의무를 판단하여 보험계약 범위 판단함을 확인함

☞ 평가시점 보유하고 있는 수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재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음

☞ 수재 / 출재 중단가능 시점을 계약의 경계로 반영

수재계약(Treaty)별로 Recapture 조항에 따라 (출재/수재)보험회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 가능한 경우 계약의 경계를 단절함

(2) 재보험자산 평가와 분류의 적정성

※ 요건① : 재보험 자산의 평가 방법과 기준 확인

- 원수보험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는지 확인
-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신용평가기관의 K-ICS 신용등급 매핑표"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 이상) 1년 부도율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간편법을 이용하여 손실조정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 손실조정 간편법 적용시 유효만기는 적절히 산출되었는지 확인

※ 요건② : 재보험 자산 분류기준의 적정성 검증

-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였는지 확인
- 상품그룹별 재보험자산 현황 점검(업무보고서 AH708, AI708 대사 검증)

☞ 출재보험사에 대해 부도확률 및 손실조정 산출은 적절히 수행함

구분	신용등급(S&P)	K-ICS 신용등급	PD	비고
RGA barbados	AA-	2	0.03%	

☞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수재보험계약과 일관된 상품그룹을 적용하여 평가함을 확인함

(단위 : 천원)

상품그룹	재보험자산	
	출재보험료부채	출재준비금부채
생명보험 계	-342,706,409	31,045,254
손실조정	-473,161	-3,940
손실조정 반영 전	-342,233,248	31,049,194
01. 보장성	-342,233,248	31,049,194
장기손해보험 계	-59,203,592	16,045,278
손실조정	-52,536	-2,043
손실조정 반영 전	-59,151,056	16,047,321
01. 인보험	-59,151,056	16,047,321
생명장기손해보험 계	-401,910,001	47,090,532
일반손해보험 계	328,728	-31,043
손실조정	-525	-1
손실조정 반영 전	329,253	-31,042
국내/종합	336,901	-30,256
국내/상해	-7,648	-786
일반손해보험 계	328,728	-31,043

<손실조정 방법>

$$\text{손실조정} = \sum_i^n (PD_i \times \text{부도시손실액}_i)$$

- ▶ i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n=만기
- ▶ PD_i (부도확률) = $PD * (1-PD)^{i-1}$
- ▶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
- ▶ 부도시손실액 ($Co = \text{MAX}(\text{현금유입액}_i - \text{현금유출액}_i, 0)$)

<손실조정 간편법>

$$CE_{\text{조정후}} = CE_{\text{조정전}} - \text{MAX}(\text{손실조정률}(\%) \times CE_{\text{조정전}}, 0)$$

- ▶ $CE_{\text{조정전}}$: 손실조정 반영 전 재보험자산의 장래 현금흐름 현재가
- ▶ 손실조정률(%) : $0.5 \times \frac{PD}{1-PD} \times \text{유효만기}$
- ▶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
- ▶ 유효만기 : $(\sum_i i \times CF_i) / (\sum_i CF_i)$ (i = 평가시점으로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확률은 신용평가기관의 장기평균(10년이상) 1년 부도율 적용

<신용평가기관의 K-ICS 신용등급 매핑표>

K-ICS 신용등급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Fitch	AM Best
1	-	AAA	Aaa	AAA	-
2	AAA	AA/A-1	Aa/P-1	AA/F1	A+
3	AA/A!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 이하	CCC ↓	Caa ↓	CCC ↓	C ↓

3.2. 재보험자산 산출의 적정성 검증

3.2.1. 출재보험료부채

가. 관련규정

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5 조(재보험자산)

3-5. 재보험자산

가.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나.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다.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출재보험료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인
- (2) 출재보험료부채 손실 조정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 (1) 출재보험료부채 평가의 적정성

※ 요건① : 출재보험사별 현행 출재보험료부채 산출 대상금액 확인

※ 요건② : 출재보험료부채 산출 방법의 적정성 확인

- 출재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 평가시점 현재 미발생 보험사고 관련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금액에 대한 현금흐름 반영여부 확인
- 출재부채의 유입항목(Cash-in) 및 유출항목(Cash-out)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할인요소/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은 모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 출재보험료부채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출재보험사는 1개 회사만 존재(RGA barbados)
손실조정 산출시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음

[상품그룹별 출재보험료부채]

(단위 : 천원)

상품별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이익수수료	미수금	(손실조정반영전)
생명	2,813,872,149	2,185,502,398	286,136,503	-	-342,233,248
장기	483,706,310	395,164,696	29,390,558	-	-59,151,056
일반	1,122,023	1,451,276	-	-	329,253
계	3,298,700,482	2,582,118,370	315,527,061	-	-401,055,052

[출재사별 출재보험료부채]

(단위 : 천원)

출재사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이익수수료	미수금	(손실조정반영전)
RGA barbados - 생명·장기손해	3,297,578,460	2,580,667,094	315,527,061	-	-401,384,305
RGA barbados - 일반손해	1,122,023	1,451,276	-	-	329,253

[출재보험료부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시점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보험료	보험금	이익수수료	체결비	관리비	
1 차년	-242,864,831	-194,392,212	-25,780,964	-	-	22,691,656
2 차년	-235,059,794	-187,635,439	-25,586,231	-	-	21,838,123
3 차년	-225,525,821	-179,668,422	-24,805,009	-	-	21,052,389
4~5 차년	-423,721,810	-339,402,923	-45,068,752	-	-	39,250,136
6~10 차년	-918,284,145	-736,657,158	-95,566,777	-	-	86,060,209
11~30 차년	-2,672,425,323	-2,067,895,218	-239,461,374	-	-	365,068,732
31~50 차년	-1,111,891,030	-812,667,273	-64,740,406	-	-	234,483,351
51~100 차년	-201,608,075	-156,999,183	-12,658,507	-	-	31,950,385
단순합계	-6,031,380,829	-4,675,317,828	-533,668,020	-	-	822,394,981
현가합계	3,298,700,482	2,582,118,370	315,527,061	-	-	401,055,052
(평균현가율)	-54.7%	-55.2%	-59.1%			-48.8%
결산금액	3,298,700,482	2,582,118,370	315,527,061	-	-	401,055,052

☞ 업무보고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상세내역을 재산출하여 확인 결과 동일

(단위 :천원)

상품그룹	업무보고서 내역	산출내역 검증 결과				
	출재보험료 부채 (손실반영전)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이익수수료	미수금	출재보험료부채
생명	-342,244,175	2,814,055,363	2,185,665,451	286,145,737	0	-342,244,175
장기손해	-59,140,129	483,523,096	395,001,643	29,381,324	0	-59,140,129

(2) 출재보험료부채 손실조정 적정성

※ 요건① : 손실조정 간편법 적용여부 확인

※ 요건② : 손실조정 간편법 적용금액 확인

☞ 손실조정 산출시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음

3.2.2. 출재준비금 부채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5 조(재보험자산)

3-5. 재보험자산

가.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계약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나.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을 적용한다.

다.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출재준비금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인
- (2) 출재준비금부채 손실 조정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 (1) 출재준비금부채 평가의 적정성

※ 요건① : 출재보험사별 현행 출재준비금부채 산출 대상금액 확인

※ 요건② : 출재준비금부채 산출 방법의 적정성 평가

- 출재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금액에 대한 현금흐름 반영여부
- 출재부채의 유입항목(Cash-in) 및 유출항목(Cash-out)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할인요소/화폐의 시간가치 반영도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회사의 결산연도말 재출재보험사는 1개 회사임. (RGA barbados)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음.

[출재보험사별 출재준비금부채]

(단위 : 천원)

재보험사	OS	IBNR	미지급금	합계
RGA barbados - 생명·장기손해	5,308,744	51,168,081	-9,380,310	47,096,515
RGA barbados - 일반손해	728	7,018	-38,788	-31,042

[상품그룹별 출재준비금부채]

(단위 : 천원)

상품그룹	OS	IBNR	미지급금	합계
생명	3,571,379	34,174,418	-6,696,603	31,049,194
장기손해	1,737,365	16,993,663	-2,683,708	16,047,321
일반손해	728	7,018	-38,788	-31,042
계	5,309,472	51,175,099	-9,419,098	47,065,473

☞ 업무보고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상세내역을 재산출하여 확인한 결과 동일

(단위 : 천원)

상품그룹	업무보고서 내역	산출내역 검증 결과			
	출재준비금 부채 손실반영전	OS	IBNR	미지급금	합계
생명	31,049,194	3,571,379	34,174,418	-6,696,603	31,049,194
장기손해	16,047,321	1,737,365	16,993,663	-2,683,708	16,047,321

(2) 출재준비금부채 손실 조정의 적정성

※ 요건① : 손실조정 간편법 적용여부 확인

※ 요건② : 손실조정 간편법 적용금액 확인

☞ 손실조정 산출시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음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원칙		
재보험자사는 원수보험 현행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되, 원수보험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이 적용되었는가? 또한, 출재 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적정하게 평가되었는가?	적정	
2. 부도위험 반영		
출재 관련 현금흐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다음에 유의한다)	적정	
- 거래상대방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	적정	
- 손실조정은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회수 금액을 감안	적정	
- 회수율은 보험사의 합리적 가정을 사용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설정	적정	
- 화폐시간가치를 반영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 시 사용한 할인율 사용	적정	
- 구분기준별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간편법 적용의 타당성(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구분기준별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에 해당하는가? 간편법 재계산 결과가 회사의 계산 결과와 동일한가?)	적정	
재보험자사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에 대한 문서화가 적정한가?	적정	
3. 기타(계약의 경계)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가?	적정	

Part 1-2. [일반손해]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 자산의 적정성 검증

1.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적정성 검증

1.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제 4-1 조의(일반원칙)
- 별표 22 제 4 장 제 4-2 조의가(원칙)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평가

4-1. 일반원칙

가.(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일반손해보험 책임준비금과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일반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1호의 기준을 따른다.

나.(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다.(산출단위) 현금흐름 산출단위는 국내, 해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한다.

4-2. 현행추정부채

가. (원칙) 일반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는 "3-2.현행추정부채"에서 정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현행추정부채 평가기준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 현행추정부채는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직접·간접 계약유지비용 포함)을 확률론적 시나리오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부채의 특성상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다.

(2) 계리적 가정은 유사한 위험집단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4-1.다."의 산출단위 구분보다 세분화된 유사위험단위로 현행추정부채를 산출, 관리하는 것이 현행추정부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인다면, 세분화된 평가단위를 적용 할 수 있다.

나. 검증 목적

- (1) 평가대상 보험계약의 적정성 확인
- (2) 산출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 (3)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평가대상 보험계약 구분의 적정성 확인

☞ 국내/외, 그외 하위유형별로 구분함.

보험부채는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 재보험자산은 자산항목으로 계상함

현행추정부채는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로 구분함.

원수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의 연관된 항목을 적정하게 포함함.

(2) 현행추정부채 산출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 현행추정부채를 산출할 시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함.

전 보험기간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함.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유입, 유출)을 반영하였으며,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함.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II.1.2.13.6(할인율 가정)에서 정한 조정 무위험 금리 기간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함.

계리적 가정이 II.1.2.1.3(계리적 가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함.

(3) 보험부채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인

① 상품그룹별 현행추정부채 현황

☞ 현행추정부채를 보험료 부채와 준비금 부채로 구분하여 적립

(단위 : 천원)

상품그룹	전기말		당기말		증감
	보험료부채	준비금부채	보험료부채	준비금부채	
일반손해보험 계			629,262	623,626	5,636
종합/국내			642,575	638,293	4,282
상해/국내			-13,313	-14,667	1,354

(단위 : 천원)

상품그룹	업무보고서상 현행추정부채(A)	(B)		
		보험료 부채	준비금 부채	차이(A-B)
일반손해보험 계	629,262	623,626	5,636	-
종합/국내	642,575	638,293	4,282	-
상해/국내	-13,313	-14,667	1,354	-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평가대상 보험계약 구분의 적정성 검증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제 11 호의 기준에 따른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였는가?	적정	
보험회사가 판매한 모든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을 대상으로 하였는가?	적정	
현금흐름 산출단위를 국내, 해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하였는가?	적정	
보험부채가 현행추정부채, 위험마진으로 구분되었는가?	적정	
현행추정부채가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로 구분되었는가?	적정	
재보험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는가?	적정	
원수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의 연관된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적정	
(2) 보험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검증		
현행추정부채는 적절한 방식으로 산출되었는가? 전 보험기간동안 보험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는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하였는가? 원수보험(수재 포함)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는가?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조정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적절히 적용하여 산출하였는가?	적정	
현행추정부채에 보험계약의무 이행과 관련된 지급보험금의 발생 시기/주기/심도, 사업비 발생규모, 계약자행동, 금융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금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는가?	적정	
계리적 가정이 유사한 위험진단별로 산출되어 있는가?	적정	
계리적 가정 산출단위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제 4 장 4-1 다(산출단위)항의 구분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구분하였는가? 세분화하였다면 그 구분단위와 사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문서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적정	
(3) 보험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검증	적정	
일반손해보험 현행추정부채 산출을 보험료 부채와 준비금 부채로 구분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적정한가?	적정	

1.2. 보험료부채 산출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제 4-2 조의(보험료부채)의 (1)-(4)

나. 보험료부채

(1)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는 장래 지급보험금 및 손해조사비, 유지관리비용, 계약경계내의 장래 예상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2) 보험료부채 산출시에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유계약의 장래 예상보험료 및 계약자행동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3) 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세부기준은 "3-2.나.(3)"부터 "3-2.나.(5)"까지를 따른다.

(4) 보험료부채는 다음의 단일현가요소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보험료부채 = {(미경과보험료×(예상 손해율+예상 손해조사비율+예상 유지관리비율) + 장래 예상보험료×(예상 손해율+예상 손해조사비율+예상 유지관리비율)} × 장래 유출 현금흐름의 현가요소-장래 예상보험료 × 장래 유입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보험미수금+보험미지급금

① 미경과보험료는 보유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평가시점 현재 잔여 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분을 말한다.

② 장래 예상보험료는 평가시점 현재 보유계약의 잔여 보장기간동안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③ 예상 손해율, 예상 손해조사비율 및 예상 유지관리비율은 보유계약의 납입보험료 대비 장래 현금흐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지급보험금, 손해조사비 및 유지관리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④ 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을 말한다.

ㄱ. 회사는 보유계약의 유출 및 유입 금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ㄴ. 장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과 유입 금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를 산출한다.

ㄷ. "ㄴ."에도 불구하고 보유계약의 유출 금액의 현금흐름과 유입 금액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하나의 현가요소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a. 장래 유입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는 장래 유출 현금흐름의 현가요소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b. 보험계약 유출 요인에 대한 지급형태는 준비금부채의 보험금 지급형태와 일관된다고 가정한다.

⑤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은 보험료부채에 해당하는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말한다.

⑥ 보험회사는 "①"부터 "⑤"까지의 보험료부채 산출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검증 목적

- (1) 보험료부채 산출대상 및 구분의 적정성 확인
- (2) 보험료부채 산출원칙의 준수여부 확인
- (3) 보험료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보험료부채 산출대상 및 구분의 적정성 확인

- ① 평가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였는지 확인

☞ 사고발생일이 평가시점 이후인 보험사고 관련 현금흐름과 지급사유 해당일이 평가시점 이후인 비보험사고 관련 현금흐름만 반영하여 보험료부채를 산출함을 확인함

- ②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확인

☞ 평가시점 보유하고 있는 수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음

(2)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부채 산출원칙 준수여부 확인

- ① 현금흐름 산출단위

☞ 재보험계약의 경우, 원수와 달리 주계약 / 특약의 구분 구조가 없으며 수재 대상인 원수보험을 주계약 / 특약으로 구분하여 인수하지 않으므로 구분 산출 미적용

- ② 계약의 경계

☞ 수재/출재 중단가능 시점을 계약의 경계로 반영

수재계약(Treaty)별로 Recapture 조항에 따라 (출재/수재)보험회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 가능한 경우 계약의 경계를 단절함

③ 현금흐름 산출기간

- ☞ 수재/출재 중단가능 시점을 수재계약(Treaty) 조건에 따라 설정하여 해당시점까지 유입되는 원수(수재)보험의 현금흐름을 계약의 경계로 반영하여 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 추정

④ 계리적 가정

- ☞ 생명/장기손해보험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 및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관리위원회 / 문서화 등도 동일한 체계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⑤ 간편법을 적용하였는지, 적용하였다면 그 방법과 결과가 적정한지 확인

- ☞ 간편법 적용하지 않음

(3)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① 보험료부채 현황

- ☞ 보험료부채산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전기말					
	합계	기대미래 보험료	미래지급 보험금	손해조사비	유지관리비용	기타비용
일반손해보험 계						
종합/국내 상해/국내						
	당기말					
	합계	기대미래 보험료	미래지급 보험금	손해조사비	유지관리비용	기타비용
일반손해보험 계	623,626	2,630,998	2,902,551	-	352,073	-
종합/국내	638,293	2,459,184	2,750,329	-	347,148	-
상해/국내	-14,667	171,814	152,222	-	4,925	-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부채 산출대상 및 구분의 적정성 확인 평가시점 현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또는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만 현금흐름에 반영되었는가?	적정	
보험료부채의 구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적정	
(2)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부채 산출원칙의 준수여부 확인 현금흐름은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주계약을 기준으로 통합하였는가?	적정	
위험률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았는가?	적정	
재보험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였는가?	적정	
계약의 경계는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적정	
계약의 경계_장래에 신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적정	
계약의 경계_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유계약의 장래 현금흐름을 적절히 반영하여 산출하였는가?	적정	
계약의 경계_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였는가?	적정	
계약의 경계_공동재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출재계약과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인수재계약이 계약의 경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적정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면, 그 방법과 결과가 적정한가?	적정	
(3) 일반손해보험 보험료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회사가 보험료 부채와 관련하여 사용한 통계적 기법, 변경사항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적정	

1.3. 준비금부채 산출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제 4-2 조의다(준비금부채)
-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1>

다. 준비금부채

(1)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①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ㄱ. 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ㄴ.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 ㄷ. 보험사고를 조사·진행·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장래손해조사비
- ㄹ.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2) 준비금부채는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및 장래손해조사비의 합계액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준비금부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보험의 종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세분화된 분석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자 동차보험의 준비금 부채는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 보험)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개별추산액은 기보고 발생사고에 대한 보험사고별 추산보험금으로, 보험 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 등의 미정산금액을 고려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③미보고발생손해액은 회사의 사고년도별 접수 추이 또는 보험금 지급 추이 통계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원수(수재 포함)기준 금액으로 산출하며, 원수기준 금액에서 보유(또는 출재)기준 금액을 차감하여 출재 (또는 보유)기준 금액을 산출한다.

④개별추산액과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장래손해조사비 제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 이상의 사고발생연도 기준에 의한 통계적방법에 따라 산 출한 금액(이하 '총량추산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준비금부채로 추가 적립한다.

ㄱ. 총량추산액은 보험금 진전추이방식(CLM), 평균지급보험금 방식(APM), 분휴에터-퍼거슨 방식(BFM) 등 여러 가지 통계적 방법 중 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ㄴ. 보험회사는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분석(보증보험의 경우 단 일기법에 의한 분석 가능),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 한 추산과정 및 추산결과, 추산기준 변경 시 변경내역, 보정 시 보정내용, 경험통계 내역 및 사후검증결과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ㄷ.통계적 방법 적용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정보의 신뢰성과 양, 보험회사 및 일반보험업계의 과거 경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ㄹ. 총량추산액 산출을 위해 사용된 통계적 방법에 대해서는 보험종목별 지 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ㅁ.준비금부채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은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 용하며, 보험회사는 이에 관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만, 손 해진전계수 산출과 관련한 사항은 "3-2.나.(5)⑦"을 준용하되, 산출 집합 은 "4-2.다.(2)①"의 구분 단위를 준용한다.

⑤장래손해조사비는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

우 다음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준비금부채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검증목적

- (1)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구분의 적정성 확인
- (2)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원칙의 준수여부 확인
- (3)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대상 구분의 적정성 및 산출원칙의 준수여부 확인

① 상품그룹별 준비금 부채 현황

☞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장래손해조사비, 회수가능금액 등을 포함하여 준비금부채를 인식하고 적정하게 산출함.

보험의 종류는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구분함.

(단위 : 천원)

	전기말					
	합계	개별추산액	미보고 발생손해액	총량추산	장래손해조사 비	회수가능금액
일반손해보험 계						
종합/국내						
상해/국내						
	당기말					
	합계	개별추산액	미보고 발생손해액	총량추산	장래손해조사 비	회수가능금액
일반손해보험 계	5,636	-8,401	13,967	5,566	70	
종합/국내	4,282	-7,916	12,138	4,221	60	
상해/국내	1,354	-484	1,829	1,345	9	

(2)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① 일반손해보험 준비금 부채 산출 현황

☞ 준비금 부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전기말					
	합계	개별추산액	미보고 발생손해액	총량추산	장래손해조사비	회수가능금액
일반손해보험 계						
종합/국내						
상해/국내						
	당기말					
	합계	개별추산액	미보고 발생손해액	총량추산	장래손해조사비	회수가능금액
일반손해보험 계	15,493	1,456	13,967	15,423	70	-
종합/국내	13,464	1,266	12,138	13,404	60	-
상해/국내	2,029	190	1,829	2,020	9	-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구분의 적정성 확인		
평가시점 현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또는 지급사유 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만 현금흐름에 반영되었는가?	적정	
준비금부채 산출구분이 적정한가?	적정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 다음 항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산출되었는가? ① 개별추산액 ② 미보고발생손해액 ③ 장래손해조사비(직접산출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4-2.다.(2).⑤에서 정한 간편법 적용가능) ④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성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적정	
(2)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원칙의 준수여부 확인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및 장래손해조사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적정	
총량추산액의 산출 방법이 통계적으로 적정한가?	적정	
총량추산액 산출 간 지급보험금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정기법을 적용하였는가?	적정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준비금부채 측정 시 화폐의 시간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출하였는가?	적정	
(3) 일반손해보험 준비금부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회사가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기법 선택의 근거, 추산과정 결과 및 변경내역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적정	

1.4. 위험마진 산출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4장 제4-3조(위험마진)

4-3. 위험마진

가.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확률분포의 65 번째 백분위 수와 평균의 차이로 산출한다.

(1)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다음의 특성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① 보험계약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 ② "①"의 정규분포의 평균은 현행추정부채에서 재보험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 ③ "①"의 정규분포의 99.5 번째 백분위수와 평균의 차이는 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의 크기와 같다.
 - ㄱ. 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은 "IV.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으로 한다.

(2) 위험마진은 "(1)"의 확률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text{위험마진} = \text{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 \div Z_{99.5\%} \times Z_{65\%}$$

나. 검증목적

- (1) 위험마진 산출구분의 적정성 확인
- (2) 위험마진 산출원칙의 준수여부 확인
- (3) 위험마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 (1) 위험마진 산출구분의 적정성 및 산출원칙 준수여부 확인

☞ 위험마진 산출구분의 적정성

- ① 일반손해보험위험액(대재해위험액 제외)이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으로 정확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함.
- 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을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으로 산출되었음을 확인함.

☞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적용함.

위험마진 산정 시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을 정확히 반영함.

대상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중 대재해보험위험액 제외)의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함.

	보험위험액(대재해제외)	percentile	변환계수
일반손해보험	69,354	65%	0.15

일반손해보험 위험마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① 위험마진 현황 및 추이 확인

☞ 위험마진 산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

	전기말			당기말		
	위험액	위험마진	비율	위험액	위험마진	비율
일반손해보험 계				69,354	10,375	14.96%
대재해 이외				69,354	10,375	14.96%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일반손해보험 위험마진 산출구분의 적정성 확인		
위험마진은 시행세칙 [별표 22] 제 4 장 4-3 조(위험마진)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되었는가?	적정	
(2) 일반손해보험 위험마진 산출원칙의 준수여부 확인		
위험마진 산정시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가? (ex. 99.5%, 65%)	적정	
(3) 일반손해보험 위험마진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인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을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적정	

2.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2.1. 일반원칙 적용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제 4-1 조의 가(적용범위)
- 별표 22 제 4 장 제 4-1 조의 나(분류기준)
- 별표 22 제 4 장 제 4-1 조의 다(산출단위)
- 별표 22 제 4 장 제 4-4 조(재보험자산)

4-1. 일반원칙

가.(적용범위) 본 편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일반손해보험 책임준비금과 재보험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일반손해보험의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2 조제 11 호의 기준을 따른다.

나.(분류기준) 책임준비금은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하여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재보험자산은 현행추정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구분하여 자산항목으로 계상한다.

다.(산출단위) 현금흐름 산출단위는 국내, 해외로 구분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한다.

4-4. 재보험자산

가.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원수보험(수재 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 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나.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검증 대상 범위 확인
- (2) 재보험자산 평가와 분류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검증 대상 범위 확인

- ① 검증 대상 보험계약의 범위 확인, 수재보험계약과 별도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여 평가했는지 확인, 출재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종료여부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경계 확인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 포함여부 확인
 - ☞ 출재보험은 수재보험과 별도로 권리/의무를 판단하여 보험계약 범위 판단함을 확인함
 - ☞ 평가시점 보유하고 있는 수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재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음

☞ 수재 / 출재 중단가능 시점을 계약의 경계로 반영

수재계약(Treaty)별로 Recapture 조항에 따라 (출재/수재)보험회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 가능한 경우 계약의 경계를 단절함

(2) 검증 대상 평가 확인

① 재보험 자산의 평가 방법과 기준 확인

☞ 원수(수재)보험계약과 일관된 산출방법 및 측정방법을 적용함

출재보험 현금흐름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 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함.

간편법은 적용하지 않음.

<손실조정 방법>

$\text{손실조정} = \sum_i^n (PD_i \times \text{부도시손실액}_i)$
<p>▶ i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n=만기</p>
<p>▶ PD_i (부도확률) = $PD * (1-PD)^{i-1}$</p>
<p>▶ PD = 재보험 거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p>
<p>▶ 부도시손실액 ($Co = \text{MAX}(\text{현금유입액}_i - \text{현금유출액}_i, 0)$)</p>

② 재보험사별 부도확률(PD)적용 현황

<신용평가기관의 K-ICS 신용등급 매핑표>

K-ICS 신용등급	국내 신용평가기관	해외 신용평가기관			
		S&P	Moody's	Fitch	AM Best
1	-	AAA	Aaa	AAA	-
2	AAA	AA/A-1	Aa/P-1	AA/F1	A+
3	AA/A!	A/A-2	A/P-2	A/F2	A
4	A/A2	BBB/A-3	Baa/P-3	BBB/F3	B+
5	BBB/A3	BB	Ba	BB	B+
6	BB	B	B	B	C+
7	B 이하	CCC ↓	Caa ↓	CCC ↓	C ↓

☞ 출재보험사에 대해 부도확률 및 손실조정 산출은 적절히 수행함

구분	신용등급(S&P)	K-ICS 신용등급	PD	비고
RGA Barbados	AA-	2	0.03%	

③ 재보험사별 유효만기의 적용 현황

☞ 간편법 적용하지 않음.

④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에 대한 문서화 현황

☞ 손실조정 산출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의 손실조정측정방법 기대신용손실 모델을 적용하여 출재보험사별 PD(Probability of Default), LGD(Loss Given Default)를 산출하여 예상 현금흐름에 반영하며, K-ICS 운영기준 및 IFRS17 보험계약 계리 방법서 문서자료를 통해 문서화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2. 불이행위험 변동효과

(1) 개요

- 1) IFRS17 [문단 63]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2) 불이행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의 손실조정측정방법 기대신용손실 모델을 적용하여 출재보험사별 PD(Probability of Default), LGD(Loss Given Default)를 산출하여 예상 현금흐름에 반영하며, 매 결산 시 재무불이행위험의 변동을 당기 보험손익으로 인식한다.
- 3) 신용손실의 차이는 미래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신용손실의 모든 변동은 경제적 사건으로서 IASB는 발생시점에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문단 67, BC309참조]

[문단 63] (생략)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하여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한다.

[문단 67] 출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며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다.

(2) 재보험 PD 정보

	1	2	3	4	5	6	7	8	9	10
AA	.03	.08	.16	.29	.41	.55	.68	.79	.88	.9

[예시 S&P Cumulative Default Rate (US)]

* 마감시점 거래 상대방별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및 해당 PD(부도확률) 정보를 반영하여 불이행위험 변동효과를 산출한다.

* LGD(부도시 회수율)은 회사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적용한다.

RGA Subsidiary	S&P Global Ratings	A.M. Best Company	Moody's Investors Service
RGA Reinsurance Company	AA- (Very Strong)	A+ (Superior)	A1 (Good)
RGA Americas Reinsurance Company, Ltd.	AA- (Very Strong)	A+ (Superior)	
RGA Life Reinsurance Company of Canada	AA- (Very Strong)	A+ (Superior)	
RGA Reinsurance Company of Australia Limited	AA- (Very Strong)		
RGA International Reinsurance Company dac	AA- (Very Strong)		
RGA Global Reinsurance Company, Ltd.	AA- (Very Strong)		
RGA Reinsurance Company (Barbados) Ltd.	AA- (Very Strong)		

(3) 기대신용손실법 손실충당금

$$\text{손실충당금} = \sum_i^n (PD_i \times \text{부도시손실액}_i)$$

- i = 평가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각 시점
- n = 만기
- PD_i (부도확률) = $PD \times (1 - PD)^{i-1}$
- PD = 재보험거래상대방의 12개월 내 부도확률
- $\text{부도시손실액}_i = \sum_i^n C_i \times (1 - \text{회수율})$
- $C_i = \text{Max}(\text{현금유입액}_i + \text{현금유출액}_i, 0)$
- 화폐의시간가치를 반영하며, 할인율은 현행추정부채 평가 시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 불이행위험은 거래상대방 별로 출재잔여보장부채(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발생사고부채(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산출한다.

⑤ 재보험 자산 산출현황

☞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함.

업무보고서와 대사 검증 시 불일치 없음.

(단위 :천원)

업무보고서 내역						
상품그룹	출재보험료 부채	재보험자산 정보성계정		출재 준비금부채	재보험자산 정보성계정	
		재보험 미수금	재보험 미지급금		재보험 미수금	재보험 미지급금
일반손해보험계	328,728	-	-	-31,043	-	-

업무보고서 내역						
상품그룹	출재보험료 부채	재보험자산 정보성계정		출재 준비금부채	재보험자산 정보성계정	
		재보험 미수금	재보험 미지급금		재보험 미수금	재보험 미지급금
손실조정	-525	-	-	-1	-	-
손실조정 반영 전	329,253	-	-	-31,042	-67,445	28,657
종합/국내	336,901	-	-	-30,256	-64,921	27,933
상해/국내	-7,648	-	-	-786	-2,524	724

2.2. 재보험자산 산출의 적정성 검증

2.2.1. 출재보험료 부채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4장 제4-4조(적용범위)

4-4. 재보험자산

가.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원수보험(수재 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 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출재보험료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인
- (2) 출재보험료부채 손실 조정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 (1) 출재보험료부채 평가의 적정성

※ 요건① : 출재보험사별 현행 출재보험료부채 산출 대상금액 확인

※ 요건② : 출재보험료부채 산출 방법의 적정성 확인

- 출재보험료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 평가시점 현재 미발생 보험사고 관련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금액에 대한 현금흐름 반영여부 확인
- 출재부채의 유입항목(Cash-in) 및 유출항목(Cash-out)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할인요소/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은 모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출재보험료부채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출재보험사는 1개 회사만 존재(RGA barbados)
손실조정 산출시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음

[상품그룹별 출재보험료부채]

(단위 : 천원)

상품별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이익수수료	미수금	(출재보험료부채)
국내/종합	1,038,263	1,375,165	0	0	336,901
국내/상해	83,759	76,111	0	0	-7,648

[출재사별 출재보험료부채]

(단위 : 천원)

재보험사별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이익수수료	미수금	(출재보험료부채)
RGA barbados	1,122,023	1,451,276	-	-	329,253

[출재보험료부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시점	현금흐름 항목					순현금
	보험료	보험금	이익수수료	체결비	관리비	
1 차년	88,439	100,694	-	-	-	12,255
2 차년	88,157	100,489	-	-	-	12,332
3 차년	88,002	100,154	-	-	-	12,153
4~5 차년	175,014	197,968	-	-	-	22,954
6~10 차년	404,459	449,063	-	-	-	44,604
11~30 차년	1,101,354	1,201,331	-	-	-	99,977
31~50 차년	236,059	243,901	-	-	-	7,842
51~100 차년	26,195	28,127	-	-	-	1,932
단순합계	2,207,680	2,421,728	-	-	-	214,048
현가합계	1,122,023	1,451,276	-	-	-	329,253
(평균현가율)	50.8%	59.9%				
결산금액	1,122,023	1,451,276	-	-	-	329,253

☞ 업무보고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상세내역을 재산출하여 확인 결과 동일

(단위 : 천원)

상품그룹	업무보고서 내역	산출내역 검증 결과				
	출재보험료 부채 손실반영전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이익수수료	미수금	(출재보험료부채)
국내/종합	336,901	1,038,263	1,375,165	-	-	336,901
국내/상해	-7,648	83,759	76,111	-	-	-7,648
계	329,253	1,122,023	1,451,276	-	-	329,253

(2) 출재보험료부채 손실 조정의 적정성

① 손실조정 간편법 적용 대상

☞ 해당없음

② 재보험사별 출재보험료부채 손실조정 간편법 산출 현황

☞ 해당없음

2.2.2. 출재준비금부채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22 제4장 제4-4조(적용범위)

4-4. 재보험자산

가. 재보험자산은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원수보험(수재 보험 포함)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며, 원수보험(수재보험 포함) 현행 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나. 재보험 출재 관련 현금흐름은 재보험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1) 손실조정은 재보험 거래상대방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출재준비금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인
- (2) 출재준비금부채 손실 조정의 적정성 확인

다. 검증항목

- (1) 출재준비금부채 평가의 적정성

※ 요건① : 출재보험사별 현행 출재준비금부채 산출 대상금액 확인

※ 요건② : 출재준비금부채 산출 방법의 적정성 평가

- 출재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 평가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 관련 금액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금액에 대한 현금흐름 반영여부
- 출재부채의 유입항목(Cash-in) 및 유출항목(Cash-out)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행추정부채 평가와 일관된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할인요소/화폐의 시간가치 반영도 적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회사의 결산연도말 재출재보험사는 1개 회사임. (RGA barbados)

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음.

[출재보험사별 출재준비금부채]

(단위 : 천원)

재보험사	OS	IBNR	미수·미지급금	합계
RGA barbados	728	7,018	-38,788	-31,042

[상품그룹별 출재준비금부채]

(단위 : 천원)

상품그룹	OS	IBNR	미수·미지급금	합계
국내/종합	633	6,099	-36,988	-30,256
국내/상해	95	919	-1,800	-786
계	728	7,018	-38,788	-31,042

☞ 업무보고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상세내역을 재산출하여 확인 결과 동일

(단위 : 천원)

상품그룹	업무보고서 내역	산출내역 검증 결과			
	출재준비금부채 손실반영전	OS	IBNR	미지급금	합계
국내/종합	-30,256	633	6,099	-36,988	-30,256
국내/상해	-786	95.196121	919.1146967	-1,800	-786

(2) 출재준비금부채 손실 조정의 적정성

① 손실 조정 간편법 적용 여부 확인

☞ 해당없음

② 재보험사별 출재준비금부채 손실조정 간편법 금액 확인(AI710)

☞ 해당없음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원칙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로 구분하며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되 원수보험의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였는가?	적정	
2. 부도위험 반영		
<p>출재 관련 현금흐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다음을 유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별로 출재보험료부채와 출재준비금부채를 구분 - 손실조정은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회수금액을 감안 - 회수율은 보험사의 합리적 가정을 사용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설정 - 화폐시간가치를 반영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 시 사용한 할인율 사용 <p>구분기준별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인 경우 간편법 적용의 타당성</p>	적정	
3. 기타(계약의 경계)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가?	적정	

Part 2-1. [생명장기손해] 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1. 업무보고서 적정성 검증

1.1. 계리현금흐름모델 생성 현금흐름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대사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2 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제2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2-1. 일반원칙

가.(측정대상)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 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1) 자산의 경우 계리적가정 변동 시 장래현금흐름 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예시 :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에만 해당된다.

① 재보험자산의 경우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부채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측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산출방법)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사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 망위험액'), 장수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수위험액'), 장애·질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애·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표6>에 따라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다.(측정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애·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① 장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원수·수재·출재보험료, 재보험수수료 등 포함)을 반영하여 측정하고,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충격 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료 조정률 한도, 최종 목표손해율 등 회사가 설정한 정책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동일 하게 적용하여 일관되게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1) 보고서 원천정보와 업무보고서 간의 정보 무결성 확인

다. 검증목적

(1) 보험료부채([AH724]보고서 기준 : 측정대상부채) 금액 확인

①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충격전)

☞ 현금흐름과 업무보고서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보장성)	이익	-683,796,060	-	-351,978,089	-683,796,060	-	-351,978,089
	손실	20,791,630	-	9,744,841	20,791,630	-	9,744,841
장기 (인보험)	이익	-124,340,051	-	-63,701,205	-124,340,051	-	-63,701,205
	손실	9,867,371	-	4,550,148	9,867,371	-	4,550,148

②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사망위험 충격후)

☞ 현금흐름과 업무보고서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보장성)	이익	-624,822,382	-	-322,218,914	-624,822,382	-	-322,218,914
	손실	22,634,239	-	10,681,454	22,634,239	-	10,681,454
장기 (인보험)	이익	-119,433,990	-	-61,236,935	-119,433,990	-	-61,236,935
	손실	10,156,031	-	4,699,988	10,156,031	-	4,699,988

③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장수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772,926,338	-	-396,954,681	-772,926,338	-	-396,954,681
(보장성) 손실	18,754,574	-	8,703,229	18,754,574	-	8,703,229
장기 이익	-131,457,594	-	-67,276,899	-131,457,594	-	-67,276,899
(인보험) 손실	9,247,924	-	4,239,311	9,247,924	-	4,239,311

④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정액보상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455,947,981	-	-237,823,519	-455,947,981	-	-237,823,519
(보장성) 손실	63,576,499	-	31,148,989	63,576,499	-	31,148,989
장기 이익	-93,523,814	-	-48,282,017	-93,523,814	-	-48,282,017
(인보험) 손실	34,285,808	-	16,765,411	34,285,808	-	16,765,411

⑤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실손보상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682,447,704	-	-351,303,901	-682,447,704	-	-351,303,901
(보장성) 손실	27,208,270	-	12,953,162	27,208,270	-	12,953,162
장기 이익	-122,436,888	-	-62,749,591	-122,436,888	-	-62,749,591
(인보험) 손실	10,085,584	-	4,662,114	10,085,584	-	4,662,114

⑥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장기재물 기타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683,796,060	-	-351,978,089	-683,796,060	-	-351,978,089
(보장성) 손실	20,791,630	-	9,744,841	20,791,630	-	9,744,841
장기 이익	-124,340,051	-	-63,701,205	-124,340,051	-	-63,701,205
(인보험) 손실	9,867,371	-	4,550,148	9,867,371	-	4,550,148

⑦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옵선행사울상승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533,827,231	-	-275,230,785	-533,827,231	-	-275,230,785
(보장성) 손실	25,198,472	-	15,748,641	25,198,472	-	15,748,641
장기 이익	-99,167,484	-	-50,827,985	-99,167,484	-	-50,827,985
(인보험) 손실	7,587,477	-	3,488,980	7,587,477	-	3,488,980

⑧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옵선행사울하락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895,353,105	-	-460,297,098	-895,353,105	-	-460,297,098
(보장성) 손실	24,046,854	-	10,673,850	24,046,854	-	10,673,850
장기 이익	-162,365,704	-	-83,151,750	-162,365,704	-	-83,151,750
(인보험) 손실	12,959,413	-	5,978,514	12,959,413	-	5,978,514

⑨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교 (대량해지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510,636,760	-	-262,884,800	-510,636,760	-	-262,884,800
(보장성) 손실	52,948,003	-	44,693,282	52,948,003	-	44,693,282
장기 이익	-93,039,345	-	-47,666,569	-93,039,345	-	-47,666,569
(인보험) 손실	7,247,777	-	3,339,075	7,247,777	-	3,339,075

⑩ 상품그룹별 보험부채 비료(사업비위험 충격후)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 AI724)			현금흐름 시스템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669,005,700	-	-351,978,089	-669,005,700	-	-351,978,089
(보장성) 손실	22,107,937	-	9,744,841	22,107,937	-	9,744,841
장기 이익	-122,108,567	-	-63,701,205	-122,108,567	-	-63,701,205
(인보험) 손실	10,406,336	-	4,550,148	10,406,336	-	4,550,148

(2) 대재해위험 관련금액 확인

① 대재해 위험관련 금액

☞ 상품그룹별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대재해위험 / AI725)		원천금액	
	보험담보금액	직전 1 년보험금	보험담보금액	직전 1 년보험금
생명 전염병	21,183,293,318	-	21,183,293,318	-
대형사고/사망	20,962,504,533	8,639,855	20,962,504,533	8,639,855
대형사고/장해	9,625,782,862	885,719	9,625,782,862	885,719
장기 전염병	588,860,614	-	588,860,614	-
대형사고/사망	3,664,351,774	558,259	3,664,351,774	558,259
대형사고/장해	2,683,906,838	411,702	2,683,906,838	411,702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모델 현금흐름 중 보험료부채 시가와 업무보고서 상, 시가 금액은 충격 시나리오 별로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모델 현금흐름 중 보험계약대출 시가와 업무보고서 상, 시가 금액은 충격 시나리오 별로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모델 현금흐름 중 재보험자산 시가와 업무보고서 상, 시가 금액은 충격 시나리오 별로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원천 시스템 정보 중 대재해위험 산출과 관련된 보험 담보금액과 업무 보고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원천 시스템 정보 중 대재해위험 산출과 관련된 직전 1년 보험금과 업무 보고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1.2. 금융감독원 제출 업무보고서 간의 비교 대사

1.2.1.주요사항

- 보험료부채 시가금액 상호대사 : [AI724] 대 [AI704]
- 보험계약대출 시가금액 상호대사 : [AI724] 대 [AI706]
- 재보험자산 시가금액 상호대사 : [AI724] 대 [AI708]
-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상관계수 적용치 산출치 확인 : [AI720]

1.2.2.대상작업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2 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제2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2-1. 일반원칙

가.(측정대상)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가정 변동 시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한다.

(1) 자산의 경우 계리적가정 변동 시 장래현금흐름 변동으로 인해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예시 :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에만 해당된다.

① 재보험자산의 경우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부채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은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측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산출방법)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사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수위험액'), 장애·질병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애·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재해위험액')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에 따라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한다.

다.(측정방식)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또는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1)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애·질병위험액, 장기재물·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은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한다.

① 장래현금흐름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원수·수재·출재보험료, 재보험수수료 등 포함)을 반영하여 측정하고, 현금흐름 산출기간은 충격 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료 조정률 한도, 최종 목표손해율 등 회사가 설정한 정책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현금흐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되게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간의 정보 무결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보험료부채/보험계약대출/재보험자산 금액 확인

① 상품그룹별 보험위험 총격전 금액 비교

☞ 상품그룹별 보험위험의 총격전 금액은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인식함.

업무보고서 간의 금액차이는 없음 (무결성 확보)

(단위 : 천원)

	대재해 외 - 보험위험액 (AI724)			보험료부채/보험계약대출/재보험자산 (AI704 / AI706 / AI708)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보험부채	보험계약대출 자산	재보험자산
생명 이익	-683,796,060	-	-351,978,089	-683,796,060	-	-351,978,089
(보장성) 손실	20,791,630	-	9,744,841	20,791,630	-	9,744,841
장기 이익	-124,340,051	-	-63,701,205	-124,340,051	-	-63,701,205
(인보험) 손실	9,867,371	-	4,550,148	9,867,371	-	4,550,148

(2)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상관계수 적용 산출결과 확인

① 보험위험내 분산효과 반영금액 비교

☞ 보험그룹위험 내 업무보고서와 재산출 내역간의 비교 검증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하위위험요인	업무보고서 위험액	위험액 재산출	비고
사망	32,701,111	32,701,111	동일
장수	-	-	상동
장해질병	167,614,739	167,614,739	상동
장기재물기타	-	-	상동
해지	95,131,493	95,131,493	상동
사업비	18,877,116	18,877,116	상동
대재해	21,796,525	21,796,525	상동
보험위험계 (분산효과반영전)	336,120,985	336,120,985	상동
보험위험계 (분산효과반영후)	224,678,049	224,678,049	상동
분산효과비율 (반영후/반영전)	66.8%	66.8%	상동

□ 관련규정 상세정보

- 제 2 장 / 2-1. / 나.(산출방법): 하위위험

사망/장수/장해질병/장기재물기타/해지/사업비/대재해 하위위험 구분 측정 후 하위 위험간 상관계수를 반영하여 합산

- 제 2 장 / 2-1. / 나. / <표 6>

(단위 : 천원)

구분	사망	장수	장해질병	장기재물 기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사망	1						
장수	-0.25	1					
장해질병	0.25	0	1				
장기재물 기타	0	0	0	1			
해지	0	0.25	0	0	1		
사업비	0.25	0.25	0.5	0.5	0.5	1	
대재해	0.25	0	0.25	0.25	0.25	0.25	1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업무보고서 [AI724]의 충격 전 측정대상부채 금액과 업무보고서 [AI704]의 보험료부채 금액 합계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업무보고서 [AI724]의 충격 전 보험계약대출 금액과 업무보고서 [AI706]의 보험계약대출 시가금액 합계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업무보고서 [AI724]의 충격 전 재보험자산 금액과 업무보고서 [AI704]의 재보험자산 금액 합계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1.3. 분석적 검토

1.3.1. 최선추정기준 보험부채시가(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와 충격시나리오도 기준 보험부채시가(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비교 분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2 장 2-2. 사망위험액 : 전보험기간에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가정 적용
순보험부채시가 산출
- 별표 22 제 2 장 2-3. 장수위험액 : 전보험기간에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가정 적용
순보험부채시가 산출
- 별표 22 제 2 장 2-4. 장애질병위험액 : 장애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 가정 적용시
순보험부채시가 변화액 산출, 정액보상 충격적용 변화액과 실손보장 충격적용 변화액 별도
산출후 단순합산
- 별표 22 제 2 장 2-5. 장기재물기타위험액 : 재물, 비용, 배상,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 가정 적용
순보험부채시가 산출
- 별표 22 제 2 장 2-6. 해지위험액 :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비율상승/비율하락/ 및 보험계약
대량 해지시 순보험부채시가 변경액을 각각 산출 후 가장 큰 금액으로 위험액 결정
- 별표 22 제 2 장 2-8. 대재해위험액 : 극단적, 예외적(전염병/대형사고 등)에 대한 위험액으로
담보가입금액 및 직전 1 년간 지급보험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식으로 산출함

2-2. 사망위험액

가.(측정대상) 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사망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망률이 12.5% 증가한다는 가정(현행추정사망률×1.125)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사망위험액 = $\max(\Delta \text{순자산가치} | \text{전 보험기간 사망률 } 12.5\% \text{ 증가}, 0)$

다.(위험마진) 사망위험액 산출시 위험마진은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에 변경하지 않는다.(이하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모든 하위위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2-3. 장수위험액

가.(측정대상) 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나.(충격수준) 장수위험액은 전 보험기간에 사망률이 17.5% 감소한다는 가정(현행추정사망률×0.825)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한다.

장수위험액 = $\max(\Delta \text{순자산가치} | \text{전 보험기간 사망률 } 17.5\% \text{ 감소}, 0)$

2-4. 장애·질병위험액

가.(측정대상) 장애·질병위험액은 장애·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충격적용 시 시가변화액(=충격후 순보험부채시가¹ - 충격전 순보험부채시가)의 방향성 확인 및 산출치 이상여부 확인

다. 검증항목

- (1) 사망위험 및 장수위험 분석

① 보험위험내 사망위험/장수위험 분석

☞ 충격량에 따라 위험의 방향은 적정하게 변동함(사망/장수간 위험방향 교차)

- 분석방향 : 회사 전체 및 상품그룹별 위험액 분석
- 관련 감독기준
- 제 2 장 2-2 사망위험액(사망률 증가)
- 제 2 장 2-3 장수위험액(사망률 감소)

(단위 : 천원)

		순부채			충격량		위험방향	
		충격전	사망	장수	사망	장수	사망	장수
생명 (보장성)	이익	-331,817,970	-302,603,468	-375,971,657	29,214,502	-44,153,687	(+)	(-)
	손실	11,046,788	11,952,785	10,051,345	905,997	-995,443	(+)	(-)
장기 (인보험)	이익	-60,638,846	-58,197,055	-64,180,695	2,441,791	-3,541,849	(+)	(-)
	손실	5,317,222	5,456,043	5,008,613	138,821	-308,609	(+)	(-)

¹ 순보험부채시가=측정대상보험료부채시가-보험계약대출시가-재보험자산시가-그외자산시가

(2) 장해질병위험 및 장기재물기타위험 분석

① 보험위험내 장해질병/장기재물/사업비위험 분석

☞ 총격량에 따라 위험의 방향은 적정하게 변동함(위험방향이 모두 증가로 나타남)

- 분석방향 : 회사 전체 및 상품그룹별 위험액 분석

- 관련 감독기준

제 2 장 2-4.장해질병위험액(위험률 증가)

제 2 장 2-5.장기재물기타위험액(위험률 감소)

제 2 장 2-7.사업비위험액(사업비율 증가 및 인플레이션 증가 동시 적용)

(단위 : 천원)

		총격전	총격량			위험방향		
		순부채	정액	실손	사업비	정액	실손	사업비
생명 (보장성)	이익	-331,817,970	113,693,508	674,167	14,790,359	(+)	(+)	(+)
	손실	11,046,788	21,380,722	3,208,320	1,316,307	(+)	(+)	(+)
장기 (인보험)	이익	-60,638,846	15,397,049	951,550	2,231,484	(+)	(+)	(+)
	손실	5,317,222	12,203,175	106,248	538,965	(+)	(+)	(+)

(3) 해지위험 분석

① 보험위험내 해지위험 분석

☞ 총격량에 따라 위험의 방향은 적정하게 변동함(이익그룹과 손실그룹의 위험방향 교차)

- 분석방향 : 회사 전체 및 상품그룹별 위험액 분석

- 관련 감독기준

제 2 장 2-6.해지위험액(해지관련율 증가/감소 및 대량해지)

(단위 : 천원)

		총격전	총격량			위험방향		
		순부채	옵션증가	옵션감소	대량해지	옵션증가	옵션감소	대량해지
생명 (보장성)	이익	-331,817,970	73,221,525	-103,238,036	84,066,011	(+)	(-)	(+)
	손실	11,046,788	-1,596,957	2,326,216	-2,792,068	(-)	(+)	(-)
장기 (인보험)	이익	-60,638,846	12,299,347	-18,575,108	15,266,071	(+)	(-)	(+)
	손실	5,317,222	-1,218,726	1,663,676	-1,408,521	(-)	(+)	(-)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총격별 금액의 순보험부채 시가 증가 및 감소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대량해지 총격금액의 경우 상품그룹별 금액 단순합계와 총 대량해지위험금액이 일치하는가?	적정	

1.3.2.업무보고서 시계열 분석

가. 분석방향

연간 생명장기손해 보험위험의 각 하위위험별 변화액 및 전체위험액의 변화액들을 시계열 기준으로 확인하고 주요 변화요인들을 확인하여 분석결과 작성

나. 검증목적

(1)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추세와 변화요인들을 확인하여 이상변화 등에 대한 확인검증

다. 검증항목

(1) 보험위험내 세부요인별 시계열 분석

① 보험위험내 세부요인별 시계열 분석

☞ 세부요인별 위험량 및 분산효과 추세가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 천원)

하위위험 요인	직전년말 (‘22.12)	당년 1 분기 (‘23. 3)	당년 2 분기 (‘23. 6)	당년 3 분기 (‘23. 9)	당년말 (‘23.12)	전년비%
사망		12,102,025	24,756,337	22,909,253	32,701,111	
장수		-	-	-	-	
장해질병		127,316,594	154,254,376	128,419,575	167,614,739	
-정액보상		127,316,594	151,715,454	126,160,710	162,674,454	
-실손보상		-	2,538,922	2,258,866	4,940,286	
장기재물		-	-	-	-	
해지		76,257,753	101,603,832	106,475,019	95,131,493	
-옵션상승		52,900,286	77,547,673	76,243,657	85,520,872	
-옵션하락		5,899,296	5,342,224	2,839,095	3,989,892	
-대량해지		76,257,753	101,603,832	106,475,019	95,131,493	
사업비		17,184,864	19,674,275	18,943,159	18,877,116	
대재해		18,983,243	31,075,319	34,250,629	21,796,525	
보험위험계 (분산효과전)		251,844,479	331,364,138	310,997,635	336,120,985	
보험위험계 (분산효과후)		171,493,179	218,942,705	201,896,781	224,678,049	
분산효과%		68.09%	66.07%	64.92%	66.84%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생명장기손해보험 하위위험종류별 위험액의 추이를 확인하고 변화요인을 확인 및 분석하여 이상변화 사항 확인하였는가? 이상 변화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상관계수 적용 후의 총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의 추이를 확인하고 주 요 변화요인이 되는 하위위험 종류의 금액을 확인 및 분석하여 이상 변 화사항을 확인하였는가? 이상 변화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1.3.3. 타감독기준 금액과의 일관성 확인

가. 분석방향

감독회계 위험조정금액과 K-ICS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금액의 상호 비교

나. 검증목적

(1) 감독기준간(K-ICS vs. IFRS17 감독회계)의 상호비교를 통한 산출 수치정보의 합성 확인

다. 검증항목

□ 검증방식

- 신뢰수준 변화 후 비교(K-ICS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99.5% vs. 감독회계 위험조정액 75%)
- 하위위험별 K-ICS 기준 충격액(=충격시나리오 시가-충격전시나리오 시가 기초정보(신뢰수준 99.5% 기준)을 감독회계기준 신뢰수준 충격액(신뢰수준 75%)로 변화 후 하위위험별 금액 비교: 적용산식

□ 비교 시 주의사항

- 1 - 기본금액 자체가 할인율 차이(변동성조정 기준 할인율 vs. 유동성프리미엄 기준 할인율) 및 이행현금흐름 차이(간접비 포함여부)에 따라 최선추정 시가 금액 차이 존재
- 2 - 사업비 충격액의 경우 이행현금흐름 포함범위 외에도 인플레이션 충격의 차이에 따른 복리효과 비선형성으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하위위험 충격액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

(1) 감독회계 위험조정과의 비교

☞ K-ICS 보험위험액과 감독회계 위험조정과 신뢰수준을 일치시켜 상호 비교한 결과 서로 유사 수준으로 나타남(K-ICS의 신뢰수준 조정 위험액이 소폭 큼)

(단위 : 천원)

하위위험요인	K-ICS(보험위험)		감독회계	비율 (SAP/K-ICS)
	위험액 (99.5%)	신뢰수준조정 (75%)	위험조정 (75%)	
사망	32,701,111	8,562,898	8,409,110	98%
장수	-	-	-	-
장애질병	167,614,739	43,890,495	39,912,529	91%
-정액보상	162,674,454	42,596,864	38,654,439	91%
-실손보상	4,940,286	1,293,631	1,258,089	97%
장기재물기타	-	-	-	-
해지	95,131,493	24,910,508	23,802,599	96%
-옵션상승	85,520,872	22,393,934	23,802,599	106%
-옵션하락	3,989,892	1,044,767	49,529	5%
-대량해지	95,131,493	24,910,508	-	-
사업비	18,877,116	4,943,038	4,810,358	97%
대재해	21,796,525	5,707,495	-	-
보험위험계 (분산효과반영전)	336,120,985	88,014,434	76,934,596	87%
보험위험계 (분산효과반영후)	224,678,049	58,832,719	52,420,977	89%
분산효과비율 (반영후/반영전)	66.84%	66.84%	68.14%	-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K-ICS 생명장기손해보험 하위위험별 총격액을 신뢰수준 감안 변형한 금액과 감독회계 하위위험별 총격액을 비교 시 보이는 차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라면 사유는?	적정	

2. 업무 적정성 검증

2.1. 기본 확인 사항 점검

가.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측정대상 확인-계리적 가정 변동 시 회사 영향 자산(보험계약대출, 재보험 자산)만 포함 여부 확인하였는가?	적정	
재보험자산 손실조정 전 금액 대상 여부 확인하였는가?	적정	
퇴직보험/연금 제외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적정	
측정방식확인-시나리오방식(대재해외) 및 계수방식(대재해) 정상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적정	
상품그룹 기준 정의 및 변경 등 사항 문서화 포함 프로세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적정	
계리적 위험 충격 정상적용 여부 및 모델 적용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적정	
계약자옵선 가정 포함사항 정상여부를 확인하였는가?(생명보험-해약률/연금일시금전환율/중도인출을 포함여부, 손해보험-해약률/중도인출을 포함여부)	적정	

2.2. 운영사항 점검

가.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계리현금흐름 모델에서 보험충격의 입력/관리 및 현금흐름 로직 적용방법은? - 충격별 계리적 가정 Set 전체 입력 및 작업 결과 산출 - 별도의 충격계수용 모델링 변수 관리 및 입력 후 적용 - 기타 방식	적정	
시나리오별 적용 금액 기준 및 데이터를 확인하였는가? - 기본방식: 보험충격별 결정론적 금액과 충격 전 TVOG 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시가금액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적정	

Part 2-2. [일반손해] 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1.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적정성 검증

1.1. 계리현금흐름모델 생성 현금흐름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대사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1 조의 가(일반원칙)
- 별표 22 제 3 장제 3-1 조의 나(산출방법)
- 별표 22 제 3 장제 3-1 조의 다(측정방식)

제 3 장 일반손해보험위험액

3-1. 일반원칙

가.(측정대상)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 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 한다.

(1) 해외의 경우 국내 보장단위 분류기준 및 보장단위별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을 산출한다.

나.(산출방법)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 및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과 대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 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 0.25 를 적용하여 합산한다.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 \sqrt{\text{보험가격} \cdot \text{준비금위험액}^2 + \text{대재해위험액}^2 + 2 \times 0.25 \times \text{보험가격} \cdot \text{준비금위험액} \times \text{대재해위험액}}$$

다.(측정방식)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나. 검증목적 및 항목

(1) 평가대상 일반손해보험계약의 적정성 확인

☞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구분함.

일반손해보험 계약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와 해외로 구분

국내 구분단위를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

해외의 경우 국내 보장단위 분류기준 및 보장단위별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일반손해보험 위험액을 산출함.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산출방법 및 측정방식의 적정성 확인

① 상품그룹별 보험위험 산출 현황

☞ 보험그룹별 보험위험 산출을 적정하며,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대재해 위험액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분산효과비율
	보험가격	준비금	합계	대형사고		
일반손해보험 계	68,610	2,735	69,354	158	69,394	99.8%
종합/국내	68,249	2,612	68,948	-		
상해/국내	716	231	806	158		

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하위위험별로 위험계수방식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하위 위험별로 위험계수 방식을 적용하여 검증한 결과 일치함.

(단위 : 천원)

구분	업무보고서(AI720) (A)	검증결과 (B)	차이 (A-B)
II. 일반손해보험위험액	69,394	69,394	-
- 분산효과	118	118	-
1.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69,354	69,354	-
① (국내) 재물 그룹	68,948	68,948	-
② (국내) 책임 그룹	0	0	-
③ (국내) 일반기타 그룹	806	806	-
④ (국내) 자동차 그룹	0	0	-
⑤ (국내) 보증 그룹	0	0	-
⑥ (해외)	0	0	-
2. 대재해위험액	158	158	-
① 자연재해위험액	0	0	-
② 대형사고위험액	158	158	-
③ 대형보증위험액	0	0	-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측정대상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산출을 위해 해외를 포함한 계약전체 내역이 측정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적정	
2. 산출방법		
상관계수를 고려한 위험별 합계액이 일반손해보험위험액으로 산출되었는가?	적정	
3. 측정방식		
하위위험별 위험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여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을 측정하였는가?	적정	

1.2. 보험가격 및 준비금 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 가(산출방법)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 나(하위위험)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 다(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 라(지역)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 마(보험가격위험액)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 바(준비금위험액)
- 별표 22 제 3 장제 3-2 조의 사(보유리스크율산출방법)

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가.(산출방법)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단위별 상관계수는 <표 8>과 같다.

<표 8>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계수 (생략)

나.(하위위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보장단위별로 측정한다.

다.(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은 <표 9>와 같다.

<표 9>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의 구분기준 (생략)

라.(지역) 각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은 <표 10>과 같다

<표 10>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 (생략)

(1) 국가 분류기준은 보험목적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여러 국가에 걸친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한다. 다만, 정보부족으로 가입금액이 가장 큰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증권상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 ② 공동재보험 지분참여 등으로 보험대상 물건의 국가정보가 없는 경우 주관 재보험사(leading reinsurer)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해당 국가로 분류하되, 정보입수가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국가로 처리한다.
- ③ 보험목적물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대상 물건 소유자 국적에 따라 분류한다.
- ④ 국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해외 기타'로 분류한다.

마.보험가격위험액

(1) 일반손해보험(보증보험 이외) ①보험가격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및 항목

(1) 산출구분 및 산출단위별 상관계수의 적정성 확인

① 상품그룹별 보험가격/준비금위험 산출 현황

☞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보험가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보험가격위험액')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준비금위험액')으로 구분하여 보장단위별로 측정함.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은 감독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함.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은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며, 각 단위별 상관계수를 적용함.

(단위 : 천원)

	보험가격위험액			준비금위험액			보험가격/ 준비금위 험액	분산효과 비율
	익스포저	위험액	비율	익스포저	위험액	비율		
일반손해보험	102,228	68,610	67.11%	7,746	2,735	35.31%	69,354	97.21%
국내/종합	98,768	68,249	69.10%	6,732	2,612	38.80%		
국내/상해	3,460	716	20.70%	1,014	231	22.80%		

(단위 : 천원)

구분	업무보고서(A1726) (A)	검증결과 (B)	차이 (A-B)
I. 국내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69,354	69,354	-
1. 재물 그룹	68,948	68,948	-
③ 종합	68,948	68,948	-
3. 일반기타 그룹	806	806	-
① 상해	806	806	-

(2)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확인

① 상품그룹별 보험가격위험(보증보험외) 산출 현황

- 보험가격위험액은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에 조정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는지 확인

$$\text{보험가격위험액}_{\text{일반손해보험(보험증권 이외)}} = \text{보유보험료} \times \text{조정위험계수}$$

- 보유보험료는 각 지역 및 보장단위 별로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지 확인.

다만, 지역 및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가 음수일 경우 '0'으로 하였는지 확인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_(비례-연동) + 비례수재보험료_(연동)) × 보유리스크율_(비례-연동)
 + 원수보험료_(비례-연동외) + 비례수재보험료_(비연동) - 비례출재보험료_(비연동)
 + 1.5 × (비비례수재보험료 - 비비례출재보험료)

- 보장단위별 조정위험계수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 및 기준 합산비율과 보험회사별 합산비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였는지 확인

- 다만, 재보험전업사는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를 조정위험계수로 사용한다.

조정위험계수
 = MAX[보험 기본위험계수 + (회사합산비율-기준합산비율) × 50%, 보험가격 기본위험계수 × 70%]
 ▶ 보험회사별 합산비율 산출기준월을 포함한 최근 3년 연간 합산비율의 산출평균
 ▶ 합산비율 = (발생손해액 + 순사업비) / (원수경과보험료 + 수재경과보험료 - 출재경과보험료)

☞ 보험가격 위험액 산출 시 감독규정을 준수하여 산출하였음.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익스포저(경과보험료)				위험액	비율
	손해율연동 비례재보험	손해율비연동 비례지 보험	비비례재보험	보유계		
일반손해보험	-	102,228	-	102,228	68,610	67.1%
국내/종합	-	98,768	-	98,768	68,249	
국내/상해	-	3,460	-	3,460	716	

(3) 준비금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① 상품그룹별 준비금위험 산출 현황

$$\text{준비금위험액} = \text{보유지급준비금} \times \text{준비금위험계수}$$

$$\begin{aligned} &\text{보유지급준비금} \\ &= (\text{원수지급준비금}_{\text{(비례-연동)}} + \text{비례수재지급준비금}_{\text{(연동)}}) \times \text{보유리스크율}_{\text{(비례-연동)}} \\ &+ \text{원수지급준비금}_{\text{(비례-연동외)}} + \text{비례수재지급준비금}_{\text{(비연동)}} - \text{비례출재지급준비금}_{\text{(비연동)}} + 1.5 \times (\text{비비례수재지급준비금} - \\ &\text{비비례출재지급준비금}) \end{aligned}$$

☞ 준비금 위험액은 보장단위별로 감독규정내역을 준수하여 산출함.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반보험위험액 검증 결과 업무보고서와의 차이 없음.

(단위 : 천원)

	익스포져(지급준비금)				위험액	비율
	손해율연동 비례재보험	손해율비연동 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	보유계		
일반손해보험	-	7,746	-	7,746	2,735	35.31%
국내/종합	-	6,732	-	6,732	2,612	
국내/상해	-	1,014	-	1,014	231	

(4) 보유리스크 산출의 적정성 확인

① 보유리스크율 확인

☞ 해당없음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sum_i \text{예상손실액}_{\text{출재후}} - \sum_i \text{예상손실액}_{\text{출재전}}$$

▶ i는 보장단위별 재보험수수료가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계약

② 손해율분포법의 적용

☞ 해당없음

[손해율분포법]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frac{E[\text{Max}\{(\text{보유손실액}_i - \text{출재수수료 등}_i), 0\}] - E(\text{보유손실액}_i - \text{출재수수료 등}_i)}{[\text{Max}\{(\text{원수}^\circ \text{수재손실액 등}_i) - E(\text{원수}^\circ \text{수재손실액}_i), 0\}]}$$

i는 손해를 확률분포 하에 산출한 i 번째 손해율 시나리오

③ 위험계수적용법 적용

☞ 해당없음

[위험계수적용법]의 보유리스크율(비례-연동)

$$= \frac{\text{보유손실증감액} |_{99.5\% \text{ 신뢰수준의 손해율}} - \text{출재수수료 등 증감액} |_{99.5\% \text{ 신뢰수준의 손해율}}}{\text{원수수재손실 증감액} |_{99.5\% \text{ 신뢰수준의 손해율}}}$$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산출방법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산출 시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 계수를 적용하고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는가?	적정	
2. 하위위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을 보험가격에 대한 요구자본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적정	
3.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구분기준에 따라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이 구분되었는가?	적정	
4. 지역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에 따라 지역이 구분되었는가?	적정	
5. 보험가격위험액(보증보험 제외)		
보증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을 위해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가 정확히 계산되고, 합산비율을 고려한 조정위험계 수가 보유보험료에 적용되었는가?	적정	
6. 보험가격위험액(보증보험)		
보증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을 위해 보유위험보험료와 보험가입금 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보증보험의 보장단위별 위험보험료위험계수와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가 각각의 보유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적정	
7. 준비금위험액		
보유지급준비금은 각 지역 단위 및 보장단위별로 산출되고 이에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준비금위험액을 산출하였는가?	적정	
8. 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을 보유리스크율 산출대상으로 정의하였는가?	적정	
9. 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		
손해율분포법에 따른 보유리스크율과 위험계수적용법에 따른 보유리스크율이 정확히 산출되고, 둘 중 더 큰 값이 보유리스크율로 정의되었는가?	적정	

1.3. 대재해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검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3 장제 3-3 조의 가(측정방법)
- 별표 22 제 3 장제 3-3 조의 나(산출대상)
- 별표 22 제 3 장제 3-3 조의 다(자연재해위험액)
- 별표 22 제 3 장제 3-3 조의 라(대형사고위험액)
- 별표 22 제 3 장제 3-3 조의 마(대형보증위험액)
- 별표 22 제 3 장제 3-3 조의 바(보유리스크를 대재해 산출방법)

3-3. 대재해위험액

가. (산출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연재해위험액'),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보증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상관계수 0 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text{대재해위험액} = \sqrt{\text{자연재해위험액}^2 + \text{대형사고위험액}^2 + \text{대형보증위험액}^2}$$

나. (산출대상) 대재해위험액의 산출대상 보장단위는 <표 15>와 같다. 다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과 계약상 면책조항이 있을 경우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표 15> 대재해위험액 산출대상 (생략)

다. 자연재해위험액

(1) 자연재해위험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 ① "3-2.라."의 지역구분에 따라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을 산출하고 상관계수 0 을 적용하여 지역별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 ② 지역 간 자연재해위험액에 대해 상관계수 0 을 적용하여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2)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지진위험액 및 풍수해위험액의 보유보험가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ㄱ. 보유리스크율(지진) 및 보유리스크율(풍수해)은 "바.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보유리스크율(대재해)을 <표 15>의 지진 및 풍수해 관련 보장단위의 원수가입금액 및 수재가 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② 회수가능재보험금 등은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비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 받는 금액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복원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자연재해 손실액은 보유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

③ 위험계수는 <표 16>과 같다. 다만, 해상에 속한 보험계약 중 지역구분이 어려운 보험계약은 해외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표 16> 자연재해위험액의 위험계수 (생략)

④ 다만, 자연재해 손실액 발생시 재보험사로부터 비비례재보험, 비례재보험 순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ㄱ. 원수가입금액과 수재가입금액 합계액에 위험계수를 곱하고 비비례재보험 및 비례재보험을 통해 재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

라. 대형사고위험액

(1) 대형사고위험액은 담보 밀집지역에서 대형사고 시나리오 적용시 발생하는 재물 및 상해로 인한 손실을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 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및 항목

(1) 측정대상 및 산출대상의 적정성 확인

① 일반손해보험 대재해위험액 산출 현황

$$\text{대재해위험액} = \sqrt{\text{자연재해위험액}^2 + \text{대형사고위험액}^2 + \text{대형보증위험액}^2}$$

☞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자연재해위험액'),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사고위험액')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대형보증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상관계수 0 을 적용하여 합산함.

(자연재해 및 대형보증위험액은 익스포저가 없어 "0", 대형사고위험액만 존재)

(단위 : 천원)

	대형사고위험			대재해 위험액	분산효과 비율
	익스포저	위험액	비율		
일반손해보험 계	6,125,000	158	0.0026%	158	100%
국내/상해	6,125,000	158	0.0026%	158	100%

(2) 자연재해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확인

① 일반손해보험 자연재해위험액 산출현황

☞ 자연재해위험액 산출 대상 없음.

자연재해위험액

$$= \sqrt{\sum_{\text{지역}i} \sum_{\text{지역}j} (\text{자연재해위험액}_{\text{지역}i} \times \text{자연재해위험액}_{\text{지역}j} \times \text{상관계수}_{\text{지역}i, \text{지역}j})}$$

▶ 자연재해위험액지역 i = $\sqrt{(\text{지진위험액}_{\text{지역}i}^2 + \text{풍수해위험액}_{\text{지역}i}^2)}$

▶ 지역 i, 지역 j=한국, 유럽,미국·캐나다, 중국, 일본, 기타선진국, 신흥국, 해외기타

(3) 대형사고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확인

① 일반손해보험 대형사고위험액 산출 현황

$$\text{대형사고위험액} = \text{대형사고재물위험액} + \text{대형사고상해위험액}$$

대형사고재물위험액
 $= \text{Max}[\text{위험계수}_{\text{재물}} \times \text{보유보험가입금액}_{\text{재물}} - \text{회수가능 재보험금 등}_{\text{재물}}, 0]$

대형사고상해위험액
 $= \text{Max}[\text{위험계수}_{\text{상해}} \times \text{보유보험가입금액}_{\text{상해}} - \text{회수가능 재보험금 등}_{\text{상해}}, 0]$

☞ 노출되어 있는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함.
 대형사고재물위험액은 대상 없음

(단위 : 천원)

	대형사고재물			대형사고상해			대형사고위험액	분산효과비율
	익스포저	위험액	비율	익스포저	위험액	비율		
일반손해보험 계	-	-	-	6,125,000	158	0.0026%	158	100%
국내/상해	-	-	-	6,125,000	158	0.0026%	158	100%

(4) 대형사고위험액 산출의 적정성 확인

① 일반손해보험 대형보증위험액 산출 현황

$$\text{대형보증위험액} = \text{Max}[\text{위험계수}_{\text{보증}} \times \text{보유보험가입금액}_{\text{보증}} - \text{회수가능재보험금 등}_{\text{보증}}, 0]$$

☞ 대형보증보험위험액 산출 대상 없음.

(5) 보유리스크율_대재해 산출의 적정성 확인

① 대재해 위험 보유리스크율(대재해) 산출 현황

☞ 보유리스크율(대재해) 검증 결과와 업무보고서 비교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익스포저(경과보험)			보유리스크율	비고
	수재	출재	비율		
국내/종합	197,538	98,770	50.00%	50.00%	일치
국내/상해	6,922	3,462	49.99%	49.99%	일치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1.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으로 구분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가?	적정	
2. 산출대상		
자연재해, 대형사고 및 대형보증에 대한 위험액을 산출대상 보장단위 에 따라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계약상 면책조 항 등을 고려하였는가?	적정	
3. 자연재해위험액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위험액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한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해위험액의 합산액을 자연재해 위험액으로 산출하였는가?	적정	
4. 자연재해위험액		
해상에 속한 보험계약 중 지역구분이 어려운 보험계약은 지진 및 풍수 해 위험 각각에 대해 해외 위험계수를 적용하였는가?	적정	
5. 대형사고위험액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각각 구분되고 이를 합산하여(상관계수를 1 로 적용) 산출되었는가?	적정	
6. 대형사고위험액		
보유보험가입금액 산출 시 정해진 재물 및 상해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 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보장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였는가?	적정	
7. 대형보증위험액		
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유보험가입금액에 대형보증위험액의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반영되었는가?	적정	
8. 보유리스크율 산출방법		
보유리스크율을 보증보험과 그 외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산출하 고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고려된 보유 리스크의 비율에 따라 보장단위별로 산출하였는가?	적정	

Part 3. 금리위험액 산출 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의 적정성 검증

1. 업무보고서 적정성 검증

1.1. 기본사항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시장위험액 제 4-2 조 금리위험액

<p>제 4 장 시장위험액</p> <p>4-2. 금리위험액</p> <p>가.(측정대상) 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p> <p>(1)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파생상품, 비운용자산 등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 Ⅱ.2-3.가.(2)"에 따른 평가금액이 원가금액인 자산에 대해서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p>(2)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부채는 보험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p> <p>(3)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p> <p>(4)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Ⅲ.1.다.(1)"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채항목은 금리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p> <p>① "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금리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p> <p>나.(측정방법) 금리위험액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측정하여 산출한다.</p> <p>- 이하 생략 -</p>

나. 검토범위

[AH732] (K-ICS 시장위험액-금리위험) 업무보고서 중 아래의 항목들만이 계리법인 준비금 검증 대상임

- 보험계약대출 : [AI732] > I.자산총계 > 1.직접보유 > 라.대출채권 > (1)보험계약대출
- 재보험자산 : [AI732] > I.자산총계 > 1.직접보유 > 바.비운용자산 > (1)재보험자산
- 현행추정부채 : [AI732] > II.부채총계 > 1.직접보유 > 가.현행추정부채

1.2. 계리현금흐름모델 생성 현금흐름과 금융감독원 업무 보고서 대사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4-2. 금리위험액 가(→ 금리위험액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 모두 측정 대상)
- 별표 22 제 4 장 4-2. 금리위험액 나.(1) (→ 적용 금리충격시나리오 목록(충격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함. 무이표채 수익률(Zro-Coupon Yield, Spot Rate)에 적용함))
- 별표 22 제 4 장 4-2. 금리위험액 나.(2) (→ 퇴직보험/연금 상품 산출방법(적립금 금액에 듀레이션 번으로 산출된 충격금액 적용한 결과값 산출))

제 4 장 시장위험액

4-2. 금리위험액

가.(측정대상) 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파생상품, 비운용자산 등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 Ⅱ.2-3.가.(2)"에 따른 평가금액이 원가금액인 자산에 대해서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부채는 보험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3)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Ⅲ.1.다.(1)"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채항목은 금리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금리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측정방법) 금리위험액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보고서 원천정보와 업무보고서 간의 정보 무결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보험계약 산출금액 확인

① 금리시나리오별 산출금액 비교

☞ 금리시나리오별 산출금액은 업무보고서와 현금흐름과 비교 시 동일함.

(단위 : 천원)

	업무보고서 (금리위험액 / AI732)		현금흐름 시스템			비고
	현행추정부채	재보험자산	보험료부채	준비금부채	재보험자산	
충격전	- 659,965,306	- 354,521,784	- 776,853,484	116,888,178	- 354,521,784	동일
평균회귀	- 663,700,799	- 356,454,882	- 780,810,863	117,110,064	- 356,454,882	동일
금리상승	- 577,018,332	- 311,963,457	- 693,370,954	116,352,622	- 311,963,457	동일
금리하락	- 758,138,526	- 404,868,020	- 875,573,189	117,434,664	- 404,868,020	동일
금리평탄	- 685,217,419	- 367,392,720	- 801,867,427	116,650,008	- 367,392,720	동일
금리경사	- 636,205,941	- 342,413,032	- 753,334,389	117,128,448	- 342,413,032	동일

(2) 퇴직연금/연금상품 산출정보 및 결과 확인

☞ 해당 상품 보유분 없음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원천현금흐름 결과 중 현행추정부채 (=보험료부채+준비금부채+실적배당형 상품제외 퇴직보험/연금준비금) 시가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 시가금액이 금리충격 시나리오 별로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원천현금흐름 결과 중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시가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 시가금액이 금리 충격시나리오별로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원천현금흐름 중 재보험자산 시가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 시가금액 이 금리충격시나리오별로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퇴직보험/연금 상품의 적립금 금액 및 금리충격별 충격액은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는가?	적정	

1.3. 금융감독원 제출 업무보고서 간의 비교 대사

1.3.1.주요사항

- 현행추정부채 시가금액 상호대사: [AI732] 대 [AI701]/[AI702]
-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시가금액 상호대사: [AI732] 대 [AI701]/[AI706]
- 재보험자산 시가금액 상호대사: [AI732] 대 [AI701]/[AI708]

1.3.2.대상작업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시장위험액 제 4-2 조 금리위험액

제 4 장 시장위험액

4-2. 금리위험액

가.(측정대상) 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파생상품, 비운용자산 등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 Ⅱ.2-3.가.(2)"에 따른 평가금액이 원가금액인 자산에 대해서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부채는 보험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3)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Ⅲ.1.다.(1)"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채항목은 금리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금리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측정방법) 금리위험액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간의 정보 무결성 확인

다. 검증항목

(1) 금리위험 충격전 금액 확인

① 금리위험 충격전 대상금액 비교

☞ 보고서 내 재무상태표의 내역이 각 유형별 현행추정부채,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금리위험액 산출 충격전 금액과 모두 동일하게 반영되어 산출됨.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AI701)	현행추정부채 (AI702-703)	재보험자산 (AI708-709)	금리위험액 (AI732)	비고
보험료부채	-776,853,484				
준비금부채	116,888,178				
변액적립액	-				
퇴직적립액	-				
실적배당 (퇴직)	-				
금리위험대상	-659,965,306	-659,965,306		-659,965,306	동일
실적배당 (퇴직이외)	-				
현행추정부채 계	-659,965,306				
보험계약대출	-			-	
재보험자산 계	- 354,521,784		- 354,521,784	- 354,521,784	동일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AH732]보고서의 총격전 현행추정부채금액과 [AH701] 및 [AH702] 보고서의 현행추정부채금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AH732]보고서의 총격전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금액과 [AH701] 및 [AH706] 보고서의 보험계약대출 시가금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AH732]보고서의 총격전 재보험자산금액과 [AH701] 및 [AH708] 보고서의 재보험자산 시가금액이 일치하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는?	적정	

1.4. 분석적 검토

1.4.1. 최선 추정 기준 보험부채시가(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와 충격 시나리오 기준 보험부채 시가(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비교분석

가. 관련규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별표 22 제 4 장 4-2. 금리위험액 가(→ 금리위험액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 모두 측정 대상)
- 별표 22 제 4 장 4-2. 금리위험액 나.(1) (→ 적용 금리충격시나리오 목록(충격스프레드는 감독원장이 제시함. 무이표채 수익률(Zro-Coupon Yield, Spot Rate)에 적용함))
 - ① 충격전 : 금리충격 미적용 기본 시나리오
 - ① 금리상승시나리오 : 금리기간구조 전반적 상승 위험
 - ② 금리하락시나리오 : 금리기간구조 전반적 하락 위험
 - ③ 금리평탄시나리오 : 단기금리 상승 및 장기금리 하락 위험
 - ④ 금리경사시나리오 : 단기금리 하락 및 장기금리 상승 위험
 - ⑤ 평균회귀시나리오 : 평균적인 금리수준 회귀 금리변동의 특성 반영
- 별표 22 제 4 장 4-2. 금리위험액 나.(2) (→ 퇴직보험/연금 상품 산출방법(적립금 금액에 듀레이션법으로 산출된 충격금액 적용한 결과값 산출))

제 4 장 시장위험액

4-2. 금리위험액

가.(측정대상) 금리위험액은 금리위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1)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자산은 일반적인 채권뿐만 아니라 대출, 파생상품, 비운용자산 등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 Ⅱ.2-3.가.(2)"에 따른 평가금액이 원가금액인 자산에 대해서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금리위험액 측정대상 부채는 보험부채 뿐만 아니라 금리 평가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포함한다.

(3) 최저보증 등 보험부채에 대한 옵션보장 없이 보험부채가 보험자산 실적에 100% 연동되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등은 보험회사가 금리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 자산 및 부채는 금리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당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Ⅲ.1.다.(1)"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채항목은 금리위험액을 측정하지 않는다.

①"Ⅲ.1.다.(1)②"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금리위험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측정방법) 금리위험액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한 후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 이하 생략 -

나. 검증목적

- (1) 충격변화액의 방향성 확인 및 산출치 이상여부 확인

다. 검증항목

(1) 분석사항

① 금리시나리오별 충격금액 확인

☞ 금리상승시 자산/부채 시가금액 증가, 하락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보험의 특성 및 음(-)의 자산/부채 시가로 산출되고 있어

일반적인 원수보험(양의 부채)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남

(단위 : 천원)

검토항목	충격전금액	충격금액(충격후 - 충격전)				
		평균회귀	금리상승	금리하락	금리평탄	금리경사
현행추정부채	-659,965,306	-3,735,492	82,946,975	-98,173,219	-25,252,113	23,759,365
재보험자산	-354,521,784	-1,933,098	42,558,327	-50,346,236	-12,870,937	12,108,751
보험순부채	-305,443,523	-1,802,394	40,388,648	-47,826,983	-12,381,176	11,650,614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금리상승 시나리오에서 금액항목(현행추정부채, 보험약관대출, 재보험자산)의 시가금액이 충격전보다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아닐 경우 사유는?	적정	
금리하락 시나리오에서 금액항목(현행추정부채, 보험약관대출, 재보험자산)의 시가금액이 충격전보다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아닐 경우 사유는?	적정	
금리경사 시나리오와 금리평탄 시나리오의 금액항목들의 시가변화액의 부호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는가? 아닐 경우 사유는?	적정	

1.4.2.업무보고서 시계열 분석

가. 분석방향

금액항목별/금리충격 시나리오별 시가금액 및 시가변화금액(율) 추이를 확인하고 주요 변화 요인들을 확인하여 분석 결과 작성

나. 검증목적

(1) 금리리스크 평가를 위한 금액항목들의 시계열별 변화액(율)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상사항을 확인하기 위함

다. 검증항목

(1) 금리시나리오별 충격 추이 확인

☞ 금리시나리오별 충격량의 추이가 일관되게 나타남

(단위 : 천원)

	직전년말 (‘22.12)	당년1분기 (‘23.03)	당년2분기 (‘23.06)	당년3분기 (‘23.09)	당년말 (‘23.12)
현행추정부채		-362,575,845	-591,405,657	-590,585,247	-659,965,306
- 회귀충격		-2,196,726	-3,305,348	-3,450,201	-3,735,492
- 상승충격		39,243,160	80,551,135	80,052,443	82,946,975
- 하락충격		-44,894,712	-94,414,367	-93,895,883	-98,173,219
- 평탄충격		-9,258,108	-25,808,992	-24,867,838	-25,252,113
- 경사충격		9,032,613	25,693,694	24,440,179	23,759,365
재보험자산		-200,086,132	-317,775,029	-316,974,712	-354,521,784
- 회귀충격		-1,194,766	-1,761,024	-1,832,243	-1,933,098
- 상승충격		21,034,723	42,045,071	41,725,624	42,558,327
- 하락충격		-24,052,987	-49,244,881	-48,904,816	-50,346,236
- 평탄충격		-4,892,773	-13,303,225	-12,801,884	-12,870,937
- 경사충격		4,770,902	13,236,813	12,576,707	12,108,751
보험순부채		-162,489,712	-273,630,628	-273,610,535	-305,443,523
- 회귀충격		-1,001,960	-1,544,323	-1,617,958	-1,802,394
- 상승충격		18,208,437	38,506,064	38,326,819	40,388,648
- 하락충격		-20,841,726	-45,169,486	-44,991,067	-47,826,983
- 평탄충격		-4,365,335	-12,505,767	-12,065,954	-12,381,176
- 경사충격		4,261,711	12,456,881	11,863,472	11,650,614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금액항목들(현행추정부채, 보험약관대출, 재보험자산)의 금리위험 충격시나리오별 시가 및 시가충격액(율)의 추이를 확인하고 변화요인들을 확인함	적정	
순보험부채시가(=현행추정부채-보험약관대출-재보험자산)의 금리위험 충격시나리오별 시가 및 시가충격액(율)의 추이를 확인하고 주요 변화요인을 확인함	적정	

2. 업무 적정성 검증

2.1. 기본 확인 사항 점검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금리충격 시나리오 산출이 정상적인가?- 결정론적 시나리오 기준 금리 충격시나리오별로 '현물이자율+변동성조정+기간별금리충격률'으로 산출된 시나리오 기반으로 보간/보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할인율 시나리오 여부 확인	적정	

2.2. 운영사항 점검

[Check List]

검증항목	검증의견	비고
경제적 가정 시나리오의 계리현금흐름 모델 적용시 금리충격별 확률론적 할인율이 정상적으로 계리현금흐름 모델 입력이 되는가?	적정	
공시이율 가정의 계리현금흐름 모델 적용방법 확인하였는가?- 산식적용-별도의 공시이율 시나리오 생성 후 적용	적정	
변액보험 상품의 수익률 가정의 계리현금흐름 모델 적용방법 확인하였는가?	적정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20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9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5
포괄손익계산서 -----	7
자본변동표 -----	8
현금흐름표 -----	9
주석 -----	10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지점장 귀하

감사의견

우리는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당 지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및 2022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당 지점의 재무제표는 당 지점의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및 2022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당 지점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재작성되었으며, 따라서 2023년 3월 30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당 지점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당 지점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당 지점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 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 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당 지점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안 진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洪 鐘 聲** 

2024년 3월 29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4년 03월 2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당 지점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제 20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19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지점이 작성한 것입니다."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대표이사 신성욱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전 화) 02-6730-1350

재 무 상 태 표

제 20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9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9 (전)기초 2022년 1월 1일 현재

알지에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20 (당)기말	제 19 (전)기말	제 19 (전)기초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31	57,273,572,171	47,959,230,573	53,234,952,001
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	203,777,019,550	-	-
III. 매도가능금융자산	4	-	185,031,535,528	159,147,807,282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	4,157,086,816	-	-
V. 기타수취채권	5	-	5,421,188,926	4,512,924,170
VI. 보험계약자산	10,12	8,224,234,806	52,822,029,483	126,612,989,094
VII. 유형자산	6	616,119,096	892,181,144	892,698,116
VIII. 무형자산	7	695,301,550	695,301,550	695,301,550
IX. 사용권자산	8	552,557,019	1,255,004,914	1,854,224,343
X. 기타자산		38,399,999	111,359,074	86,400,000
1. 선급비용		38,399,999	34,184,889	86,400,000
2. 선급금		-	77,174,185	-
자 산 총 계		275,334,291,007	294,187,831,192	347,037,296,556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10,12	17,226,118,856	15,897,166,664	6,252,443,285
II. 재보험계약부채	11,13	21,240,359,572	46,276,446,902	86,069,275,266
III.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9	4,073,637,497	4,152,201,114	3,098,582,091
IV. 이연법인세부채	27	13,806,645,500	15,504,517,840	26,921,574,733
V. 리스부채	9,15	586,605,972	1,304,599,182	1,984,255,676
VI. 기타부채		5,480,675,863	7,937,572,528	3,085,602,981
1. 비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미지급비용		1,366,734,224	1,056,039,281	813,623,185
2. 예수금		350,324,273	276,051,980	237,925,530
3. 당기법인세부채		910,114,670	3,969,657,250	1,644,092,140
4. 미지급부가세		-	19,200,000	27,272,728
5. 복구충당부채	16	384,117,492	373,249,704	362,689,398
부 채 총 계		59,944,658,056	88,829,129,917	127,411,734,032
자 본				
I. 영입기금	17	52,000,000,000	52,000,000,000	52,000,000,000
I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당기말: 12,398,054원 전기말: 53,562,036원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당기말: 1,389,904원 전기말: (41,163,982원))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당기말: 25,318,461,126원 전기말: 25,318,461,126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당기말: -원 전기말: -원)	18	209,490,329,911	193,997,715,916	170,069,415,684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19	(46,100,696,960)	(40,639,014,641)	(2,443,853,160)

과 목	주식	제 20 (당)기말	제 19 (전)기말	제 19 (전)기초
자 본 총 계		215,389,632,951	205,358,701,275	219,625,562,5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75,334,291,007	294,187,831,192	347,037,296,556

주석 참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0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9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20 (당)기		제 19 (전)기	
I. 보험손익			11,355,666,005		23,073,463,256
1. 보험영업수익			232,723,779,068		161,898,627,603
1) 보험수익	10,12,20	163,946,684,915		126,326,801,550	
2) 재보험수익	11,13,21	68,777,094,153		35,571,826,053	
2. 보험영업비용			221,368,113,063		138,825,164,347
1) 보험서비스비용	10,12,20	147,530,948,201		82,662,490,685	
2) 재보험서비스비용	11,13,21	72,839,129,228		55,591,839,046	
3) 기타사업비용		998,035,634		570,834,616	
II. 투자손익			7,258,416,503		6,542,063,036
1. 투자영업수익			31,613,085,187		20,940,351,426
1) 보험금융수익	24	19,669,481,889		14,034,587,073	
2) 재보험금융수익	24	6,743,467,523		3,103,268,989	
3) 이자수익	22	5,200,135,775		3,802,495,364	
2. 투자영업비용			24,354,668,684		14,398,288,390
1) 보험금융비용	24	14,299,487,005		7,343,593,656	
2) 재보험금융비용	24	9,868,178,901		6,868,742,031	
3) 이자비용		28,237,422		48,249,263	
4) 재산관리비		158,765,356		137,703,440	
III. 영업이익			18,614,082,508		29,615,526,292
IV. 영업외수익	26		819,392,729		291,020,030
V. 영업외비용	26		35,186,876		167,102,633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398,288,361		29,739,443,689
VII. 법인세비용	27		3,905,674,366		5,811,143,456
VIII. 당기순이익			15,492,613,995		23,928,300,233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기: 13,402,182,266원, 전기: 12,232,484,293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기: 13,413,772,512원, 전기: 12,178,857,707원)					
IX. 기타포괄손익			(5,461,682,319)		(38,195,161,48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461,682,319)		(38,195,161,4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5,733,273,345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8,334,313,204)	
보험계약 순금융손익	24	(20,343,076,733)		(59,071,263,744)	
재보험계약 순금융손익	24	9,148,121,069		29,210,415,467	
X. 당기총포괄이익			10,030,931,676		(14,266,861,248)

주석 참조

자 본 변 동 표

제 20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9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단위: 원)

과 목	영업기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2022.01.01(전기초 수정전)	52,000,000,000	90,663,176,712	(2,443,853,160)	140,219,323,552
회계정책 변경효과	-	79,406,238,973	-	79,406,238,972
2022.01.01(전기초 수정후)	52,000,000,000	170,069,415,685	(2,443,853,160)	219,625,562,524
총포괄이익	-	23,928,300,233	(38,195,161,481)	(14,266,861,248)
당기순이익	-	23,928,300,233	-	23,654,503,89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8,334,313,204)	(8,334,313,204)
보험계약 손금용손익	-	-	(59,071,263,744)	(59,071,263,744)
재보험계약 손금용손익	-	-	29,210,415,467	29,210,415,467
2022.12.31	52,000,000,000	193,997,715,918	(40,639,014,641)	205,358,701,275
2023.01.01	52,000,000,000	193,997,715,918	(40,639,014,641)	205,358,701,275
총포괄이익	-	15,492,613,995	(5,461,682,319)	4,651,630,585
당기순이익	-	15,492,613,995	-	9,678,881,1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	-	5,733,273,345	5,739,765,294
보험계약자산 손금용손익	-	-	(20,343,076,733)	(19,515,311,764)
재보험계약자산 손금용손익	-	-	9,148,121,069	8,748,295,891
2023.12.31	52,000,000,000	209,490,329,911	(46,100,696,960)	210,010,331,862

주석 참조

현 금 흐 림 표

제 20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9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20 (당기)		제 19 (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684,828,031		33,332,605,411
당기순이익		15,492,613,996		23,928,300,230	
손익조정사항	31	(14,556,800,915)		(23,352,087,341)	
자산·부채의 증감	31	21,327,847,568		32,907,511,753	
이자수익의 수취		5,711,684,893		3,590,055,362	
법인세의 납부		(7,290,517,510)		(3,741,174,593)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624,255,801)		(37,880,421,08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7,009,240,000		11,1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의처분	4	27,0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처분	4	-		10,000,000,000	
보증금의감소	5	9,240,000		1,10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7,633,495,801)		(48,980,421,082)	
기타포괄손익자산의취득	4	(37,493,690,328)		-	
매도가능금융자산의취득	4	-		(46,652,714,214)	
보증금의증가	5	(9,600,000)		(1,959,240,000)	
유형자산의취득	6	(130,205,473)		(368,466,86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46,230,632)		(727,905,75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	(746,230,632)		(727,905,757)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II +III)	31		9,314,341,598		(5,275,721,428)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1		47,959,230,573		53,234,952,001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1		57,273,572,171		47,959,230,573

주석 참조

주석

제 20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9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1. 지점의 개요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이하 "당 지점")은 미국 미주리주에 소재한 RGA Reinsurance Company의 한국지점으로, 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를 주목적사업으로 2004년 12월 20일 설립되었으며, 2005년 3월 25일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허가를 받아 2005년 4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석 2.1.1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 지점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 지점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당 지점의 재무제표는 주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 지점이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 지점의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당 지점은 동 기준서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전기말 현재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소급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환일(2022년 1월 1일) 및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지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294,188백만원, 88,829백만원, 205,359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실은 각각 23,928백만원, (14,267)백만원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143,289백만원 감소, 201,930백만원 감소, 53,642백만원 증가,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4,096백만원 증가, 25,76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가)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증 감
자산		자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47,959	I. 현금및현금성자산	47,959	-
II. 금융자산	185,032	II. 금융자산	190,530	5,498
매도가능금융자산	185,032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85,032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5,421	5,421
III. 재보험자산	63,077	III. 보험계약자산	52,822	(10,255)
IV. 기타수취채권	143,278	IV. 기타수취채권	-	(143,278)
V. 유형자산	892	VI. 유형자산	892	-
VI. 무형자산	695	VII. 무형자산	695	-
VII. 사용권자산	1,255	VIII. 사용권자산	1,255	-
VIII. 기타자산	288	VIII. 기타자산	111	(177)
자산 총계	442,477	자산 총계	294,188	(148,289)
부채		부채		
I. 책임준비금	126,135	I. 보험계약부채	15,897	(110,237)
		II. 재보험계약부채	46,276	46,276
II. 금융부채	-	III.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5,208	5,208
III. 기타금융부채	158,473			(158,473)
IV. 이연법인세부채	113	IV. 이연법인세부채	15,505	15,391
V. 기타부채	6,039	V. 기타부채	5,943	(96)
1. 미지급비용	1,046	1. 미지급비용	1,305	258
2. 예수금	276	2. 예수금	276	-
3. 선수수익	354	3. 선수수익	-	(354)
4. 당기법인세부채	3,970	4. 당기법인세부채	3,970	-
5. 미지급부가세	19	5. 미지급부가세	19	-
6. 복구충당부채	373	6. 복구충당부채	373	-
부채 총계	290,759	부채 총계	88,829	(201,930)
자본		자본		
I. 영업기금	52,000	I. 영업기금	52,000	-
II. 이익잉여금	110,495	II. 이익잉여금	193,940	83,444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10,778)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40,643)	(29,865)
자본 총계	151,717	자본 총계	205,359	53,642

(나)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증 감
I. 영업수익	644,914	I. 영업수익	182,839	(462,075)
II. 영업비용	618,927	II. 영업비용	153,223	(465,704)
III. 영업이익	25,987	III. 영업이익	29,616	3,629
IV. 영업외수익	-	IV. 영업외수익	284	284
V. 영업외비용	167	V. 영업외비용	160	(7)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5,820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9,739	3,920
VII. 법인세비용	5,987	VII. 법인세비용	5,811	(176)
VII. 당기순이익	19,832	VII. 당기순이익	23,928	4,096
VIII. 기타포괄손익	(8,334)	VIII. 기타포괄손익	(38,195)	(29,861)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8,334)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38,195)	(29,861)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8,334)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8,334)	-
		(2) 보험금융손익	(59,071)	(59,071)
		(3) 재보험금융손익	29,210	29,210
IX. 총포괄손익	11,498	IX. 총포괄손익	(14,267)	(25,765)

(다) 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증 감
영업활동 현금흐름	33,333	33,333	-
투자활동 현금흐름	(37,880)	(37,880)	-
재무활동 현금흐름	(728)	(728)	-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으로 인한 전기초의 자본변동내역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으로 인한 당 지점의 자본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영업기금)	자본총계
전기초-회계정책 변경전	90,663	(2,444)	52,000	140,219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제거	78,217	-	-	78,217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인식	29,104	-	-	29,104
3) 법인세효과	(27,915)	-	-	(27,915)
전기초-회계정책 변경후	170,069	(2,444)	52,000	219,62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당 지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았습니다. 당 지점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일 시점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금융상품 기준서와 새로운 회계정책의 도입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 현재 금융상품(총장부금액)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총당금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재분류	재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매도가능금융자산					
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85,031,535	-	-	185,031,535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 지점이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포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지점은 다음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 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 이용자가 공급자 금융약정이 기업이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 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 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 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 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받은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 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되는 판매후리스에 관한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 2)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 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 지점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당 지점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3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수시입출금식은행예금 및 기타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이러한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4 금융상품

주석 2.1.1.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 지점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회계정책의 영향에 대한 정보는 주석 2.에서 제공합니다.

2.4.1. 금융자산

2.4.1.1. 금융자산의 분류

당 지점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에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또한 당 지점은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당 지점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의 금융자산 분류는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 또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으로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당 지점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당 지점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입니다. 만약 당 지점이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됩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2.4.1.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당 지점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채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

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 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 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 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 지점이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상품별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의 금융상품 측정은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상품평가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4.1.3. 금융자산의 손상

당 지점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당 지점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 지점은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Stage2)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 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 차주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주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같은 차주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 지점은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주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주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 지점은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 지점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 지점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정의

차주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당 지점은 채권재조정에 따라 원리금의 면제 또는 지급유예에 따른 채권감소, 채무자의 파산신청 등에 따른 상황 지연을 채무불이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과 무관하게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Stage3)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 ③ 차주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사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④ 차주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 제각정책

차주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와 같이 차주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 지점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냅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의 금융상품 손상은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당 지점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차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 등의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 1)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 2)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 지점은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당 지점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4.1.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 지점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 지점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4.2. 금융부채

2.4.2.1. 금융부채의 분류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파생상품인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의 금융부채 분류는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당 지점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2.2. 금융부채의 측정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한편, 비교 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의 금융부채 측정은 아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취득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4.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5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 또는 간주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주원가 적용시, 간주원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또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인 재평가금액입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 지점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임 차 시 설 물	5년
전 산 기 기	4년
비 품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무형자산

(1)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기타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및 내부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기타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평가하여 동 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7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 리스

당 지점은 다양한 사무실, 시설장치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①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 지점은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자산 리스는 IT기기와 소액의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 보험계약부채

당 지점은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의 정의와 분류

당 지점이 발행한 보험계약은 그 법률적 형식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합니다. 유의적 보험위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보험계약의 발행시점에 각계약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당 지점은 재보험자에게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분류합니다.

(2) 보험부채(자산) 및 재보험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1) 회계단위

당 지점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보험계약을 통합하여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합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는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집합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 그 밖의 잔여계약집합

당 지점은 발행시점의 차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은 동일한 보험계약집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집합의 인식

당 지점은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에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개시되는 때
- 그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번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날
-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경우 손실부담계약집합이 되는 날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에 인식됩니다. 다만 비례적재보험의 경우로서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집합이면서 출재보험계약이 그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되는 경우에 당지점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과 당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인식시점 중 이른 날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또한 당 지점은 비례재보험의 경우로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보다 늦은 경우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3) 일반모형에 의한 보험부채(자산) 및 재보험자산(부채)의 측정

당 지점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이행현금흐름(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금융위험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조정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는 잔여보장부채 또는 자산(이행현금흐름 및 보험계약마진)과 발생사고부채 또는 자산(이행현금흐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잔여보장부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다른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 및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되지 않고 아직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되지 않은 투자요소 및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냅니다.

발생사고부채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정당한 보험금과 기타 발생한 보험비용을 지급할 의무, 이미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 및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되지 않고 아직 잔여보장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요소 및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냅니다.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당 지점은 미래현금흐름의 시기, 범위 및 불확실성에 대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중립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확률가중평균에 의해 미래현금흐름을 현행추정치로 추정합니다. 시장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게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며, 손해율, 해약률, 사업비율등 비시장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증거를 모두 반영하되, 관측가능한 시장변수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출재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발행한 원수보험계약과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되, 재보험자의 채무불이행효과를 반영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의 경계 내 미래현금흐름

당 지점은 보험계약집합의 측정 시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자에 대한 재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받을 실질적인 권리)가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까지의 현금흐름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제공받을 실질적인 권리)는 특정 보험계약자 또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사로 이전된 위험)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가격이나 급부에 모두 반영할 수 있을 때 종료되며, 포트폴리오의 가격 재산정 시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 지점은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이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미친 영향이 반영되도록 계약의 경계를 재평가합니다.

다. 재량현금흐름

당 지점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의 변동이 보험계약상 확약에 미치는 효과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그 확약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식별하며, 재량의 변경이 확약에 미치는 효과는 보험계약 마진에서 조정됩니다. 당 지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금에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시기준이율에 가감되는 조정율을 재량으로 간주합니다.

라. 보험취득 현금흐름

당 지점은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포트폴리오 내 보험계약집합과 그 집합에 포함된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래의 보험계약집합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후 자산으로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당해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 말에 그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며 손상차손이 식별되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은 관련 계약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제거되어 그 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측정에 포함됩니다.

마. 할인율

당 지점은 관측가능한 현행시장가격과 일관되면서 보험계약의 현금흐름과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를 측정 후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 지점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최장만기까지의 국고채금리의 수익률, 최초수령기간 및 장기선도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감원에서 공시하는 결정론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당 지점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것에 대한 대가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하여,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할인율과는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전체보험계약 수준에서 신뢰수준법(75 Percentile)에 의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출한 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개별계약수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출재보험 계약의 경우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유자가 재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이 반영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출하며, 발행한 원수보험계약에서 적용한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 보험계약마진

당 지점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을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된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금액
- 최초 인식시점에 그 집합내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모든 현금흐름
- 최초 인식시점에 그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 최초 인식시점에 그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는 데 발생한 순원가를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원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아. 이행현금흐름 및 보험계약마진의 변동

당 지점은 매 보고기간 말마다 이행현금흐름을 현행추정치로 재측정하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현재 및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 지점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료 및 관련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경험조정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합니다. 그러나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의 변동 효과, 발생사고부채(자산)의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화, 현재 및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그 밖의 경험조정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당 지점은 보고기간 말 현재 보험계약마진을 기초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여 산출합니다.

- 당해 보험계약집합에 추가된 신계약의 효과
-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로 측정된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대해 부리된 이자
-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손실(회수)요소의 인식 및 손실(회수)요소 환입은 제외)
-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해당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자. 손실요소 및 손실회수요소

당 지점은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그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 지점은 후속 측정시점에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한 불리한 변동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 계약집합으로 간주합니다.

손실부담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없으며, 그 집합의 측정은 전부 이행현금흐름으로만 구성되게 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부담 계약집합에서 예상되는 순유출 또는 후속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집합의 손실요소로 간주되며, 손실부담 계약집합이 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손실요소가 인식된 후, 당 지점은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에 배부합니다. 다만 미래 서비스 관련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감소는 손실요소가 소진될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부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요소가 소진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험계약마진으로 다시 인식합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손실요소를 인식하는 때에 관련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을 당해 손실요소에 곱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 잔여보장자산의 손실회수요소를 설정하고 보험계약마진을 조정(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잔여보장부채를 직접 조정)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합니다. 손실회수요소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3)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의 인식

1) 일반모형에서의 보험수익 인식

보험수익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으로 측정되며, 다음과 같은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의 합과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기초시점에 예상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손실요소에의 배분액, 보험취득비용, 투자요소(*1) 상환액 및 보험계약대출 실행액은 제외)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액의 변동 (손실요소에의 배분액 및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 금액 제외)
- 해당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보험계약마진 금액 (*2)
- 당기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료 수취액에 대한 경험조정과 같은 그 밖의 금액

(*1) 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

(*2)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에서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전체 보장단위 중 당기 보장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 금액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수익은 동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산정되며, 동일한 금액이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보험서비스비용의 인식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서비스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보험금 및 비용과 관련된 기중 발생사고부채의 증가분 및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투자 요소 상환액 제외)
-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동일한 금액이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
- 최초로 인식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및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손실요소의 변동

3)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재보험수익과 재보험서비스비용의 인식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준용하되, 출재보험계약의 특성 (수익은 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액이며 비용은 지급한 재보험료의 배분액)을 반영하여 인식됩니다.

(4) 계약변경과 제거

당 지점은 보험계약 조건이 변경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초의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합니다. 계약변경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변경의 효과는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처리됩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당초의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한 계약변경은 없습니다. 당 지점은 보험계약이 소멸 (보험계약상 명시된 의무의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제거하며, 제거된 당해 계약이 속한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 및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며, 그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 수에 제거된 계약을 반영합니다.

(5) 표시

당 지점은 자산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 부채인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장부금액, 자산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 및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재무상태표에 각각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점은 보험수익과 재보험서비스비용, 보험서비스비용과 재보험수익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 보험금융수익(비용)과 재보험금융비용(수익)도 별도로 구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보험영업수익과 보험영업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손익,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으로 구성된 투자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지점은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6)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다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 지점은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이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2.10 비상위험준비금

당 지점은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적립대상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지점은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예정 대비 발생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자동차보험·특종보험·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11 대손준비금

당 지점은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12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당 지점은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 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1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 지점이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중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 지점이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 지점이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4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 지점이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은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 지점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이 현재나 과거 기간의 종업원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 지점은 추가적인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당 지점은 상장되거나 비상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나 계약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지급된 이후에 당 지점은 더 이상의 미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은 그 지급일예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선급 기여금은 초과 기여금으로 인해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금융수익과 비용은 투자금융수익과 투자금융비용,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으로 구성됩니다.

(1) 투자금융손익

투자금융손익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품의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보험금융수익과 비용

보험금융손익은 예상현금흐름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 및 보험계약마진의 이자비용 등 이자비용과, 할인율변동효과 및 환율변동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 지점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 (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29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 지점은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한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세

당 지점은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이 인식한 관련 자산, 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부채의 추정

당 지점은 수입보험료 등의 현금유입액과 손해조사비를 포함한 보험금, 사업비 등의 현금유출액의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위험률, 사업비율 및 계약의 상태와 관련하여 경영진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반영된 장래의 추세를 고려한 가정을 사용합니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국공채	194,967,205	169,929,414
특수채	8,809,815	15,102,122
합 계	203,777,020	185,031,536

당기 중 연체되거나 손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없습니다.

(2) 당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변동내역과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처분	평가	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4,034,071)	-	7,542,123	(6,491,948)
이연법인세효과	3,255,905	-	(1,808,850)	1,447,055
이연법인세효과 차감 후 금액	(10,778,166)	-	5,733,273	(5,044,893)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평가	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133,145)	-	(11,590,218)	(14,034,071)
이연법인세효과	689,292	-	3,255,904	3,255,905
이연법인세효과 차감 후 금액	(2,443,853)	-	(8,334,313)	(10,778,166)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수취채권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타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미수금	21,619	64,194
미수수익	1,420,963	2,708,494
임차보증금	2,714,505	2,648,501
소 계	4,157,087	5,421,189
대손충당금	-	-
합 계	4,157,087	5,421,189

(2) 당기와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기타수취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내역은 없습니다.

6. 유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비품	전산기기	임차시설물	합 계
취득원가	609,985	1,296,472	338,386	2,244,842
감가상각누계액	(575,827)	(753,988)	(298,907)	(1,628,723)
장부금액	34,157	542,483	39,478	616,119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비품	전산기기	임차시설물	합 계
취득원가	596,664	1,231,640	338,386	2,166,690
감가상각누계액	(485,345)	(557,933)	(231,230)	(1,274,509)
장부금액	111,319	673,706	107,155	892,181

(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비품	전산기기	임차시설물	합 계
기초금액	111,319	673,706	107,155	892,181
취득	14,209	115,996	-	130,205
처분 및 폐기	(1)	(1,212)	-	(1,213)
감가상각비	(91,370)	(246,007)	(67,677)	(405,054)
기말금액	34,157	542,483	39,478	616,119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비품	전산기기	임차시설물	합 계
기초금액	233,654	484,212	174,833	892,698
취득	20,911	347,556	-	368,467
처분 및 폐기	(63)	(16)	-	(79)
감가상각비	(143,183)	(158,045)	(67,677)	(368,905)
기말금액	111,319	673,706	107,155	892,181

7.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 계
취득원가	56,923	1,296,984	1,353,907
상각누계액	(56,923)	-	(56,923)
손상차손누계액	-	(601,682)	(601,682)
장부금액	-	695,302	695,30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 계
취득원가	56,923	1,296,984	1,353,907
상각누계액	(56,923)	-	(56,923)
손상차손누계액	-	(601,682)	(601,682)
장부금액	-	695,302	695,302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8. 사용권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부동산	552,557	1,255,005
비품	-	-
합 계	552,557	1,255,005

(2) 당기 및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부동산
기초금액	1,255,005
취득	666
처분	-
감가상각비	(703,114)
기말금액	552,557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부동산	비품	합 계
기초금액	1,850,918	3,306	1,854,224
취득	111,253	-	111,253
처분	(15,584)	-	(15,584)
감가상각비	(691,583)	(3,306)	(694,889)
기말금액	1,255,005	-	1,255,005

9. 금융부채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차입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미지급금	1,604,252	1,908,826
미지급비용	2,469,385	2,243,374
소 계	4,073,637	4,152,201
리스부채	586,606	1,304,599
합 계	4,660,243	5,456,800

10. 보험계약부채(자산)의 변동내역

(1)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부채 및 재보험계약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정값(%)		산출근거
	당기말	전기말	
계약률	1.2 ~ 18.0	6.0 ~ 19.0	2023.6월말 기준 최근 5년 통계를 기초로 상품군별로 구분하여 계약건수 대비 해약건수의 비율로 산출
손해율	실손 : 48.0 ~ 92.0 실손 : 100 ~ 174.8	62.9 ~ 92.1	2023.6월말 기준 최근 5년 통계를 기초로 위험담보군, 경과기간으로 구분하여 위험보험료 대비 손해액의 비율로 산출 * 실손보험의 경우 가이드라인 등을 따라 장래 연도별 보험금 증가를 반영
사업비율	신계약비	0.0 ~ 15.9	보험영업규정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환산실적, 신/보유계약건수, 초년도보험료 및 보험료 원가등인 단위별로 산출
	유지비	1.0 ~ 11.3	
할인률	3.8 ~ 4.8	4.4 ~ 5.2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장기선도금리 및 유동성프리미엄 반영)하여 단일 시나리오로 적용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신뢰수준	75 Percentile		각 보고시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75% 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가중평균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위험조정으로 산출

(2)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부채(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 분		잔여보장부채(자산)		발생사고부채(자산)	합계
		손실요소 제외	손실요소		
기초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116,042,455)	1,849,906	61,370,519	(52,822,030)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29,320,142)	4,211,997	41,005,312	15,897,167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	(145,362,597)	6,061,903	102,375,831	(36,924,863)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보험수익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90,345,784)	-	(33,069,430)	(123,415,214)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25,074,992)	-	(15,456,479)	(40,531,471)
	소계(B)	(115,420,776)	-	(48,525,909)	(163,946,685)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10,189,042)	(1,230,109)	318,439,760	307,020,609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	1,162,139	-	-	1,162,139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169,345,220)	(169,345,220)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요소 전입	-	8,693,420	-	8,693,420
	소계(C)	(9,026,903)	7,463,311	149,094,540	147,530,948
투자요소 및 보험료 환급(D)		-	-	-	-
보험서비스결과(B+C+D)		(124,447,679)	7,463,311	100,568,631	(16,415,737)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	(7,399,803)	49,507	1,980,301	(5,369,995)
	기타포괄손익	25,748,357	-	371,103	26,119,460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소계(E)	18,348,554	49,507	2,351,404	20,749,465
총 포괄손익(B+C+D+E)		(106,099,124)	7,512,818	102,920,035	4,333,728
당기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364,228,063	-	119,799,660	484,027,723
	보험취득현금흐름	-	-	(5,014,978)	(5,014,978)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237,330,140)	-	(200,089,587)	(437,419,727)
	소계(F)	126,897,923	-	(85,304,905)	41,593,018
기타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G)	-	-	-	-
기말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87,324,463)	8,809,901	70,290,327	(8,224,235)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37,239,336)	4,764,821	49,700,633	17,226,118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B+C+D+E+F+G)	(124,563,799)	13,574,722	119,990,960	9,001,883

2) 2022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 분		잔여보장부채(자산)		발생사고부채(자산)	합계
		손실요소 제외	손실요소		
기초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224,612,442)	-	97,999,453	(126,612,989)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5,043,513)	1,256,196	10,039,760	6,252,443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	(229,655,955)	1,256,196	108,039,213	(120,360,546)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보험수익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85,851,381)	-	(31,583,728)	(117,435,109)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3,559,230)	-	(5,332,463)	(8,891,693)
	소계(B)	(89,410,610)	-	(36,916,191)	(126,326,802)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5,043,809)	(516,748)	208,671,555	203,110,999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	226,339	-	-	226,339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125,954,803)	(125,954,803)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요소 전입(환입)	-	5,279,956	-	5,279,956
	소계(C)	(4,817,470)	4,763,208	82,716,752	82,662,491
투자요소 및 보험료 환급(D)		-	-	-	-
보험서비스결과(B+C+D)		(94,228,080)	4,763,208	45,800,561	(43,664,311)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	(7,700,498)	42,500	967,005	(6,690,993)
	기타포괄손익	77,493,049	-	(1,419,303)	76,073,746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소계(E)	69,792,551	42,500	(452,298)	69,382,753
총 포괄손익(B+C+D+E)		(24,435,529)	4,805,708	45,348,263	25,718,442
당기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331,168,702	-	126,969,198	458,137,899
	보험취득현금흐름	-	-	(4,382,904)	(4,382,904)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222,439,815)	-	(173,597,939)	(396,037,754)
	소계(F)	108,728,887	-	(51,011,645)	57,717,241
기타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G)	-	-	-	-
기말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116,042,455)	1,849,906	61,370,519	(52,822,029)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29,320,142)	4,211,997	41,005,312	15,897,167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B+C+D+E+F+G)	(145,362,597)	6,061,904	102,375,831	(36,924,863)

11. 출재보험계약부채(자산)의 변동내역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출재보험계약부채(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잔여보장부채(자산)		발생사고부채(자산)	합계
		손실요소 제외	손실요소		
기초	자산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부채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92,867,043	(3,054,001)	(43,536,594)	46,276,447
	재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	92,867,043	(3,054,001)	(43,536,594)	46,276,447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재보험수익	발생한 재보험금(보험요소)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621,780	(149,420,915)	(148,799,134)
	발생사고요소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	-	84,575,623	84,575,623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	-	(4,553,583)	-	(4,553,583)
	소계(B)	-	(3,931,803)	(64,845,292)	(68,777,094)
재보험서비스비용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24,936,150	-	30,091,424	55,027,574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4,342,629	-	13,468,927	17,811,556
	소계(C)	29,278,779	-	43,560,351	72,839,129
투자요소 및 보험료 환급(D)		-	-	-	-
보험서비스결과(B+C+D)		29,278,779	(3,931,803)	(21,284,941)	4,062,035
재보험금융손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109,489	-	1,324	110,813
	당기손익	4,029,803	(25,755)	(990,150)	3,013,898
	기타포괄손익	(11,557,532)	-	(185,551)	(11,743,084)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소계(E)	(7,418,240)	(25,755)	(1,174,378)	(8,618,372)
총 포괄손익(B+C+D+E)		21,860,539	(3,957,557)	(22,459,319)	(4,556,337)
당기 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116,669,376)	-	(95,125,947)	(211,795,323)
	발생한 재보험금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78,804,613	-	112,510,960	191,315,573
	소계(F)	(37,864,763)	-	17,385,013	(20,479,750)
기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계정 대체	-	-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	-	-	-
	소계(G)	-	-	-	-
기말	자산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부채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76,862,819	(7,011,558)	(48,610,901)	21,240,360
	재보험 계약 순자산(순부채)(A+B+C+D+E+F+G)	76,862,819	(7,011,558)	(48,610,901)	21,240,360

2)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잔여보장부채(자산)		발생사고부채(자산)	합계
		손실요소 제외	손실요소		
기초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138,623,459	(628,098)	(51,926,086)	86,069,275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	138,623,459	(628,098)	(51,926,086)	86,069,275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재보험수익	발생한 재보험금(보험요소)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	259,622	(96,132,123)	(95,872,501)
	발생사고요소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	-	62,964,948	62,964,948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으로 인한 손실회수요소의 전입	-	(2,664,273)	-	(2,664,273)
	소계(B)	-	(2,404,651)	(33,167,175)	(35,571,826)
재보험서비스비용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출재보험계약	24,410,910	-	27,118,576	51,529,486
	그 밖의 모든 출재보험계약	802,447	-	3,259,906	4,062,353
	소계(C)	25,213,357	-	30,378,482	55,591,839
투자요소 및 보험료 환급(D)		-	-	-	-
보험서비스결과(B+C+D)		25,213,357	(2,404,651)	(2,788,693)	20,020,013
재보험금융손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108,526)	-	(262)	(108,788)
	당기손익	4,379,016	(21,252)	(483,502)	3,874,261
	기타포괄손익	(38,327,701)	-	709,651	(37,618,050)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소계(E)	(34,057,211)	(21,252)	225,887	(33,852,576)
총 포괄손익(B+C+D+E)		(8,843,854)	(2,425,903)	(2,562,806)	(13,832,564)
당기 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124,838,774)	-	(85,380,596)	(210,219,370)
	발생한 재보험금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87,926,211	-	96,332,895	184,259,105
	소계(F)	(36,912,563)	-	10,952,298	(25,960,265)
기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계정 대체	-	-	-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	-	-	-	-
	소계(G)	-	-	-	-
기말	자산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부채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92,867,043	(3,054,001)	(43,536,594)	46,276,447
	재보험 계약 순자산(순부채)(A+B+C+D+E+F+G)	92,867,043	(3,054,001)	(43,536,594)	46,276,447

12. 보험계약부채(자산)의 구성요소별 변동내역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부채(자산)의 구성요소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계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 적용한 보험계약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 적용한 보험계약	그 밖의 모든 보험 계약		
기초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261,233,519)	47,096,678	-	122,729,425	38,585,388	(52,822,029)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75,127,292)	20,490,125	-	61,620,789	8,913,544	15,897,167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	(336,360,811)	67,586,803	-	184,350,214	47,498,932	(36,924,863)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239,589,552)	24,082,543	-	229,646,062	(14,139,052)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의 후속손상 및 환입	-	-	-	1,594,832	930,262	2,525,094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	-	-	-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133,163,202)	18,720,392	-	-	114,442,811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최초손상 효과	-	-	-	-	6,168,326	6,168,326
	경험조정	217	-	-	(217)	-	-
	소계(B)	(372,752,537)	42,802,935	-	231,240,677	107,402,346	8,693,420
현재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17,426,130)	(7,129,404)	(24,555,534)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813,278	-	-	-	813,278
	경험조정	167,978,320	-	-	-	-	167,978,320
	소계(C)	167,978,320	813,278	-	(17,426,130)	(7,129,404)	144,236,063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164,781,240)	(4,563,980)	-	0	0	(169,345,220)
	소계(D)	(164,781,240)	(4,563,980)	-	0	0	(169,345,220)
보험서비스결과(B+C+D)		(369,555,457)	39,052,232	-	213,814,546	100,272,942	(16,415,737)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	(16,563,678)	-	-	5,488,450	5,705,233	(5,369,995)
	기타포괄손익	26,119,460	-	-	-	-	26,119,460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	-
	소계(E)	9,555,782	-	-	5,488,450	5,705,233	20,749,465
총 포괄손익(B+C+D+E)		(359,999,675)	39,052,232	-	219,302,997	105,978,175	4,333,729
당기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484,027,723	-	-	-	-	484,027,723
	보험취득현금흐름	(5,014,978)	-	-	-	-	(5,014,978)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437,419,727)	-	-	-	-	(437,419,727)
	소계(F)	41,593,018	-	-	-	-	41,593,018
기타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G)	-	-	-	-	-	-
기말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465,065,312)	74,820,210	-	326,003,162	56,017,705	(8,224,235)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189,702,156)	31,818,825	-	77,650,048	97,459,401	17,226,118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B+C+D+E+F+G)	(654,767,467)	106,639,035	-	403,653,211	153,477,106	9,001,883

2) 2022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계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 적용한 보험계약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 적용한 보험계약	그 밖의 모든 보험 계약		
기초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333,027,478)	65,943,919	-	9,716,035	130,754,535	(126,612,989)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5,795,848)	4,472,811	-	-	7,575,480	6,252,443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	(338,823,326)	70,416,730	-	9,716,035	138,330,015	(120,360,546)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35,011,722)	(8,478,178)	-	3,909,095	39,580,805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의 후속손상 및 환입	-	-	-	177,176	(486,209)	(309,033)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	-	-	-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47,144,494)	5,995,231	-	-	41,149,263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최초손상 효과	-	-	-	-	5,588,989	5,588,989
	경험조정	883	-	-	(883)	-	-
	소계(B)	(82,155,333)	(2,482,946)	-	4,085,387	85,832,848	5,279,956
현재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666,297)	(10,663,569)	(11,329,867)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액의 변동분	-	3,361,600	-	-	-	3,361,600
	경험조정	84,978,803	-	-	-	-	84,978,803
	소계(C)	84,978,803	3,361,600	-	(666,297)	(10,663,569)	77,010,536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122,246,223)	(3,708,581)	-	-	-	(125,954,803)
	소계(D)	(122,246,223)	(3,708,581)	-	-	-	(125,954,803)
보험서비스결과(B+C+D)		(119,422,752)	(2,829,927)	-	3,419,090	75,169,279	(43,664,311)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	(11,905,720)	-	-	308,278	4,906,449	(6,690,993)
	기타포괄손익	76,073,746	-	-	-	-	76,073,746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	-
	소계(E)	64,168,026	-	-	308,278	4,906,449	69,382,753
총 포괄손익(B+C+D+E)		(55,254,727)	(2,829,927)	-	3,727,368	80,075,728	25,718,442
당기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458,137,899	-	-	-	-	458,137,899
	보험취득현금흐름	(4,382,904)	-	-	-	-	(4,382,904)
	발생한 보험금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396,037,754)	-	-	-	-	(396,037,754)
	소계(F)	57,717,241	-	-	-	-	57,717,241
기타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G)	-	-	-	-	-	-
기말	자산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261,233,519)	47,096,678	-	-	161,314,812	(52,822,029)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포트폴리오	(75,127,292)	20,490,125	-	13,443,403	57,090,930	15,897,167
	보험 계약 순부채(순자산)(A+B+C+D+E+F+G)	(336,360,811)	67,586,803	-	13,443,403	218,405,742	(36,924,863)

13. 출재보험계약부채(자산)의 구성요소별 변동내역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출재보험계약부채(자산)의 구성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계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 적용한 보험계약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 적용한 보험계약	그 밖의 모든 보험 계약	
기초	자산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
	부채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184,727,314	(32,807,985)	(77,667,287)	(27,975,595)	46,276,447
	재보험 계약 순자산(순부채)(A)	184,727,314	(32,807,985)	(77,667,287)	(27,975,595)	46,276,447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119,213,292	(11,784,136)	-	(114,271,368)	6,842,211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의 후속손상 및 환입	-	-	-	(797,416)	(461,656)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	-	-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72,456,064	(9,212,908)	-	-	(63,243,157)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최초손상 효과	-	-	-	-	(3,294,511)
	경험조정	(226)	-	-	226	-
	소계(B)	191,669,131	(20,997,044)	-	(115,068,558)	(60,157,112)
현재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7,547,352	3,253,105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543,999)	-	-	(543,999)
	경험조정	(86,216,463)	-	-	-	(86,216,463)
	소계(C)	(86,216,463)	(543,999)	-	7,547,352	3,253,105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82,293,633	2,281,990	-	-	84,575,623
	소계(D)	82,293,633	2,281,990	-	-	84,575,623
보험서비스결과(B+C+D)		187,746,301	(19,259,053)	-	(107,521,206)	(56,904,007)
보험금융손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	110,813	-	-	-	110,813
	당기손익	8,652,924	-	-	(2,442,880)	3,013,898
	기타포괄손익	(11,743,084)	-	-	-	(11,743,084)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
	소계(E)	(2,979,346)	-	-	(2,442,880)	(3,196,146)
총 포괄손익(B+C+D+E)		184,766,955	(19,259,053)	-	(109,964,086)	(60,100,153)
당기 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211,795,323)	-	-	-	(211,795,323)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 보험금 등	191,315,573	-	-	-	191,315,573
	소계(F)	(20,479,750)	-	-	-	(20,479,750)
기타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G)	-	-	-	-	-
기말	자산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
	부채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349,014,519	(52,067,038)	-	(187,631,374)	(88,075,748)
	재보험 계약 순자산(순부채)(A+B+C+D+E+F+G)	349,014,519	(52,067,038)	-	(187,631,374)	(88,075,748)

2)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계
			전환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수정소급법 적용한 보험계약	전환 시점에 존재했던 보험계약 중 공정가치법 적용한 보험계약	그 밖의 모든 보험 계약	
기초	자산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
	부채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185,875,773	(34,350,500)	-	(65,455,998)	86,069,275
	재보험 계약 순자산(순부채)(A)	185,875,773	(34,350,500)	-	(65,455,998)	86,069,275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항목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10,249,487	4,383,196	-	(14,209,569)	(423,114)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의 후속손상 및 환입	-	-	-	(250,274)	407,309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	-	-	-	-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효과	28,132,151	(2,923,464)	-	-	(25,208,686)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의 최초손상 효과	-	-	-	-	(2,821,308)
	경험조정	(583)	-	-	583	-
	소계(B)	38,381,054	1,459,731	-	(14,459,260)	(2,664,273)
현재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	4,307,502	505,988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1,771,507)	-	-	(1,771,507)
	경험조정	(43,322,646)	-	-	-	(43,322,646)
	소계(C)	(43,322,646)	(1,771,507)	-	4,307,502	505,988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사고부채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	61,110,658	1,854,290	-	-	62,964,948
	소계(D)	61,110,658	1,854,290	-	-	62,964,948
보험서비스결과(B+C+D)		56,169,067	1,542,515	-	(10,151,758)	(27,539,811)
보험금융손익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	(108,788)	-	-	-	(108,788)
	당기손익	6,369,577	-	-	(2,059,531)	(435,784)
	기타포괄손익	(37,618,050)	-	-	-	(37,618,050)
	환율차이로 인한 변동 효과	-	-	-	-	-
	소계(E)	(31,357,261)	-	-	(2,059,531)	(435,784)
총 포괄손익(B+C+D+E)		24,811,806	1,542,515	-	(12,211,289)	(27,975,595)
당기 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210,219,370)	-	-	-	(210,219,370)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서 회수한 보험금 등	184,259,105	-	-	-	184,259,105
	소계(F)	(25,960,265)	-	-	-	(25,960,265)
기타	보험계약의 순장부금액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모든 항목(G)	-	-	-	-	-
기말	자산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	-	-	-	-
	부채인 발행한 재보험계약포트폴리오	184,727,314	(32,807,985)	-	(77,667,287)	46,276,447
	재보험 계약 순자산(순부채)(A+B+C+D+E+F+G)	184,727,314	(32,807,985)	-	(77,667,287)	46,276,447

14. 신계약인식효과

당기 및 전기 중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각각이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취득현금흐름 금액 외	보험취득현금흐름 금액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계약	손실부담계약 이외의 집합	452,466,687	6,429,216	(594,728,076)	15,221,036	120,611,136
	손실부담계약집합	178,111,708	3,913,849	(179,356,586)	3,499,355	-
소 계		630,578,394	10,343,065	(774,084,662)	18,720,392	120,611,136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사업결합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합 계		630,578,394	10,343,065	(774,084,662)	18,720,392	120,611,136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취득현금흐름 금액 외	보험취득현금흐름 금액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재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 이외의 집합	(305,591,657)	-	378,047,721	(9,212,908)	(66,537,668)
	손실부담계약집합	-	-	-	-	-
소 계		(305,591,657)	-	378,047,721	(9,212,908)	(66,537,668)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사업결합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합 계		(305,591,657)	-	378,047,721	(9,212,908)	(66,537,668)

2) 전기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손실요소 제외	손실요소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계약	손실부담계약 이외의 집합	448,582,793	4,820,794	(504,787,902)	4,646,063	46,738,252
	손실부담계약집합	107,494,440	2,326,823	(105,581,442)	1,349,169	-
소 계		556,077,233	7,147,617	(610,369,344)	5,995,231	46,738,252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사업결합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합 계		556,077,233	7,147,617	(610,369,344)	5,995,231	46,738,252

(단위: 천원)

구분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손실요소 제외	손실요소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재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 이외의 집합	(270,248,075)	-	298,380,226	(2,923,464)	(28,029,994)
	손실부담계약집합	-	-	-	-	-
소 계		(270,248,075)	-	298,380,226	(2,923,464)	(28,029,994)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사업결합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계약		-	-	-	-	-
합 계		(270,248,075)	-	298,380,226	(2,923,464)	(28,029,994)

15. 리스부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리스료		
1년 이내	593,855	746,231
1년 초과 5년 이내	-	593,855
합 계	593,855	1,340,085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	746,231	727,906

(3)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703,114	691,583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28,237	48,249
단기리스 관련 비용	41,100	33,910
소액기초자산리스 관련 비용	4,424	4,189

16. 복구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금액	373,250	362,689
충당부채전입액	10,868	10,560
기말금액	384,117	373,250

17. 영업기금

당 지점은 2005년 1월 6일에 본점인 RGA Reinsurance Company가 당 지점에 최초 영업기금으로 3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지급여력비율 충족 목적으로 2008년 3월 21일과 2009년 12월 23일, 2010년 6월 28일과 2011년 6월 24일 본점인 RGA Reinsurance Company가 추가로 각각 300억원, 50억원, 40억원과 100억원을 납입하였습니다.

18. 이익잉여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비상위험준비금	25,318,461	25,318,461
대손준비금	13,788	12,398
처분전이익잉여금	184,158,081	168,666,857
합 계	209,490,330	193,997,716

(2) 대손준비금

1)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12,398	53,562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1,390	(41,164)
대손준비금 잔액	13,788	12,398

2) 당기 및 전기 중 대손준비금 적립액과 대손준비금 적립후의 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15,492,614	23,928,300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액	(1,390)	41,164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주)	15,491,224	23,969,464

(주) 상기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입니다.

(3) 비상위험준비금

1) 당기 및 전기 중 비상위험준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25,318,461	25,318,461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
비상위험준비금 잔액	25,318,461	25,318,461

2) 당기 및 전기 중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후의 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15,492,614	23,928,300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후 순이익(주)	15,492,614	23,928,300

(주) 상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후 순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입니다.

19.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6,491,948)	(14,034,071)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102,193,206)	(76,073,746)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49,361,133	37,618,050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13,223,324	11,850,753
합 계	(46,100,697)	(40,639,015)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40,639,015)	(2,443,853)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재평가로 인한 순평가차손익	7,542,122	(11,590,218)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재평가로 인한 순평가차손익	(26,119,460)	(76,073,746)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재평가로 인한 순평가차손익	11,743,084	37,618,050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순평가차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1,808,849)	3,255,904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순평가차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5,776,383	17,002,482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순평가차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2,594,962)	(8,407,634)
기말금액	(46,100,697)	(40,639,015)

20. 보험수익의 구성 내역

당기 및 전기 중 보험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보험영업수익의 세부 구분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그 밖의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잔여보장부채 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예상한 보험금 및 기타 예상되는 계약유지비	-	102,281,628	28,088,158
	위험조정액의 변동분	-	2,928,208	1,432,001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 금액	-	17,426,130	7,129,404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	82,190	1,079,949
	손실요소에 배분된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	-	(278,384)	(951,725)
	현재 및 과거 서비스 관련 보험료 경험조정과 기타보험수익	-	3,307,083	1,422,044
합 계		-	125,746,854	38,199,831

(2)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보험영업수익의 세부 구분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그 밖의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잔여보장부채 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예상한 보험금 및 기타 예상되는 계약유지비	-	100,397,017	7,250,678
	위험조정액의 변동분	-	146,483	(62,170)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 금액	-	10,515,056	814,811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	121,100	105,239
	손실요소에 배분된 잔여보장부채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	-	(160,430)	(356,318)
	현재 및 과거 서비스 관련 보험료 경험조정과 기타보험수익	-	7,881,393	(326,057)
합 계		-	118,900,619	7,426,182

21. 재보험비용의 구성 내역

당기 및 전기 중 재보험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재보험비용의 세부 구분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그 밖의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잔여보장자산 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 험금(투자요소 제외) 등	-	45,704,670	12,911,833
	위험조정액의 변동분	-	1,430,260	612,484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 금액	-	7,547,352	3,253,105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잔여보장자산 이행현 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	-	(139,192)	(482,588)
	미래서비스와 무관한 재보험료의 경험조정	-	5,831,015	805,743
	기타 재보험서비스비용	-	(4,378,791)	(256,761)
합 계		-	55,995,313	16,843,816

(2)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재보험비용의 세부 구분	수정소급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그 밖의 보험계약에서 인식한 보험영업수익
잔여보장자산 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것으로 예상한 재보 험금(투자요소 제외) 등	-	44,301,397	3,283,478
	위험조정액의 변동분	-	(13,029)	(35,522)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 금액	-	4,307,502	505,988
	손실회수요소에 배분된 잔여보장자산 이행현 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	-	(80,215)	(179,407)
	미래서비스와 무관한 재보험료의 경험조정	-	10,310,293	(175,532)
	기타 재보험서비스비용	-	(6,644,118)	11,004
합 계		-	52,181,830	3,410,009

22. 이자수익

당기 및 전기 중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457,254	184,230
기타포괄손익측정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4,676,572	3,564,532
기타	66,310	53,733
합 계	5,200,136	3,802,495

23. 보험계약마진의 예상 상각 스케줄

보험계약마진의 예상되는 상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 계
발행한 보험계약	26,092,723	25,160,403	70,199,306	101,676,918	334,000,967	557,130,317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12,915,034)	(12,453,418)	(34,745,900)	(50,324,909)	(165,267,862)	(275,707,122)
합 계	13,177,689	12,706,985	35,453,406	51,352,009	168,733,105	281,423,195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 계
발행한 보험계약	13,283,936	12,807,021	35,030,215	48,302,917	122,425,057	231,849,145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6,052,262)	(5,835,049)	(15,960,931)	(22,009,987)	(55,784,653)	(105,642,882)
합 계	7,231,674	6,971,972	19,069,284	26,292,929	66,640,404	126,206,263

24. 보험금융손익

당기와 전기의 보험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금액
투자손익	이자손익	5,171,898
	기타 투자손익	(158,765)
	금융상품 거래 및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7,542,122
	금융상품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
	소 계(A)	12,555,255
보험금융손익	이자손익	5,369,995
	계약채결비 자산의 손상차손	-
	계약채결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할인율 및 기타 금융가정의 변경 효과	(26,119,460)
	외환 효과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	-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지 않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기업의 몫	-
	소 계(B)	(20,749,465)
재보험금융손익	이자손익	(3,013,898)
	재보험자 불이행위험 변동액	(110,813)
	할인율 및 기타 금융가정의 변경 효과	11,743,084
	기타	-
	소 계(C)	8,618,372
합계(A+B+C)		424,162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D)		7,258,41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E)		(6,834,254)
합계(D+E)		424,162
보험계약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5,369,99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26,119,460)
	합계	(20,749,465)
재보험계약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3,124,71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11,743,084
	합계	8,618,372

(2)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구분		금액
투자손익	이자손익	3,754,246
	기타 투자손익	(137,703)
	금융상품 거래 및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11,590,218)
	금융상품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
	소 계(A)	(7,973,675)
보험금융손익	이자손익	6,690,993
	계약체결비 자산의 손상차손	-
	계약체결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할인율 및 기타 금융가정의 변경 효과	(76,073,746)
	외환 효과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기초자산 공정가치 변동	-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지 않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기업의 몫	-
	소 계(B)	(69,382,753)
재보험금융손익	이자손익	(3,874,261)
	재보험자 불이행위험 변동액	108,788
	할인율 및 기타 금융가정의 변경 효과	37,618,050
	기타	-
	소 계(C)	33,852,576
합계(A+B+C)		(43,503,851)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D)		6,542,06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E)		(50,045,914)
합계(D+E)		(43,503,851)
보험계약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6,690,99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76,073,746)
	합계	(69,382,753)
재보험계약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3,765,47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융손익	37,618,050
	합계	33,852,576

25. 주식기준보상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주)

구 분	내 용		
약정유형	지배회사 주식부여		
종류	Performance Contingent Shares	Restricted Stock Units	Stock Appreciation Rights
부여수량	2,128	4,478	15,108
가득조건	부여시점 후 3년의 용역제공/비시장성과	부여시점 후 3년의 용역제공	부여시점 후 4년의 용역제공

(전기말)

(단위: 주)

구 분	내 용		
약정유형	지배회사 주식부여		
종류	Performance Contingent Shares	Restricted Stock Units	Stock Appreciation Rights
부여수량	2,589	6,797	13,969
가득조건	부여시점 후 3년의 용역제공/비시장성과	부여시점 후 3년의 용역제공	부여시점 후 4년의 용역제공

(2) 당기 및 전기 중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부여수량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주)

부여일자	가득일자	기초	부여	행사	소멸	기말
2017-03-03	2020-12-31	1,981	-	-	-	1,981
2018-03-02	2021-12-31	1,760	-	-	-	1,760
2019-03-01	2022-12-31	2,068	-	-	-	2,068
2020-03-06	2022-12-31	1,891	-	292	1,599	-
2020-03-06	2023-12-31	4,167	-	-	-	4,167
2021-03-11	2022-12-31	2,868	-	2,868	-	-
2021-03-11	2023-12-31	2,043	-	-	90	1,953
2021-03-11	2024-12-31	1,829	-	-	-	1,829
2022-03-22	2024-12-31	2,584	-	-	77	2,507
2022-03-22	2025-12-31	2,164	-	-	-	2,164
2023-03-09	2025-12-31	-	2,146	-	-	2,146
2023-03-09	2026-12-31	-	1,139	-	-	1,139
합 계		23,355	3,285	3,160	1,766	21,714

(전기)

(단위: 주)

부여일자	가득일자	기초	부여	행사	소멸	기말
2017-03-03	2020-12-31	1,981	-	-	-	1,981
2018-03-02	2021-12-31	1,760	-	-	-	1,760
2019-03-01	2021-12-31	1,503	-	212	1,291	-
2019-03-01	2022-12-31	2,068	-	-	-	2,068
2020-03-06	2022-12-31	1,891	-	-	-	1,891
2020-03-06	2023-12-31	4,167	-	-	-	4,167
2021-03-11	2023-12-31	4,911	-	-	-	4,911
2021-03-11	2024-12-31	1,829	-	-	-	1,829
2022-03-22	2024-12-31	-	2,584	-	-	2,584
2022-03-22	2025-12-31	-	2,164	-	-	2,164
합 계		20,110	4,748	212	1,291	23,355

(3) 당기 및 전기 중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보상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보상원가		
종업원급여	247,991	156,207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한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Performance Contingent Shares	368,010	400,672
Restricted Stock Units	684,017	1,033,526
Stock Appreciation Rights	552,225	474,628
합 계	1,604,252	1,908,826

26. 영업외손익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외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영업외수익 :		
영업외잡이익	819,393	291,020
합 계	819,393	291,020
영업외비용 :		
유형자산처분손실	1,213	79
기부금	15,500	22,400
법인세추납액	414	-
외환차손	8,818	2,592
외화환산손실	9,242	142,031
합 계	35,187	167,102

27.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부담액	4,230,975	6,066,740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	(1,697,872)	(11,417,057)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372,572	11,161,461
합 계	3,905,674	5,811,143

(2) 당기 및 전기의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398,288	29,739,444
적용세율(22%)에 따른 법인세비용	4,481,005	7,196,945
조정사항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39,913	1,476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20)	(20)
단계적 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효과 등	(448,762)	(789,134)
기타	(166,461)	(598,124)
소 계	(575,330)	(1,385,802)
법인세비용	3,905,674	5,811,143

(3)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반영 전	법인세효과	반영 후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7,542,122	(1,808,849)	5,733,27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26,119,460)	5,776,383	(20,343,07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11,743,084	(2,594,962)	9,148,121
합 계	(6,834,254)	1,372,572	(5,461,68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반영 전	법인세효과	반영 후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11,590,218)	3,255,904	(8,334,31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76,073,746)	17,002,482	(59,071,26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37,618,050	(8,407,634)	29,210,415
합 계	(50,045,914)	11,850,752	(38,195,161)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	기말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3,255,904	-	(1,808,849)	1,447,055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원가조정(상각액)	22,843	(282,261)	-	(259,418)
미수수익	(612,533)	305,523	-	(307,010)
선급비용	20,298	(15,428)	-	4,870
기타무형자산손상차손	139,590	(5,475)	-	134,115
임차점포시설물	(24,860)	16,060	-	(8,800)
사용권자산	(291,161)	167,996	-	(123,165)
리스부채	302,667	(171,913)	-	130,754
미지급비용	645,596	171,788	-	817,384
복구충당부채	86,594	(974)	-	85,620
비상위험준비금	(4,100,845)	160,852	-	(3,939,993)
미지급금	442,848	(85,260)	-	357,588
보험계약자산부채	17,002,482	-	5,776,383	22,778,866
재보험계약자산부채	(8,407,634)	-	(2,594,962)	(11,002,597)
IFRS17전환이익 과세이연	(23,986,308)	64,393	-	(23,921,915)
합 계	(15,504,518)	325,301	1,372,572	(13,806,645)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	기말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평가손익	689,292	-	2,566,613	3,255,904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원가조정(상각액)	3,873	18,970	-	22,843
미수수익	(586,572)	(25,961)	-	(612,533)
선급비용	10,022	10,276	-	20,298
기타무형자산손상차손	132,370	7,220	-	139,590
임차점포시설물	(38,463)	13,603	-	(24,860)
사용권자산	(407,929)	116,768	-	(291,161)
리스부채	436,536	(133,869)	-	302,667
미지급비용	450,112	195,484	-	645,596
복구충당부채	79,792	6,802	-	86,594
비상위험준비금	(3,888,732)	(212,113)	-	(4,100,845)
미지급금	360,737	82,110	-	442,848
보험계약자산부채	-	-	17,002,482	17,002,482
재보험계약자산부채	-	-	(8,407,634)	(8,407,634)
IFRS17전환이익 과세이연	-	(23,986,308)	-	(23,986,308)
합 계	(2,758,962)	(23,907,017)	11,161,461	(15,504,518)

28.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당 지점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의 명칭
본점	RGA Reinsurance Company
기타특수관계자	RGA Reinsurance Company (Barbados)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의 명칭	재보험금수익		재보험료비용		주식기준보상비용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RGA Reinsurance Company	-	-	-	-	247,991	156,207
RGA Reinsurance Company (Barbados)	176,335,593	172,869,008	208,542,158	203,456,535	-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채권·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의 명칭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RGA Reinsurance Company	-	-	1,604,252	1,908,827
RGA Reinsurance Company (Barbados)	49,451,198	70,211,972	62,481,246	71,536,683

(4) 당기 및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단기종업원급여	7,137,640	5,720,222
퇴직급여	647,154	524,314
합 계	7,784,795	6,244,537

29. 금융상품 공정가치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94,967,205	8,809,815	-	203,777,02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69,929,414	15,102,122	-	185,031,536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기타수취채권	4,157,087	4,157,087	5,421,189	5,421,189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4,660,243	4,660,243	5,456,800	5,456,800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사용하였습니다.

30.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 측정 금 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채무증권	-	203,777,020	-	203,777,020
기타수취채권	4,157,087	-	-	4,157,087
금융자산 합계	4,157,087	203,777,020	-	207,934,106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4,660,243	4,660,243
금융부채 합계	-	-	4,660,243	4,660,243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 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채무증권	-	185,031,536	-	185,031,536
기타수취채권	5,421,189	-	-	5,421,189
금융자산 합계	5,421,189	185,031,536	-	190,452,724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5,456,800	5,456,800
금융부채 합계	-	-	5,456,800	5,456,800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자산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이자수익		이자비용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4,676,572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564,532	-	-
합 계	4,676,572	3,564,532	-	-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	-	28,237	48,249
합 계	-	-	28,237	48,249

31. 현금흐름표

(1) 당기와 전기 중 당 지점의 비용 및 수익의 조정내역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1. 손익조정사항	(14,556,801)	(23,352,087)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249,780,063	159,486,892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44,537,743	152,466,665
감가상각비	1,108,168	1,063,794
선급비용의 증감	110,985	86,400
선급금의 증감	77,174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0,868	10,560
유형자산처분손실	1,213	79
리스이자비용	28,237	48,249
법인세비용	3,905,674	5,811,143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264,336,864)	(182,838,979)
보험계약부채환입액	259,136,728	179,036,484
이자수익	5,200,136	3,802,495
2.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1,327,848	32,907,512
기타수취채권의변동	-	(64,194)
기타자산의 변동	(72,624)	(111,359)
보험계약부채의 변동	21,113,268	31,756,976
기타금융부채의 변동	(88,436)	1,063,492
기타부채의 변동	375,640	262,597

(2) 당기 및 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 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융자산평가손익	7,542,122	(10,900,926)
사용권자산	666	77,253

(3)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은행 예치금을 포함하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일치합니다.

(4)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변동		기말
			신규리스	상각액	
리스부채	1,304,599	(746,231)	-	28,237	586,606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변동		기말
			신규리스	상각액	
리스부채	1,984,256	(727,906)	-	48,249	1,304,599

32. 위험관리

(1)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

당 지점은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등 중요한 리스크의 인식, 측정, 평가, 통제, 모니터링을 통해 당 지점의 이익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자산 및 부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전체의 리스크 수준이 가용자본대비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통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운영 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며,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리스크는 재무리스크로, 운영 리스크는 비재무리스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등 유형별 리스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K-ICS(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기준의 리스크량과 Value at Risk(최대손실예상액) 방식 등으로 계량화한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는 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을 관리기준으로 설정하여 유동성리스크의 적정 수준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리스크를 회피, 수용, 전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리스크 한도를 설정하고 이의 초과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운영합니다.

당 지점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점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을 주기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상징후 발견 시 경영진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내부 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절차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독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여력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요구자본은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에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하며, K-ICS기준 순자산에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기준에 의한 지급여력비율100% 이상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이100%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여력비율별로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권고 (100%~50%)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50%~0%)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0%미만)	주식소각, 영업양도, 합병 및 계약이전 등

3) 위험관리 조직

가. 위험관리위원회

당 지점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전략과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리스크에 기초한 당 지점의 주요 경영전략, 당 지점의 리스크 한도 등 리스크관리 관련 중요의사결정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구성: 운영총괄임원을 포함하고 3명 이상의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당기 중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심의사항 7건, 보고사항 4건,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심의사항	- 위험관리 제규정 수립 -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 파생금융거래전략의 수립 - 재보험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등
보고사항	- 리스크관리 현황 - 리스크관리계획 추진 현황 - 해외지사(지점) 투자활동 현황 - 재보험 특약 체결 현황 - 위험관리운영위원회 활동내역 등

나. 실무 조직

위험관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리스크관리 실무 조직은 보험계리부서로서 다음의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 전략에 대한 입안 및 과정관리
- 위험관리규정 및 지침의 관리
- 리스크관리를 위한 지표 및 목표, 한도의 설정 및 관리 등

4) 위험관리체계 구축 활동

가. 규정체제

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관련 규정은 위험관리규정,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K-ICS 운영 기준, 재보험관리규정과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한도설정관리

당 지점의 위험관리규정의 리스크한도관리 관련 조항에 허용한도 설정 시 고려사항, 유관부서 협의,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허용한도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분석·보고하여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시스템

당 지점은 보험, 금리, 시장, 신용 등 개별 리스크별로 리스크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리스크량을 산출하고 매분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점 단위, 주요 보험리스크 및 특약서 단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험위험

보험리스크란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와 일반손해보험리스크로 구분됩니다.

보험가격리스크란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된 예정손해율(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과 실제 발생손해율의 차이로 인해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준비금리스크란 사고로 인해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여 장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1) 측정 및 관리

가. 측정방법

당 지점은 보험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표준모형(K-ICS기준)을 사용합니다.

표준모형은 금융감독원 위험기준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라 보험리스크를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로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 장기손해보험리스크는 사망위험, 장수위험, 장애·질병위험, 장기재물·기타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 7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분산효과를 감안하여 측정합니다.

- 일반손해보험리스크는 보험가격위험, 준비금위험, 대재해위험 등 3개의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분산효과를 적용하여 측정합니다.

나. 관리방법

당 지점은 매월 매분기 보험리스크 산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유형별로 집계하여 관리 및 점검하며, 또한, 극단적 상황하에서의 보험리스크 수준 및 감내능력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Stress Tes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재보험 관련 위험

가. 관리방법

당 지점은 전업재보험사로서 수재 보험의 적절한 위험 분산을 위해 재보험위험관리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보험위험관리전략은 지점의 기초자산, 보험위험 정도 및 재보험비용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검토 후 수립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재보험거래의 목적
2. 적정위험보유 한도 설정, 재보험 출재계획 및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내역
3. 재보험 수재 계획
4. 재보험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방법
5.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의 선택방법과 안전도(security) 평가기준
6. 재보험 관련 신용리스크 분산 방안
7. 재보험 유동성 관리방안

재보험위험관리전략에 의해 재보험 거래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보험위험관리전략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 위험노출 현황

① 장기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위험 및 생명보험은 잔여보장부채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원수보험계약(A)	수재보험계약(B)	출재보험계약(C)	계(A+B-C)
생명사망(무배당)	-	(109,954,441)	-	(109,954,441)
생명사망(유배당)	-	-	-	-
생명건강(무배당)	-	(460,535,430)	-	(460,535,430)
생명건강(유배당)	-	-	-	-
생명복합(무배당)	-	573,700	-	573,700
생명복합(유배당)	-	-	-	-
장기상해(무배당)	-	10,457	-	10,457
장기상해(유배당)	-	-	-	-
장기질병(무배당)	-	(98,886,057)	(345,558,382)	246,672,325
장기질병(유배당)	-	-	-	-
합 계	-	(668,791,770)	(345,558,382)	(323,233,388)

2022년 12월 31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원수보험계약(A)	수재보험계약(B)	출재보험계약(C)	계(A+B-C)
생명사망(무배당)	-	(14,182,810)	-	(14,182,810)
생명사망(유배당)	-	-	-	-
생명건강(무배당)	-	(275,227,201)	-	(275,227,201)
생명건강(유배당)	-	-	-	-
생명복합(무배당)	-	-	-	-
생명복합(유배당)	-	-	-	-
장기상해(무배당)	-	761,201	-	761,201
장기상해(유배당)	-	-	-	-
장기질병(무배당)	-	(82,205,338)	(195,455,924)	113,250,585
장기질병(유배당)	-	-	-	-
합 계	-	(370,854,148)	(195,455,924)	(175,398,224)

② 일반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위험은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원수보험계약(A)	수재보험계약(B)	출재보험계약(C)	계(A+B-C)
잔여보장부채	-	672,376	-	672,376
화재	-	-	-	-
해상	-	-	-	-
자동차	-	-	-	-
보증	-	-	-	-
기술	-	-	-	-
근로자재해보상	-	-	-	-
책임	-	-	-	-
상해	-	(11,459)	-	(11,459)
질병	-	-	-	-
종합	-	683,836	-	683,836
해외	-	-	-	-
발생사고부채	-	5,830	-	5,830
화재	-	-	-	-
해상	-	-	-	-
자동차	-	-	-	-
보증	-	-	-	-
기술	-	-	-	-
근로자재해보상	-	-	-	-
책임	-	-	-	-
상해	-	1,384	-	1,384
질병	-	-	-	-
종합	-	4,446	-	4,446
해외	-	-	-	-
합계	-	678,206	-	678,206

2022년 12월 31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원수보험계약(A)	수재보험계약(B)	출재보험계약(C)	계(A+B-C)
잔여보장부채	-	(295,691)	-	(295,691)
화재	-	-	-	-
해상	-	-	-	-
자동차	-	-	-	-
보증	-	-	-	-
기술	-	-	-	-
근로자재해보상	-	-	-	-
책임	-	-	-	-
상해	-	(15,531)	-	(15,531)
질병	-	-	-	-
종합	-	(280,160)	-	(280,160)
해외	-	-	-	-
발생사고부채	-	8,386	-	8,386
화재	-	-	-	-
해상	-	-	-	-
자동차	-	-	-	-
보증	-	-	-	-
기술	-	-	-	-
근로자재해보상	-	-	-	-
책임	-	-	-	-
상해	-	4,797	-	4,797
질병	-	-	-	-
종합	-	3,589	-	3,589
해외	-	-	-	-
합계	-	(287,305)	-	(287,305)

6) 보험위험의 집중도

당 지점은 국외 보험계약 인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이란 거래상대방인 재보험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당 지점은 내부 검토를 통해 S&P기준 BBB+ 이상의 등급 또는 A.M.Best 기준 A- 이상의 등급을 부여 받은 우량 보험회사를 재보험자로 선정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① 재보험자 군별 출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자의 신용등급별 출재보험계약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재보험계약자산은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② 재보험 신용위험 집중도

보고기간말 현재 재보험자의 수는 총 1개이며, 재보험자에 대한 집중도와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보험사	비율	신용등급
RGA Reinsurance Company (Barbados) Ltd.	100%	AA-

8)보험위험의 민감도분석

당 지점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할인율, 손해율 및 사업비율 등을 기초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가정변경	당기말		전기말	
		부채평가 변동액	(출재효과 반영)	부채평가 변동액	(출재효과 반영)
해약률 변동	△10%	(52,255,035)	(25,175,153)	(29,559,612)	(14,206,035)
해약률 변동	+10%	47,535,896	22,690,192	27,238,391	13,110,249
손해율 변동	△10%	(274,969,988)	(136,911,327)	(160,263,762)	(79,739,591)
손해율 변동	+10%	306,874,068	152,977,963	208,202,569	103,580,749
사업비율 변동	△10%	(19,402,778)	(19,400,583)	(15,053,226)	(15,053,245)
사업비율 변동	+10%	19,402,778	19,400,583	15,053,226	15,053,245
할인율 변동	+100bp	74,664,343	36,356,796	(37,991,593)	(18,167,920)
할인율 변동	△100bp	(88,492,461)	(43,103,124)	32,672,682	15,618,965

9)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

당 지점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 기간 및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보험금 지급요구에 대응할 수 없게 되거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자금 조달 및 보유자산 매각 등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이1년 이상인 장기보험에 대하여 잔존만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 지점의 원수 및 출재 보험계약의 할인되지 않은 순현금흐름에 대한 시기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 4년 이하	4년 초과 ~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원수보험계약	(40,890,841)	(43,062,984)	(41,807,425)	(39,332,578)	(38,564,284)	(1,422,199,073)	(1,625,857,186)
출재보험계약	23,171,428	22,213,743	21,451,105	20,191,269	19,798,452	722,991,892	829,817,888

2)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 4년 이하	4년 초과 ~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원수보험계약	(57,533,297)	(62,275,676)	(66,857,987)	(64,135,217)	(61,015,740)	(1,404,916,895)	(1,716,734,812)
출재보험계약	35,790,451	33,251,678	34,512,111	33,120,462	31,526,666	722,139,672	890,341,040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자산 운용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등급의 악화 등으로 보유자산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신용위험은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손실이란 신용위험 노출자산의 신용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금액에 대한 기댓값으로 부도율, 회수율 등의 변수로 산출되며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관리합니다. 미예상손실이란 신용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의 변동성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당 지점은 자본을 통해 미예상손실을 관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위험액에 노출된 금융자산의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성자산	57,273,572	47,959,2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3,777,020	185,031,536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157,087	5,498,363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기타수취채권	-	-
파생상품자산	-	-
소 계	265,207,679	238,489,129
난외약정	-	-
합 계	265,207,679	238,489,129

1) 측정 및 관리

가. 측정방법

당 지점은 신용리스크 측정을 위하여 표준모형(K-ICS) 사용합니다. 표준모형은 금융감독원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신용위험액을 산출합니다.

나. 관리방법

당 지점은 매월 신용리스크 산출 대상자산의 데이터를 유형별로 집계하여 관리 및 점검하며, 익스포져 및 신용리스크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2) 유가증권의 신용등급별 현황

2023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채무증권의 신용등급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3년12월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계
AAA	-	203,777	-	203,777
AA+~AA-	-	-	-	-
A+~A-	-	-	-	-
BBB-미만	-	-	-	-
무위험	-	-	-	-
합 계	-	203,777	-	203,777

나. 2022년12월31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합계
AAA	-	185,032	-	185,032
AA+~AA-	-	-	-	-
A+~A-	-	-	-	-
BBB-미만	-	-	-	-
무위험	-	-	-	-
합 계	-	185,032	-	185,032

(5) 시장위험

1) 금리위험의 측정 및 관리

가. 측정방법

당 지점은 K-ICS기준에 따라 금리부자산 및 금리부부채의 익스포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익스포저는 금리 변동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리위험은 금리기간구조에 충격시나리오 적용한 후 순자산가치(자산-부채)의 변화량으로 측정합니다.

매월 금리위험 데이터를 유형별로 집적하여 관리 및 점검합니다.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지표로 승인받아 가이드라인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시점의 금리수준을 점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듀레이션, 금리VaR 등을 산출 및 분석하여 관리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리위험에 노출된 주요 자산(채권)과 부채(장기 최선추정부채 및 장기위험조정)의 익스포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금리부부채>	(323,233,388)	(175,398,224)
장기 최선추정부채 및 위험조정	(323,233,388)	(175,398,224)
<금리부자산>	203,777,020	185,031,536
예치금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3,777,020	185,031,536
합계	(119,456,368)	9,633,312

2) 시장위험(금리위험 제외) 측정 및 관리

가. 측정방법

당 지점의 주식, 외환, 부동산위험 측정을 위하여 K-ICS표준모형을 사용합니다. K-ICS표준모형은 금융감독원 신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출합니다.

나. 관리방법

당 지점은 시장리스크량을 측정하고, 익스포져 한도, 손실 한도 등을 설정 및 관리합니다.

보고기간 말 민감도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리 + 100 basis point	19,398,288	(51,903,036)
금리 - 100 basis point	19,398,288	(39,932,959)
주식가격 + 10%	-	-
주식가격 - 10%	-	-
환율 + 10%	19,237,863	(46,100,697)
환율 - 10%	19,558,714	(46,100,697)
부동산가치 + 10%	-	-
부동산가치 - 10%	-	-

(6)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운용과 조달의 기간 또는 금액 불일치,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거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 자금의 조달, 보유 유가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1) 측정 및 관리

당 지점은 유동성 비율을 통해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이란 직전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금액 대비 잔존만기 3개월이하 유동자산의 비율로 유동자산 보유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또한, 당 지점은 급격한 보험금지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자산을 유동화 가능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예금을 포함한 유동성 잔고를 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비율 현황

보고기간 말 현재 유동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유동성 자산	275,334,291
유동성 부채	74,923,198
유동성 비율	367.49%